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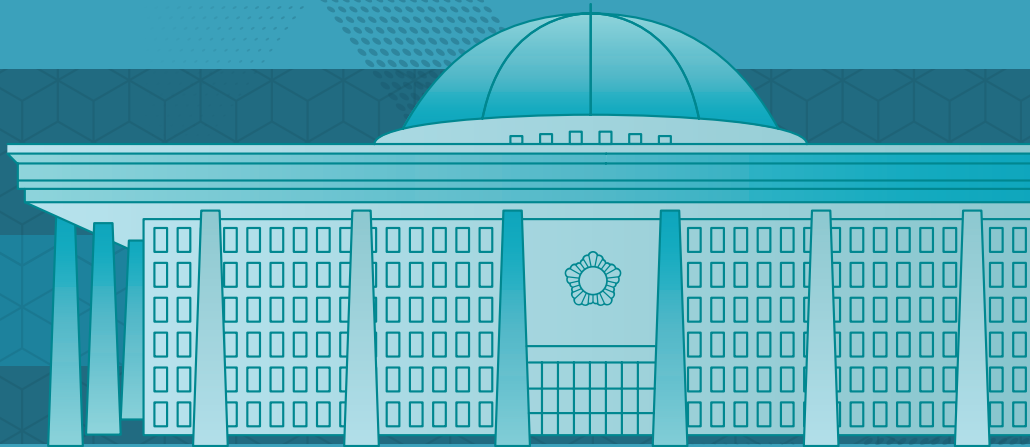


2021. 08. 02.

국회입법조사처 |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V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 Ⅰ 총괄** 송주아 (정치행정조사실장)

- Ⅰ 분야별 총괄**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김 준 (사회문화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 Ⅰ 기획 및 편집위원**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이상근 (총무담당관)
정진철 (기획법무담당관)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조규범 (법제사법팀장)
형혁규 (외교안보팀장)
박영원 (행정안전팀장)
황선호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세진 (재정경제팀장)
김봉주 (산업자원팀장)
정민주 (국토해양팀장)
김주경 (환경노동팀장)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직무대리)
이순기 (과학방송통신팀장)
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장)

- Ⅰ 편집실무** 한경석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
장윤진 (행정안전팀 행정실무원)
송은혜 (행정안전팀 입법조사원)



발간사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자,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현안과 가치들이 논의되는 장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광범위한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에 대응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중요한 정치 일정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부활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중의 예산안 법률안 심사와 중복되고,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데 따른 어려움 등 한계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의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해왔습니다. 올해에는 대면감사 등이 어려운 코로나 국면에서 진행될 국정감사의 제약을 보완하고 의원님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제를 더 주의깊게 선별하고,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의원실에서 보기 편하도록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9권으로 분권하였고, 각 권별로 제1부의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여 수록한 다수의 정책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미있는 국정감사 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들이 고민하여 묶어낸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의원님의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복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Ⅷ

목 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5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8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10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일원화	14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 사업	16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제도	20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체계	22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협력	24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체계	26
연구개발 인건비 사용기준	28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	3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32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34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36
온라인 플랫폼 육성	38
디지털미디어산업 발전	40
디지털 뉴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42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44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및 이용 확대	46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48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50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52
5G 28GHz 추진 방향 수립	54

제 VIII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	56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58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판매 관련 정책	60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	62
양자암호통신 개발 정책	64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66
전국 디지털배움터 운영 개선	68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산업 경영 개선	71
방송통신위원회	73
방송사 비정규직	7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76
방송 협찬제도	78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80
OTT 서비스 규제	83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85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87
인터넷 역외 규제	89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91
디지털미디어 교육	9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95
원자력안전위원회	97
원자력안전정책 지원체계	97
해수 방사능 농도 감시 강화 방안	99
방사성물질 누설에 대한 감시 강화	101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규제 강화	104
해상 부유원전 대응	107
방사능방재계획 내실화	109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112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
소관 기관 채용 시스템 점검	122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개선	124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127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129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 설치	13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기능	133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	136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138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141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정책 확대	143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146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선	148
공공와이파이 등 지방자치단체 통신망과의 역할 분담 설정	150
선택약정 할인 홍보 강화	153
정보화교육 계획 마련	155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	157
방송통신위원회	160
TV 수신료 및 지상파방송 재원	160
지역방송 지원	163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보호	166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우회 접속	169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171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공개 상세화	173

제 VIII 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77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17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안위 대응	179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 금지 대책	182
방사능 오염고철 처리방안	185

환경노동위원회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환경부	193
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193
조기폐차 보조금	195
환경표지 인증기준	197
환경성질환 추적·감시 체계	199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현황	201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203
마스크 패치	205
탄소발자국	207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회수체계 개선방안	209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 시 고려사항	211
1회용 페트음료포장재 재활용 방안	213
고형연료폐기물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	215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비스페놀A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218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방안	221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223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225
하·폐수처리수 수질측정 방식 개선방안	227

목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방식 개선방안	229
물관리 일원화	231
통합물관리 기반 하천관리	233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235
수자원시설 재평가	238
댐하류지역 관리	240
고용노동부	242
노동시간의 단축·유연성 확대 관련 개정법 시행 점검	24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공휴일 규정 적용 검토 필요	244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46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 3법 시행 관련 조치 점검 필요	248
고객응대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의 실효성 제고 필요	250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 추진 현황 점검 필요	252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제도 점검 필요	254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이행 점검 필요	25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58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논의 활성화	26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과 향후과제	263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26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 필요	267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향후 과제	269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	27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273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기업 집단의 노력 필요	275
정년연장 해외동향과 향후 논의시 고려사항	277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279

제 VIII 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	281
탄소포인트제	28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84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V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Ⅷ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1 현황 및 문제점

- COVID-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초·응용'의 연구 단계에 따라 각각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함(2020.5월)¹⁾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기초과학연구원 내부 조직, 2021.7월 개소): 바이러스 기초·기반 연구 및 예측·진단·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 개발 수행
 - 국립감염병연구소(질병관리청 소속기관, 2020.9월 개소)²⁾: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응용·임상 연구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립·운영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향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기능
 - 바이러스 핵심 기초연구: 바이러스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1) 관계부처 합동,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2020.5.14.

2) 「정부조직법」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0.9.12.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각각 확대·개편되었음

- 연구기관 간 연구 협력: 바이러스 연구 협력 협의체(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를 구성·운영하여 바이러스 기초연구 협력의 중심점 역할 수행
-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연구자원센터를 구축하여 연구시설(BL3, ABL3 등)³⁾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원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바이러스 연구의 기반 확충
- 운영 계획
 - 바이러스 기초연구 분야의 전략적 연구센터, 바이러스 연구자원 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 2021년 40여 명을 충원하고, 바이러스 기초연구의 수행에 따라 2024년까지 연구직 100명, 행정기술직 20명 규모로 확대·운영할 예정임⁴⁾
- 그러나 당초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서 출발한 감염병 연구가 기초·응용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소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연구의 유사·중복이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감염병 발생 대상(가축, 야생동물, 사람 및 인수공통 등)에 따른 연구까지 살펴보면, 소관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까지 확대됨

| 감염병 연구 수행 체계 |

구분	가축	야생동물	사람 및 인수공통
방역 응용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기초 연구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내부조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1.6.) 자료 재구성

2 개선방안

- 바이러스 연구에 관하여 관련 부처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⁵⁾

3)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nimal 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2021.6.)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정례화하고,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업 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생명기술과

☎ : 044-202-4558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과학 대중화의 일환으로 과학문화 소외 지역·계층에게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되었음
-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및 사업 실적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2021년 기준 총 50,000명 내외): 6세 이상의 신청 자격 기관 이용자 및 기관 이용자의 보호자(1인)
 - 지리적: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등 과학문화 소외 지역 대상 기관
 - 사회적: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경제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경제적 배려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및 도서 등 과학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지원(1인당 3만 원 상당)
 -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⁶⁾

|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4억 4천만 원	9억 2천만 원	18억 원
상품 발굴	121건	197건	324건
바우처 발행	31,639건	46,121건	39,184건(6월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1.6.)

- 그러나 제한된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운영이 계층·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지원 대상을 성인·노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상향(1인당 2만 원 → 3만 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현재 과학문화 바우처의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해당 학교,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등에서 기관별로 대상자를 취합하여 온라인 사이트(scivoucher.kofac.re.kr)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발급된 바우처의 사용 기간도 제한되어 있음(2021년 기준, 5~10월)

| 과학문화 바우처 신청 절차 |

절차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바우처 신청	바우처 신청 승인
주체	신청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신청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내용	기관회원 가입신청	신청자격 검토 및 가입 승인	기관별 신청자 수합 및 온라인 신청	신청내역 검토 후 신청 승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제출	-	신청자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자료: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2021.4.)

- 따라서, 대상기관에 소속되지 못하여 바우처 신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사용 기간 초과로 인하여 발급된 바우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⁷⁾

2 개선방안

-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 절차(개인 신청 및 앱을 통한 신청 등)를 개선하고, 사용 기간도 확대 하는 등 수익자 편의 제고 측면의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및 체육활동을 지원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주민센터,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신청과 전화 ARS 를 통한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 기간도 카드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로 하고 있음 - 2021년의 경우 카드 발급일(2.1.~11.30.), 사용 기간(카드 발급일~12.31.)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044-202-4841

7) 바우처 사용률(%): 2019년 75.6%, 2020년 9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과학창의 연례통계)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은 부산 기장군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430MeV/u⁸⁾를 구축하고, 중입자 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료 분야: 난치성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 8대암) 치료를 통한 암환자의 생존율 향상
 - 연구 분야: 입자빔 활용 임상연구 및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 경제 분야: 부산지역을 동남아 의료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 선도
- 해당 사업은 당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관기관이 변경되고, 사업 기간 및 총 사업비도 지연·증액되었음
 -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0억 원, 부산광역시 250억 원, 기장군 250억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 원(총 1,950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관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되었음

|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주요 변경 내역 |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09.11)	적정성재검토 결과('18.9)	장기확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20.9)
사업명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좌동
사업목표	중입자가속기 개발 암환자치료	중입자치료시스템 통합구축 암치료 및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좌동
사업기간	2010~2015	2010~2023	2010~2024
주관기관	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좌동
사업비	1,950억 원	2,606억 6천만 원	2,597억 5천만 원
분 담 금	국비	700억 원	1,187억 5천만 원
	지방비	500억 원	660억 1천만 원
	주관기관	750억 원	750억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1.6.)

8)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여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중점 조사하는 장비로서, 치료 효과 제고와 치료 횟수·기간 단축이 가능함

- 주관기관 변경(2019년) 이후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중입자가속기: 장치 사양 확정, 장치 발주계획 확정(2019.12월), 장치 조달계약(2020.8월)
 - 중입자 치료센터: 장치 계약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2020.10월), 기 구축된 치료센터의 구조변경을 위한 설계사 선정(2020.12월)⁹⁾

|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 2020(추진 완료)	2021(추진 중)	2022 ~ 2024(사업 종료 시)	2025 ~ (종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입자가속기 제조업체 계약 • 중입자가속기 설계 및 제작 착수(장치업체) • 건물구조변경을 위한 건축설계 착수 • 최신 중입자 치료기술 조사 • 인허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입자가속기 설계 및 제작 진행(장치업체) • 주변기기 도입 • 건물구조변경·추가공사 진행 • 중입자치료기술 습득 진행 • 인허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입자가속기 제작·운송·설치(장치업체) • 치료기 빔 조정 • 주변기기 도입 및 치료기 연동 • 중입자치료 프로토콜 제작 • 인허가 취득 • 건물구조변경·추가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치성암(두경부암, 폐암 등 8대암) 치료를 위한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운영 • 중입자치료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 발전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1. 6.)

2 개선방안

- 지연되었던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향후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고액(5천만 원~1억 원)의 치료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기초 및 융·복합 연구 지원 방안, 중입자치료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 044-202-4656

9) 중입자 치료센터 건물은 2016.5월 완공되었으나, 현재 계약된 중입자 장치 사양에 맞추어 추가 시설공사 예정임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교통·통신·안보·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우주탐사 및 우주공간의 상업적·전략적 이용에 대한 국가 간 새로운 규범과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주개발 참여국: 1996년 28개 → 2006년 47개 → 2016년 70개 → 2018년 88개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 전략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위성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¹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 중임
 - 중점 추진 전략: ①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②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 ③ 우주탐사 시작, ④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⑤ 우주 혁신 생태계 조성, ⑥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 일자리 창출
-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안보, 외교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종합적 성격의 우주 정책을 기획하고,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지원할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제기됨¹¹⁾
 - 추진 현황
 - 2021년도 예산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위하여 10억 1,000만 원 편성¹²⁾

10) 전통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형성되었으나, 최근 우주 분야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뉴 스페이스(New Space)'라고 불리는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책센터 신설 기획 최종보고서」(2019.7.), p.71.

①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회의체로서 실질적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주전담부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순환업무로 인해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오랫동안 연구개발 경험을 통한 축적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범부처적 성격의 우주정책의 기획·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2)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내역 사업인 '우주개발전략기반조성'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 간 총 7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임

- 유치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정 및 센터장 선정: 2021.7.20.¹³⁾
- 센터장 선정 절차 진행 중: 2021. 6월 현재
- 설립 목적
 - ① 확대된 우주정책 범위에 대응하는 범부처적 우주정책 리더십 확보, ② 국가 우주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우주 정책 기획·조정 지원, ③ 국가우주 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전문적 정책 지원
-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센터장 및 실무조직 2개 팀(총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 및 타 출연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운영 예정
-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우주정책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향후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에서는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의3에서는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 차원의 우주정책 기획을 위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해당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 044-202-4626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7.21.), 「국가 우주정책의 두뇌집단(싱크탱크) 구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감사(監査)¹⁴⁾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로 이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이 시행(2020.12.10.)되었음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연구기관의 감사 근거 삭제(제11조 제5항·제6항)
 -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¹⁵⁾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회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함(제16조 제1항 신설)
 - 연구회는 자체감사의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은 위임받은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연구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조 제2항·제3항)
- 정부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 일원화를 추진 중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제12조의2 신설): 2020.12.10.
 -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
 - 감사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학식, 경험 및 관련 능력을 갖춘 사람(세부 자격은 연구회 정관으로 정함)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④ (생략)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감사위원회 감사 활동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단을 두도록 함
- 연구회 감사위원회 및 감사단 조직(감사기획부, 감사 1부·2부 설치) 신설: 2021.4.1.
- 연구기관에 위임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각 연구기관 별 감사 전담 조직 설치: 2021.5.23.
- 감사위원회 출범: 2021.8월 예정
- 그러나, 개정된 과기출연기관법 제16조 제2항¹⁶⁾에서 연구회 이사장은 자체감사의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의 범위를 과기출연기관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아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위임 범위가 정해질 우려가 있음
- 해당 규정은 감사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 능력이 필요하고, 연구기관의 윤리경영 미흡 및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련되었음

2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감사 위임 범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연구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¹⁷⁾ 이사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임 범위가 정해질 우려는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감사 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에서 자체감사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
☎: 044-202-4751

16)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7) 연구회 정관 제51조 제1항에서 위임의 범위를 일상감사와 복무감사로 규정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지원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연구실인증제’와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실시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현장의 이해 부족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우수연구실인증제’를 살펴보면,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¹⁸⁾이나, ‘2020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4,035개 연구기관 중 ‘우수연구실인증제’ 신청 이력이 있는 기관은 260개(6.4%)에 불과함

| 우수연구실인증제 신청 이력 유무 |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57.

- 기관 유형 별로는 연구기관(18.2%), 대학(17.5%), 기업부설 연구소(4.8%) 순으로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이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18) 포상금(200만 원 상당) 지급, 안전 점검 면제 및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 부여

| 우수연구실인증제 신청 이력 유무 |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신청이력 있음		신청이력 없음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전체	4,035	260	6.4	3,775	93.6
기관유형	대학	338	59	279	82.5
	연구기관	176	32	144	81.8
	기업부설(연)	3,521	169	3,352	95.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57

- 다음으로,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안전관리 컨설팅: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 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
 -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 재정 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설비·장비 및 보호구 등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
 - 지원 사례: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폐기물 처리 비용, 유해인자 노출도 평가 비용, 연구실 안전·보호장비 구입,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그러나 ‘2020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4,035개 연구기관 중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287개(7.1%)에 불과함

|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 이력 유무 |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59.

- 기관 유형 별로는 대학(36.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구기관(14.8%), 기업부설 연구소(4.9%) 순임

|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 이력 유무 |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신청이력 있음		신청이력 없음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전체	4,035	287	7.1	3,748	92.9
기관유형	대학	338	36.4	215	63.6
	연구기관	176	14.8	150	85.2
	기업부설(연)	3,521	4.9	3,383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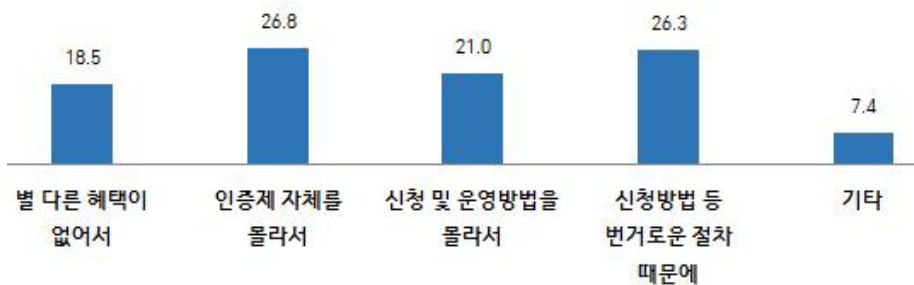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59

2 개선방안

- ‘2020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 에서 ‘우수연구실인증제’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의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현장의 낮은 인지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수연구실인증제’의 미신청 사유는 ‘인증제 자체를 몰라서(26.8%)’와 ‘신청방법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26.3%)’, ‘신청 및 운영방법을 몰라서(2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수연구실인증제 미신청 사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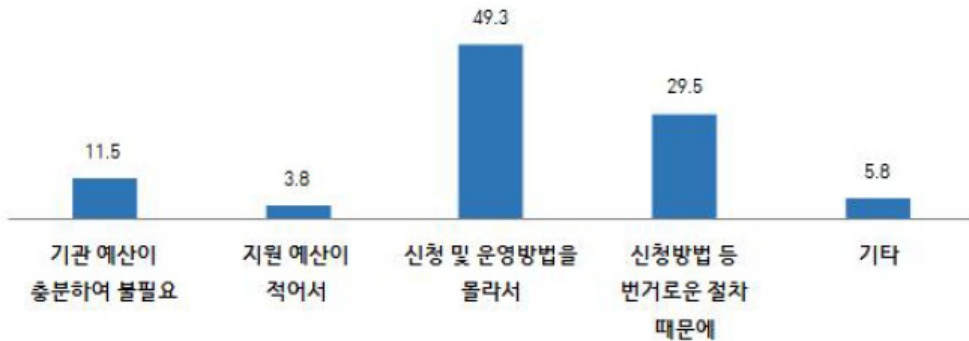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58.

- ‘환경개선지원사업’의 미신청 사유는 ‘신청 및 운영방법을 몰라서(4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청 방법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29.5%)’가 높게 나타남

| 환경개선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p.160.

- 최근 국회와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20.12.10.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1.1.시행 예정)」의 개정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우수연구실인증제’나 ‘환경개선지원사업’과 같이 홍보 부족이나 절차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하여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연구 현장의 수요를 점검하고, 홍보 강화 및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를 보완·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044-202-4852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예산안의 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며(「국가재정법」 제32조), 연구개발예산 중 에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의 배분·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 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하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전체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약 80%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주어진 기간은 1개월(매년 6월)로(「과학기 술기본법」 제12조의2),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 정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에게 알리며, 관계부처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 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연구기관 운영경비의 배분·조정 내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 려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 출해야 함(「국가재정법」 제33조)

2 개선방안

- 국가 과학기술혁신 관련 의사결정체제에서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배분·조정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알리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의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또한 관계부처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초안의 기한을 15일 가량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⁹⁾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는 부처별 지출한도의 기한을 연구개발예산의 경우에 한하여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둘째,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사전 전략단계에서 의견 수렴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기간 내에 세부 분야·사업별로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 준비단계 개선에 관한 고려도 필요함
 - 즉,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관계자와의 소통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연구개발 사업유형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예산 요구, 배분·조정, 편성, 확정 과정에서 증감 등 변동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²⁰⁾
 - 관계부처의 예산요구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한 배분·조정안,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확정 등 단계별로 사업 단위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예산총괄과

☎ : 044-202-6820

19) 김주희 등, 『정부R&D 재정사업 유형화를 통한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 상기 문헌과 동일함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지방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방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외에도 과학기술분야별 또는 혁신클러스터 유형별로 지역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종합계획 등이 다수 존재함
 - 국가균형발전, 농림식품분야 과학기술,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분야·이슈별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체계들이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과학기술 진흥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4조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함
 - 부처·부서별로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혁신클러스터 지정·조성과 육성에 관한 체계들이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함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함
 -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사항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계획·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과의 연계에 관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관련 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될 뿐,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명시하게 되는데, 「과학기술기본법」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등에 관한 체계 규정은 부재함

2 개선방안

-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계획과 정책 등에 관한 실태조사, 조정, 상호 연계 등의 측면에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추진할 수 있음
-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계획들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체계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전략과

☎ : 044-202-6730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협력

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기관으로서 기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더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²¹⁾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사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활동과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 문제의 연구·분석을 수행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설립 근거는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는 차이가 없으나, 담당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기간과 시행 비율에서 차이를 보임²²⁾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사전에 개발 대상이 되는 기술이 특정될 수 있는 ‘기술지정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력 양성, 기초연구, 지역 연구개발역량 강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등 ‘기술비지정형’²³⁾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6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조사의 경우 29건 중 7개월을 초과한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음
 - 시행(통과) 비율에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3건 중 10건으로 약 44%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건 중 2건(25%)으로 차이가 있음

21) 과학기술혁신본부, 「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제1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 위원회, 201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2021년 6월)

23) 기획 단계에서 연구개발 대상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운 국가연구개발사업

| 조사기관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시행 여부 |

기관	조사기간			시행 여부			
	7개월	7개월 초과	계	시행	미시행	조사 중	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	6	29	10	13	6	2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	0	8	2	6	0	8
계	31	6	37	12	19	6	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2021년 6월)

2 개선방안

- 양 기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진방식을 공유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달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비교적 최근에 지정되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협력이나 교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시행(통과) 여부, 암묵적인 평가기준 등 양 기관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일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공동 부설기관 등의 형태로 독립적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양 기관에 분산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단일의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성과 중립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검토가 필요함
 - 전담기관 구축 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핵심적인 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 044-202-6940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발전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만으로는 성과 창출과 경제·사회 발전 기여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개발단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실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의 협력(예: 산학연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은 정책의 범위를 ‘과학기술의 진흥’에서 ‘과학기술혁신혁신 창출의 진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함(2021년 4월 시행)²⁴⁾ -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을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 창출의 진흥’이라고 정의하고, ‘혁신의 창출’ 개념을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정함
- 이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법제와 조직이 확대되어 왔으나, 종합조정 근거가 미흡하며 책임성을 갖고 종합조정을 전담 지원할 조직도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관리전문기관²⁵⁾들이 맡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력 근거와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가 있지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 협의체의 운영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규정과 기관을 두고 있는데, 과학기술혁신분야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뿐 실질적인 조정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4) 권성훈·경선주,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6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25)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입업진흥원 등

-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관해 부처별로 법제와 기관이 존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역할을 지리적으로 연구개발특구에 한정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은 소관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2021년 4월) 제정된 「연구산업진흥법」도 범부처 관점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반의 시각에서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기술창업, 산학연 협력, 과학연구단지 등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용화 관점에서 별도의 장 또는 절을 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의 종합조정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갖는 전담 지원조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에 해당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산업진흥과

☎: 044-202-6720,

044-202-4730

연구개발 인건비 사용기준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년 6월 제정)은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법과 시행령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과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함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범부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법 제13조는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 등의 계상한도와 인정기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령 [별표 2]는 직접비 항목 중 하나로서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제정되었으며, 이 고시는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사용기준을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²⁶⁾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고시 제39조, 제48조, 제57조)
 - 다만,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반면,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로 제한됨(고시 제65조)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참여연구자는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등으로서, 신규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한함²⁷⁾

26)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

- 즉, 민간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절반 이하로만 계상해야 하고, 참여연구자의 경우에도 신규로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인건비 계산이 가능한 상황임
- 참여연구자 인건비에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연구비 규모가 크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자를 한 명만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과 법제에서는 연구개발에서 융합과 협력을 갈수록 강조하는 추세인데, 인건비 계상 제약은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나 연구재료비의 집행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예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행 제도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됨

2 개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에서 기관 유형 구분이나 비중의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유형별로 인건비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민간 기업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과 같이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50%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제약을 두지 않고 부처·사업·규모별로 인건비 과다 계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약을 두도록 하는 등의 대안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제도혁신과
☎ : 044-202-6957

27)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등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건비 계상 인정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

1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서 단일 분야의 전문성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현대 과학기술혁신에서는 융합연구가 크게 강조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에서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²⁸⁾에서는 ‘융합연구개발’이란 융합(convergence)을 통한 성과를 새로운 가치로 연결·확산(divergence)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5개) 간 또는 외부 산·학·연과의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각 분야를 분담하므로 이 융합연구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융합연구사업’이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원하는 융·복합 연구개발사업으로서 2개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내외 산·학·연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임(「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 제2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육성·관리를 담당하며,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산·학·연 기관과의 융합연구사업의 조정·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1조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책무와 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
- 다만, 과학기술혁신에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비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융합연구사업 과제 수만 증가할 뿐 과제당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연구정책센터,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2018.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 예산에서 융합연구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0%에서 2021년 현재 1.6%로 감소함
- 융합연구사업 과제 수는 같은 기간 86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했지만, 과제당 연구비는 약 1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30%가 감축된 것으로 조사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융합연구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건)

융합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예산(출연연+연구회, A)	5,073,623	4,942,014	4,764,526	5,107,651	5,133,754
융합연구사업비(B)	99,817	83,969	83,538	90,810	81,915
융합연구사업 과제 수(C)	86	92	93	93	100
융합연구사업 예산비중(B/A)	2.0%	1.7%	1.8%	1.8%	1.6%
융합연구사업 과제당 예산(B/C)	1,161	913	898	976	819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2021년 7월)

2 개선방안

- 융합연구사업 규모 확대, 추진 근거 마련, 참여기관 명시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융합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 근거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는 융합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기관들의 경우에도 융합연구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사업 추진·협력기관으로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 044-202-475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1 현황 및 문제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05개에 달하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2021년도)은 6913억 원임
-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 제2조에서는 ‘지역조직’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지역조직 현황 |

(단위: 개, 명, 억 원)

기관	조직 수	인력	예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32	8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217	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121	140
한국기계연구원	3	60	23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	241	49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254	5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	871	2,08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86	201
한국원자력연구원	2	161	493
한국재료연구원	3	22	49
한국전기연구원	4	232	45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174	50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30	7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44	119
한국천문연구원	7	29	3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48	77
한국한의학연구원	2	43	87

기관	조직 수	인력	예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65	28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93	119
한국화학연구원	2	90	229
안전성평가연구소	2	173	285
계	105	3,086	6,913

주: 인력은 2021년 7월 현재 기준이며, 예산은 2021년도 기준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2021년 7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의 규모와 예산이 방대하며 지역조직 남설에 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조직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²⁹⁾

2 개선방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의 정의·범위, 임무·역할, 설치 근거, 신설·조정·폐지 심사, 실태조사·평가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조직의 예·결산 관련 사항만 일부 있으므로 지역조직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조직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해야 할 목적 또는 임무 규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수 있음³⁰⁾
 - 또한 지역조직이 남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설치·조정·폐지 등에 관한 심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 044-202-4750

29) 지역조직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만 존재함

30) 지역조직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하며,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경우와 인프라 제공 등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우도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1 현황 및 문제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기본 임기는 현행 3년인데, 이는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임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음
 -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임을 허용하고 있음
 - △선도적 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증가와 중장기 리더십 필요, △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관의 혁신과 조직문화 형성 장애, △짧은 임기로 기관평가 성과평가의 부적합성, △주요국 연구기관들의 기관장 임기(중장기)와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임기 연장이 논의되어 왔음³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6년으로 연장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함
 - 2010년: 연구개발 주기 및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는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기에 짧으므로 최소 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³²⁾
 - 2013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관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장의 임기를 5년 등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³³⁾
 - 2015년: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책임경영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함³⁴⁾
 - 2017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사업의 주기를 감안하여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확대하되, 임기 중 중간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³⁵⁾

31) 이민형, 「출연(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방안」,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정필모 의원 주최), 2020.

32)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2010.

33)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안)」, 2013.

34) 관계부처 합동, 「정부R&D혁신방안」, 2015.

- 2020년: △기존 제도(3+3년)를 유지하면서 연임제도를 활성화, △5년으로 하고(3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 없을 경우 2년 연장) 연임을 허용, △6년으로 연장(3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 없을 경우 3년 지속) 등의 방안을 제안함³⁶⁾
-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원장의 재선임 심사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선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이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이 일정 수준(2020년 12월 ‘최상위 등급’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개정)인 경우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장의 최초 임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재선임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이 법 제12조·제24조)

2 개선방안

- 현행 임기로는 실질적인 원장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기를 확대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기 초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임기 말에는 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원장의 임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음³⁷⁾
 - 현행과 같이 기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기보다는 그간의 주요 논의들과 같이 기본 임기를 연장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 044-202-4750

35) 박소희 등,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Issue Weekly』 제21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36) 이민형, 「출연(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방안」,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정필모 의원 주최), 2020.

37)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안)」, 2013.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1 현황 및 문제점

-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와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6월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함
 -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채널 공급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재계약의 경우 양 사업자 간의 콘텐츠 사용료 등의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우선 콘텐츠는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하여 소급하는 것임
 -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 증가로 인해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실제 콘텐츠 공급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채널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계약만료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PP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계약(프로그램 사용료 포함)을 계약만료일 이전에 마치도록 권고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체결 희망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및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 대상 표준계약서인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과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주체인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PP 방송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방송사업자의 협상 우위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오랜 시간 고착화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PP사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없이 우선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2020년부터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지침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경쟁에 대하여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유료방송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과 관련하여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채널 계약을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콘텐츠 공급 및 계약의 원칙 확립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다음의 사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³⁸⁾
 - 유료방송사 간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계약 협상 결렬을 오히려 방송송출 중단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27일 기준으로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의안번호 제2106374호/제2109706호)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 02-6788-4711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 044-202-654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 02-2138-1523

3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필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374))」, 2021.2.

온라인 플랫폼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글로벌시장에서 검색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글, 전세계적인 이용자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페이스북, e-커머스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는 검색 기반의 서비스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뉴스,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기획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보이고 있지는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9월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임³⁹⁾
 -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 및 국책기관 전문가, 산업계(플랫폼 기업 및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는 구글 및 페이스북이 산업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동 정책포럼에서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 플랫폼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및 시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정책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10대 아젠다를 발굴하였는데, 주요 아젠다로는 플랫폼 규제의 원칙 제시, 알고리즘 검증, 데이터 및 AI 플랫폼 혁신,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 구축, 플랫폼 투자 및 M&A 활성화, 스타트업 활성화·안정화, 전통적 산업과의 갈등 해소 등이 논의되고 있음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30.)

2 개선방안

- 온라인 플랫폼 발전전략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여 초국적 기업 및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동 발전전략의 중점 목표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지, 중소벤처기업의 보호인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규제 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온라인 플랫폼 발전전략의 논의 주제를 보면, 정책 목표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구현, 플랫폼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인수합병 활성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집행 관할권 확보 등으로 다양함
 -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각각의 정책이 실시될 경우, 정책 프로그램 상호 간에 정합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산업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생태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비교우위의 플랫폼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외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시장에서 잠재적인 비교우위 영역을 발굴하여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웅

☎: 02-6788-4717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 044-202-6241

디지털미디어산업 발전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⁴⁰⁾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공정·상생환경 등 4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주요 내용 |

분야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공정·상생 환경
주요 과제	규제완화 M&A 절차간소화 자율등급제	클러스터 활성화 콘텐츠 투자 AI기술개발	플랫폼·단말사 협업형 해외진출 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노동환경 개선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55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분야는 4개, 정상 추진 과제는 51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정책 중 완료된 부분은 유료방송 M&A 심사계획 사전 공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망투자 세액공제임

| 완료 과제 현황 |

과제명	당초 계획	완료
개인정보 규제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이드라인 제정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
M&A 심사 간소화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 통통신위원회)	- 심사항목 등 심사계획 사전공개 방 안 마련 - 사전동의 간소화·효율화 방안 마련	- 유료방송 M&A 관련 심사항목 등 심사계 획 사전 공개 완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 본계획 개정 완료(방송통신위원회)
벤처투자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공정 거래위원회)
5G 커버리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망투자 세액공제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획 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30.)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요 의제로 추진 중에 있음⁴¹⁾
 - 방송 시장 점유율 완화, 온라인 비디오 자율등급분류, OTT 세액 공제 등 규제 개선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지역 거점센터의 확충 등을 추진 중임
 - 총 260억 규모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펀드를 2020년에 마련하였으며, 펀드 결성 및 투자를 향후 개시할 예정이며, 해외에 진출하려는 OTT와 국내 휴대폰 기기 제조사와의 협업을 지원할 예정임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기간이 단기년(3개년)인 상황에서 세부 과제 대비 과제 완결 성과가 미흡함
 - 예를 들어 방송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 규제 완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투자 펀드 조성, 디지털 미디어플랫폼의 글로벌시장 진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함

2 개선방안

- 디지털미디어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미디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규제 완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 그리고 국내 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함
 -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OTT 등 디지털 미디어플랫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

☎: 044-202-6531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30.)

디지털 뉴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1년에 12.7조 원(국비 7.6조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고도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데이터 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이용 확대(AI+X), 스마트공장·자율주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9.9조 원(국비 5.2조 원)임
 - 교육·의료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해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무선망 확충, 온라인 교과서·강의 개발 등), 스마트 의료 강화(인공지능 정밀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 등), 원격근무 지원(비대면 바우처 제공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0.7조 원(국비 0.6조 원)임
 - 도로·철도·산단·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항만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국토의 디지털 재현(디지털 트윈), 실시간 하천 관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구축 등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2.1조 원(국비 1.8조 원)임
-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데이터 라벨러⁴²⁾와 같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등에서 일부 성과가 발생하였지만, 국가성장전략이 갖추어야 할 전략성·체계성·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향력·파급력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각각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함
 - 세부 사업 중에는 사업자·개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모든 사업들이 개별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해당 부처의 예·결산 절차만 거치고 있어서 디지털 뉴

42) 데이터 라벨러(data labeler)는 사진·영상 등을 인공지능이 인식·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문(label)을 추가하여 가공하는 직업을 의미함

딜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관리, 환류, 사업간 조정, 향후과제 도출 등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

- 사업의 기획은 비상경제회의·경제장관회의 등이 담당하고,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반장으로 18개 관계 부처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디지털뉴딜반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의체 또는 임시조직만으로는 여러 부처·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책임지고 조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딜이 저성장 경제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인 기관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담조직 신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여론의 견제를 통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의 책임성·신중성 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딜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신기술·신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집행의 용이성은 있지만 '뉴딜'급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혁신관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뉴딜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반 디지털뉴딜지원과

☎: 044-202-6114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1,230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급기업을 우선 모집하고 그 이후에 해당 공급기업의 데이터를 구매·가공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원 대상 수요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혁신과 비즈니스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임
 - 전년 대비 2021년의 예산은 1,064억 원에서 1,230억원으로 16% 증가했고, 공급기업은 765개에서 1,126개로 47.2% 증가했고, 데이터상품은 1,075개에서 1,639개로 52.5%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현재 데이터 구매 1,200건, 데이터 일반가공 480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가공 900건 등 총 2,580건의 바우처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음
-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시 발생하는 절차·제도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1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가격설정 기준, 품질관리 원칙, 법률적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중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국내 데이터 유통 플랫폼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거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고도화할 예정임
-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공급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상품 목록 안에서 수요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 목록에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이터에도 바우처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낮추어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의 가격 형성과 거래량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도 있음
- 공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데이터 상품의 발굴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데이터 거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재산보호에 관한 논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적절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상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수요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수요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수요기업의 요구에 대해서 데이터 공급기업이 지원을 하는 일종의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데이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 정립도 필요함
 -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서 권리의 귀속과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경우에는 경제적·재산적 가치의 인정 및 보호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각 소관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이 데이터 거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데이터진흥과

☎ : 044-202-6290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및 이용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614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래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40억 원이며, 지난 4월 ‘사람중심 인공지능 강국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향후 3,01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선진국과의 인공지능 기술격차 조기 극복을 위한 AI 핵심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 등) 개발, 차세대 AI 원천기술(학습·추론, 비디오 스토리이해) 개발 등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를 추진하고 있으며 2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
 - 정부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민간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개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연구팀을 선발하여 후속연구비를 지원하는 ‘도전·경쟁형 AI R&D 챌린지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과제 20개와 신규과제 20개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비용 경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공급, 인공지능 활용·융합 촉진 등 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4,788억 원을 투입함
 -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AI 바우처’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억 원이며, 총 207개 과제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급함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가 대규모로 구축하여 AI 허브(aihub.or.kr)에 개방하는 ‘AI 학습용 데이터(데이터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3,705억 원임
 - ’17~’19년까지 법률·특허·관광 등 21종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성능 향상을 촉진하였으며, ’20년에는 국토환경·농축수산·헬스케어 등 8대 분야에 170종(4억 8천만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함

- 의료·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AI융합(AI+X)’에 소요되는 예산은 523억 원임
 - AI융합 의료영상진료판독시스템, 신규감염병대응시스템 등을 수행할 예정임
-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AI 학습용 데이터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게 부족하여 데이터 과잉공급 및 인공지능 기술 과소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개발 예산은 614억 원으로 인공지능 관련 예산 5,402억 원의 11.4%에 불과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데이터 댐) 예산은 전체의 68.6%인 3,705억 원임
 - 수요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지원금은 과제당 최대 3억 원인 반면 AI 학습용 데이터 지원금은 과제당 20억 원 내외로 불균형이 큼
 - 다만,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단위당 사업비가 큰 측면이 있음(인건비 1억 원당 2.4명 이상, 클라우드 소싱은 10명 이상 인력 채용)

2 개선방안

- 인공지능 지원 정책의 세부 영역간 균형을 확보하고,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도입 지원과 데이터 지원의 패키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수요가 높지만 현재의 데이터 공급망(데이터 바우처, AI 학습용 데이터 등)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 수준의 맞춤형 데이터 생산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도입 지원과 데이터 제공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진흥과

☎: 044-202-6360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1 현황 및 문제점

- 블록체인 기반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38억 원을 투입함
 -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을 확산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191억 원임
 - 탈중앙화 고성능 합의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기술,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개발중임
 - 블록체인 기술의 부족한 부분(처리속도·확장성·상호연동 등)을 보완하는 핵심기술 및 산업별 특화 분야의 응용 플랫폼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47억 원임
 -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기술 등 블록체인의 기능적 완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하고, 탈중앙화·불변성·투명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정거래·학술논문·물류정보·전자계약과 같은 분야를 발굴하여 블록체인 기반 응용플랫폼을 개발함
- 블록체인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94억 원을 투입함
 -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민간분야의 업무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2021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임
 -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는 지금까지 추진된 소규모 시범적용을 벗어나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검증(PoC)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블록체인 기반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험환경 구축, 평가기준 개발, 시험검증 시행 등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투입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핵심 쟁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사례들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코인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적 기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용한 블록체인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헬스케어, 금융거래, 온라인증고거래, 대체불가토큰(NFT), 코로나19 백신 여권, 전자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사회기획과

☎: 044-202-6130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비대면 사회, 코로나19 등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경험을 하는 메타버스(metavers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확장 가상 세계’ 또는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 상의 세상’을 의미함
- 정부는 기존의 가상·증강현실(VR/AR) 등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메타버스 관련한 XR 사업 예산은 2021년에 279억 원임
 - 핵심기술 개발 측면에서 XR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기능을 메타버스로 확장하기 위한 R&D 신규과제를 기획·추진함(9개 과제, 79억 원)
 - 메타버스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XR 기반 메타버스 산업 민관 협력체계로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킴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12)」 후속조치로 XR 및 미디어 기반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규제 애로사항 발굴, 법률적 쟁점 검토, 협업 프로젝트 기획 등을 추진함
 - XR 적용 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혁신을 위해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함(9개 과제, 200억 원)
- 메타버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보다 3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XR의 관점, 즉 정보통신 기기·콘텐츠·네트워크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은 부족함

- 국내외 메타버스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기존 SNS·OTT를 대체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정책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12.)」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기술적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정책 접근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관련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메타버스에서 보다 강화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될 우려가 큼
 - 메타버스 상에서의 혐오·폭력적 발언이 여과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단순한 메시지·댓글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폭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SNS·OTT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메타버스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역효과 등을 검토하여 정부·사업자·이용자가 협력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메타버스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넘어 사회의 여러 계층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플랫폼이 되고, 메타버스가 또 다른 디지털 격차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콘텐츠과

☎ : 044-202-6350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운영예산은 63억 원임
 - 주요 사업은 ① 제도 상담 및 신청 서류 작성 지원, 신청과제 전문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수행, ②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③ 지정과제의 실증착수 및 시장출시 지원, 규제개선 지원, 이행조건 관리, 법·제도 개선 지원 등 규제샌드박스 사후 관리, ④ 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 확산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활동, ⑤ 접수 신청 및 지정과제 운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지원기구 지원 등임
 - 2019년 1월 제도 시행후 2021년 6월까지 총 111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음
 - 2020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 편의 향상 분야,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분야, 택시 애플리케이션, 모빌리티 플랫폼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통해 신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1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이동 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고해상도 정밀지도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통해 신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ICT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업의 법령상 지위 불안정과 정부의 간섭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함
 - 신청 기업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래의 법제도 개정을 예정하고 임시허가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임시허가 판단 자체가 사실상 미래의 법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되어서 임시허가 판단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시허가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결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기업을 지속적·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임시허가 기업에게는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 임시허가에 대한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6항 개정으로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의무화되었지만, 이것이 본허가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업의 법령상 지위 불안정은 여전히 존재함
 -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정비될 법령 환경에서 임시허가 신청 기업이 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임시허가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장·변경하여 임시허가와 향후 본허가 사이의 간극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임시허가 과정에서 정부는 감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함
 - 임시허가는 법제도 정비의 대안이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 법제도 정비의 대안을 찾는 정책·입법의 학습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임시허가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법제도 개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수집을 기업의 보고의무로 설정할 경우 기업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수집 및 분석은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기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044-202-6140

5G 28GHz 추진 방향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5G 통신의 주파수는 3.5GHz, 28GHz, 두 가지로 구성되며, 28GHz 대역은 3.5GHz 대역보다 빠르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여야 함
-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3.5GHz는 10년 내(2028년까지) 15만 국을, 28GHz는 5년 내(2023년까지) 10만 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 5G 개통 당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임을 홍보하였는데, 3.5GHz는 LTE 대비 3~4배, 28GHz는 LTE 대비 20배 속도를 보이므로 상기 홍보는 28GHz 설치를 전제한 것이었음
 -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2021년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1만 5천 대의 28GHz 장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고 명시함
 - 하지만 이동통신3사는 28GHz를 기업간 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125대(2021년 6월 30일 준공신고 기준)만을 구축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28일 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1년 3월에 발족한 '28GHz 5G 활성화 전담반' 논의 과정에서 각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함
 - 전국 10개 장소에서 28GHz 5G 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이나,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 특정 서비스에 활용하는 한정적인 방식으로 제공됨
 - SKT는 코엑스, 잠실 야구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T는 수원 위즈파크, 목동 체임버홀, 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LGU+은 부여 정립사지·공주 공산성, 광주 챔피언스필드, 벅스코, 충북 음성골프장에서 시범 운영함
 - 또한 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구간의 5개 열차에 28GHz 백홀(backhaul)⁴³⁾을 구성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음

43) 계층적 통신 네트워크에서 코어 네트워크와 가장자리의 작은 부분망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지하철을 예로 들면 승객은 지하철에 설치된 액세스포인트에 연결하고 이 액세스포인트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백홀이라 부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29일 5G 특화망으로 28GHz와 4.7GHz 대역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는데, 28GHz 대역은 4.7GHz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였음
 -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구축하는 망으로,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특정 주파수를 지역별로 나눠 공동사용할 수 있음
 -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GHz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하고, 자가망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감경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까지 목표한 28GHz 장비 1만 5천 대 구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2 개선방안

-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주파수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하였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 044-202-6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 : 044-202-4943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동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음
 - 2021년 3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한 알뜰폰 가입자⁴⁴⁾는 606만 명인데, 그 중 이동통신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7%에 달함
 - 참고로, IoT(Internet of Thing)/M2M(Machine to Machine)을 위한 알뜰폰 가입자는 329만 명이며, 그 중 이동통신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만 명으로, IoT/M2M 가입자의 8.4%에 불과함
 -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알뜰폰 가입자 현황 |

(단위: 천 명)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휴대전화	전체	6,870 (100%)	6,160 (100%)	6,087 (100%)	6,066 (100%)	6,066 (100%)
	이동통신3사 자회사	2,547 (37.1%)	2,587 (42.4%)	2,633 (43.3%)	2,701 (44.5%)	2,774 (45.7%)
	기타 사업자	4,323 (62.9%)	3,519 (57.6%)	3,454 (56.7%)	3,365 (55.5%)	3,291 (54.3%)
IoT/M2M	전체	879 (100%)	3,006 (100%)	3,129 (100%)	3,205 (100%)	3,296 (100%)
	이동통신3사 자회사	251 (28.6%)	271 (9.0%)	271 (8.7%)	271 (8.5%)	275 (8.4%)
	기타 사업자	628 (71.4%)	2,735 (91.0%)	2,858 (91.3%)	2,934 (91.5%)	3,020 (9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 알뜰폰 가입자를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IoT/M2M 서비스 이용자로 나눌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알뜰폰 전용카드 출시, 유통망 확대 지원,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동통신3사 자회사로 알뜰폰 시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알뜰폰 시장 집중 현상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의견 |

발의 일자	의안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2020. 12. 1.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함	각 이동통신사마다 알뜰폰 계열사 수, 알뜰폰 시장점유율 등이 다른 상황이므로 계열회사 수 제한에 따른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 4. 26.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계열사들이 재판매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이동통신3사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에 인한 이동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법률로써 이동통신 3사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개선방안

- 이동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IoT/M2M 서비스와 달리 휴대전화 서비스에서만 이동통신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경쟁정책과

☎: 044-202-6645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2020년도 대학입학시험을 취소하고 인공지능이 담당 교사 평가, 과거 성적분포에 기반하여 산출한 학생의 예상 성적을 대학입학 과정에 활용하려고 하였는데, 공립학교와 빈곤지역 학생의 성적이 사립학교 부유층 학생에 비해 저조하게 산정된 사실이 문제되어 상기 방침을 취소하였음
 - 애플이 2019년에 출시한 신용카드 한도 계산 알고리즘이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한 바 있음
 - 2021년 6월 국내 배달 플랫폼 인공지능 배차시스템을 따르면 배달 이동거리는 늘고 건수는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음
 - 딥페이크 영상이 음란물이나 여론 조작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이 보급될수록 오용을 견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수립이 필요함
 - 인공지능 윤리로는 공정성, 투명성(설명가능성), 견고성, 책무성, 프라이버시 등이 언급됨
-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사회 담론 기초로서 추상적으로 다루었던 인공지능 윤리를 법·제도로 구체화하여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고려한 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법률안, 지침 등의 형태로 특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금지,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요건 수립, 사전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편향성 점검 기구 설립, 인공지능 구동 고지의무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도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을 평가하는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정부가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에 그쳐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5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한정되어 있음

2 개선방안

- 추상적인 논의 단계를 구체화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 속도를 고려하여 참여주체(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공공)별 실천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까지 인공지능 개발가이드북 마련, 민간 자율인증 협의체를 통한 시범 인증,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 기준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상기 정책들의 추진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분야 주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야 함
- 자체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도 인공지능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표준 작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044-202-6276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판매 관련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전파법」 제58조의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전파법」 제5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 |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전자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하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나라 등을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10년 약 5조 원에서 2019년 약 20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고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여 해외직구 빈도가 높으면서도 전자파 장애 위험이 적은 전자기기를 일회성으로 중고판매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해외직구한 전자기기의 중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중고로 판매되는 전자기기 수가 증가하고 드론 등 미인증된 전자기기가 많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위험성과 자원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성과 같은 이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중고판매 시장 현황, 전자파 위험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정된 전자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중고판매를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에 대한 개인별 면제한도를 두고 중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판매의 형사 처벌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 044-202-4957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자기 결정 하에 플랫폼 및 서비스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등에서 일반적 권리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최초 규정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어 있음
- 정부는 2021. 2. 17. 「디지털 경제 대전환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개인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준과 데이터 수집 방식 체계 수립 계획을 밝혔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서비스를 선정하였음
 - (의료) △ 만성콩팥병 환자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신약개발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 제공, △ 중·대형병원 환자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및 통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통합 의료데이터를 제3자(의료진, 활용기관 등)에게 중개, △ 임상기록, 개인건강기록, 유전체정보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공공) △ 병역정보 및 소비 내역을 활용하여 군인·군인가족 대상 모바일 자격 확인, 간편결제 및 맞춤형 할인 서비스 제공, △ 이사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 등의 서류를 데이터세트 형태로 제공하는 행정처리 간편화 서비스 제공
 - (생활소비) 통신사 및 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서비스 제공
 - (금융)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 (교통)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데이터, 근로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출도착·위치 알림 및 개인 소득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미있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사업자 간에 호환 가능한 개인정보 규격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사업자 간에 유사한 형태로 해당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여 그 이동·처리가 용이하여야 함
 - 신용정보의 경우 다른 분야의 정보에 비해 정형화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과정에서 오랜 기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음
 -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플랫폼에 취합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구축된 플랫폼에서 타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실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적 권리로 도입하는 경우,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범위, 이동하는 정보 형태, 그로 인한 비용과 그 권리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분야별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비정형 정보가 일반화된 산업영역에서 특정 표준을 도입하는 경우 높은 비용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이동권에 따른 비용 부담 대상,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 044-202-629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2

양자암호통신 개발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송유관, 지하철 등 주요 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4월 미국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해킹된 바 있으며, 2021년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해킹으로 인해 6일간 가동이 중단되어 휘발유 값이 폭등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가정보원은 2021년 6월 전국 전력·가스·상수도 분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국가 차원의 안보와 생활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보안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양자암호통신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기술은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quantum)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암호 키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기술을 말함
-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전담기관 지정, 민간 기술개발 지원, 양자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함
-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020년부터 시범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난수발생기, 양자내성암호 등 양자 관련 기술을 민간·공공 영역에서 실증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자 2020년에는 150억 원, 2021년에는 140억 원, 총 290억 원이 투입됨
 - 2021년에는 총 17개 구간을 시범 구축하고 있으며, 시험망을 통해 실증하는 과제 특성상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20년도 사업에서는 총 16개 구간을 SKB 8개, KT 6개, LGU+ 2개 구축하였고, 2021년도 사업에서는 총 17개 구간을 SKB 9개, KT 5개, LGU+ 3개 구축함

| 2021년도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 |

분야	수행기관	수요기관
공공분야 (7개구간)	SKB (4개)	대전상수도사업본부(송촌사업소, 대전광역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북구보건소),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서울-고리)
	KT (2개)	강원도청(2군단사령부), 제주도청(교통안전체험관)
	LGU+ (1개)	충남도청(공무원교육원)
민간분야 (10개구간)	SKB (5개)	대구계명대병원(성서-중구), ADT 캡스(보라매, 장안, 삼성) 고려대병원(안암-K-Bio), 평화홀딩스
	KT (3개)	순천향대병원(서울-부천), 현대로보틱스, 블록체인컴퍼니
	LGU+ (2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GS EPS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범 구축 외에도 양자암호통신 칩 집적화, 전송효율 향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추진 중임(2021년 73억 원)

2 개선방안

- 이동통신3사가 수행하는 시범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가 중소기업에게도 이전되고 국내 양자암호통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큰 규모의 정부 예산을 들여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범구축 성과가 이동통신3사, 수요기관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양자암호통신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은 구축 이후 3년간 성과 활용 기간을 두고 운영 및 고도화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각 구간의 선정 이유, 타 구간과의 차별성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자암호통신은 국가 보안에 중요한 기술인만큼 국가정보원 등과의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 044-202-6428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Gbps⁴⁵⁾ 이상 전송속도 상품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음

| 초고속인터넷 전송속도별 가입자 수 |

(단위: 천 명)

전송속도	KT		SK군		LG군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00Mbps 이상 ~ 500Mbps 미만	2,192	2,207	3,539	4,249	1,933	2,387
500Mbps 이상 ~ 1Gbps 미만	4,007	4,374	1,763	1,878	1,679	2,036
1Gbps 이상	882	1,097	87	140	75	252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2020년도)」 재구성

- IT 관련 유튜버가 2021년 4월 KT 10기가(Giga)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00분의 1에 불과한 100Mbps 성능을 보인다고 공개 비판하였고, 아파트단지 설계상 10기가 속도가 불가능함에도 해당 단지 주민에게 10기가인터넷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보도됨⁴⁶⁾
 - KT는 IT 관련 유튜버 견에 대해서 인터넷 설치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잘못 이관되어 속도 설정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일 뿐이며, 전수조사 결과 고객 24명에게 동일한 문제가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고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최저보장속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속도 저하 현상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여도 당일 이용요금 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해약만이 가능함
 - 통신사들은 인터넷 상품 약관에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저보장속도는 상품 속도의 30~50% 수준이며 빠른 속도의 상품일수록 보상 기준의 성능률(%)을 낮게 설정하는 측면이 있음

45) Gbps는 Gigabit per second, Mbps는 Megabit per second로, 1000 megabits은 1 gigabit와 같음

46) 정다원, 「인터넷 속도 느려도 승인? '강제준공' 남용」, 『KBS』 2021.4.28.

- (KT 약관상 보상기준 속도) △ 10기가인터넷 최대 10Gbps 요금제 보상기준: 3Gbps (30%), △ 10기가인터넷 최대 5Gbps 요금제 보상기준: 1.5Gbps(30%), △ 10기가인터넷 최대 2.5Gbps 요금제 보상기준: 1Gbps(40%), △ 기가인터넷 최대 1Gbps 요금제 보상기준: 500Mbps(50%)
- 일반적으로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하여 특정 횟수 이상 최저보상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용약관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모든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설정하는 방침을 통신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1~2개월 내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통신사는 통신국사에서 시설분기점까지만 통신사 책임 구간이고 통신속도는 장비의 수용 인원, PC 성능, 순간적인 트래픽양 등 통신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PC에서 측정된 속도 기준을 최저보장속도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개선방안

- 상품명으로 인해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속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 시 통신사가 '최저보장속도'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속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속도 측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 : 044-202-6653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 : 02-2110-1542

전국 디지털배움터 운영 개선

1 현황

- 2020년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음
 - 기존에는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농·어업인,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정보화교육(방문 및 집합교육), 정보복지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였음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하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변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실시되며 전 국민을 교육대상으로 함
 - 17개 광역지자체·215개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디지털배움터는 연간 약 1,000개소씩 교육 과정을 순환 운영함
 - 교육내용은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초 작동법부터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전자정부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용 교육과 사이버 사기 등에 대비한 역기능 교육까지 포함 되어 있고,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기초 - 생활 - 심화로 나누어 개개인의 계층·수준 등에 맞추어 시행함
 - 정해진 장소에 학습자가 찾아가는 ‘고정형’과 학습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이동형’으로 운영하고, 지리적·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 추진함
 - 특히 ‘디지털배움터’는 교육내용의 반복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누구든지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이와 같은 디지털배움터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2021년 약 678억 원(1,000개소×9.7백만 원×5개월+1,000개소×9.7백만 원×4개월×0.5)의 예산 규모로서, 과거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예산 약 60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함

| 지역별 디지털배움터 현황 |

지역	총괄거점센터 ¹⁾	거점센터 ²⁾	일반 디지털배움터 ³⁾	합계
계	17	214	769	1,000
서울	1	25	114	140
부산	1	16	92	109
대구	1	8	18	16
인천	1	10	29	31
광주	1	5	26	32
대전	1	5	30	32
울산	1	5	14	20
세종	1	1	10	12
경기	2	23	99	124
강원	1	12	40	65
충북	1	11	38	50
충남	1	15	36	52
전북	1	14	43	58
전남	1	22	62	85
경북	0	23	62	86
경남	1	18	38	68
제주	1	1	18	20

주 1: 광역지자체의 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20명 내외 규모의 교육장 1개 이상을 구비해야 함

주 2: 기초자치단체 내 디지털배움터 총괄 운영·관리하며, 10명 내외 규모의 교육장 1개 이상과 기초단체 지역 소관 강사·서포터즈 소그룹회의, 방문교육·온라인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주 3: 디지털배움터 내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디지털 헬프데스크 운영 등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2021. 6. 2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지향

- 현행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이 중 고령자, 농·어업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전체의 약 20% 내외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집합정보화교육의 물리적 한계가 많은 수의 디지털배움터 개소를 통해 개선된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의 수요 및 수준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함

- 도시와 지역의 고령층은 일상의 모습과 주변 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교육의 내용도 다양함

■ 교육 강사에 따른 교육 품질차이 해소

- 실제로 지역별·계층별·수준별 차이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별로 교육 과정과 내용이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중앙 차원에서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를 통해 강의 수준과 내용이 조정되고 있음
- 이렇다보니 교육 강사에 따라 교육 내용과 품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총 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 비율로 구성되어 지자체 예산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디지털배움터가 집 근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활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공간이 가진 인프라 차이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도 달라질 수 있음
-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편적인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및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각 지역 현실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044-202-615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기획팀

☎ : 053-230-1351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산업 경영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우정사업본부는 통상우편 물량 감소로 인한 우편사업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편사업 수익확대를 위해 통상우편 물량의 감소에 대응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창구소포·방문접수소포와 집배원 배달 부담이 적은 초소형소포를 활성화하여 소포사업 수익성을 강화함
 - 비용절감을 위해 우체국의 일부를 우편만 취급하는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우편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를 추진함
 -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소상공인 판로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쇼핑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고, 우체국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기업의 공적역할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함
- 우편 배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집배원 주5일 근무 확대를 위한 농어촌지역 소포전담인력 증원, 업무량 진단을 통한 집배원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배달환경 변화를 반영한 집배인력 재배치, 안전운행 실천 및 사고 방지, 기상특보 발령 및 물량 폭주시 집배원 귀국시간 확인, 집배원 건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함
- 이와 같은 경영개선 전략은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합리화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우편사업이 처한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의 지위와 기업의 지위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경영합리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익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경영개선이 추진됨
 -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인력의 감축관리를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감축관리 방식은 통상우편 감소라는 현재의 우편사업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우편사업 환경과 수요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상황만 고려하여 시설·장비·인력을 감축할 경우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우편사업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장비·인력을 다시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개선과제가 우편배송이 이루어지는 일선 집배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사무직·중간관리자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와 대안은 모색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우편사업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공익성이 필요한 부분과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영개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효율성 중심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신자유주의적 경영혁신 원칙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효율성 기준과 공익성 기준 적용 방안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우편사업 기능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우체국이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공익 모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우편사업의 사무·관리 분야 실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일선 집배원의 시간관리·동선관리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무·관리자의 역량에 따라서 집배업무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 044-200-81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비정규직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사의 직종 중 카메라, 영상, 음향, 작가, 리포터 등의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음⁴⁷⁾
 - 방송사의 인력을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직,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비정규직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방송직 중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작관련’이 25.3%를 차지하고, 방송직 중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가 21.8%를 차지함⁴⁸⁾

| 방송산업 매체별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

(단위: 명)

유형	전체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방송사업자 전체	37,553	258	540	6,010	4,057	4,935	678	4,849	2,051	4,290	469	6,206	3,210
직종별 구성비(%)	100.0	0.7	1.4	16.0	10.8	13.1	1.8	12.9	5.5	11.4	1.2	16.5	8.5
정규직	33,477	236	476	5,518	3,934	4,626	558	3,816	1,161	4,127	455	5,870	2,700
비정규직	4,076	22	64	492	123	309	120	1,033	890	163	14	336	510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0, p.61.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0, p.61.

유형	전체	대표	임원	경영직	방송직					기술직	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정규직 직종별 구성비(%)	1000	0.7	1.4	16.5	11.8	13.8	1.7	11.4	3.5	12.3	1.4	17.5	8.1
남자	22,871	217	443	3,473	2,999	3,003	249	2,828	517	3,873	321	3,542	1,406
여자	10,606	19	33	2,045	935	1,623	309	988	644	254	134	2,328	1,294
비정규직 직종별 구성비(%)	1000	0.5	1.6	12.1	3.0	7.6	2.9	25.3	21.8	4.0	0.3	8.2	12.5
남자	1,688	22	58	146	62	150	35	494	270	135	7	69	240
여자	2,388	0	6	346	61	159	85	539	620	28	7	267	2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0, 61쪽에서 일부 발췌함.

- 특히 방송·미디어 산업계에는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의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데, 이들의 노동 환경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최근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 PD 사망사건과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판정 등 비정규직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상파방송 3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방송계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비정규직 인력 현황, 근로실태 자료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 재허가 및 인수합병 심사에서 고용 인력 및 근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분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⁴⁹⁾

2 개선방안

- 방송계의 비정규직 인력과 노동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나 죽음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방송계의 비정규직 인력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실태조사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18);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2021.6.22);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15).

- 방송사업자·업무·계약 내용·성·나이 등 여러 유형별 비정규직 실태와 임금·노동시간·부당한 계약 등 노동 환경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직시하여 사업자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거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같은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되, 기본적으로 동일 직장·동일 노동·동일 임금과 같은 합리적인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관련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송진흥기획과

☎: 044-202-6544/652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 044-203-3239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지, 치매에 걸린다는지⁵⁰⁾ 등의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부처⁵¹⁾와 함께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임⁵²⁾
 - 2021년 2월 9일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백신 허위조작정보 국민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자 함⁵³⁾
 -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백신’을 검색하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고, 백신과 방역지침 등 관련 정보를 KBS 등을 통해 제공하며, 경찰청·질병관리청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조치하도록 함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국민은 허위조작정보 국민제보 게시판의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2021년 1월 22일 기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팩트체크는 일부에 그치고, 추가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50) 박동해,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백신 가짜뉴스 유포 여전」, 『news1』 2021.2.28.

51) 질병관리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2)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021.2.9. 보도자료.

53)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15.)

2 개선방안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할 경우 받는 처벌, 예방 그리고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결과를 유발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허위조작정보 국민제보 게시판과 팩트체크 사이트 주소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회를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언론 보도나 SNS 등 개인 미디어에서 허위로 조작하여 유포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와 방송·통신 심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론장의 기능을 하는 언론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채널이 되지 않도록 언론인 교육 등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02-2110-1538

방송 협찬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프로그램제작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데, 이 경우 「방송법」 제74조, 「방송법시행령」 제60조,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찬고지를 함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하고(제3조),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되며(제5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함(제4조)
 - 상품이나 상품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고, 특히 보도·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됨
- 특히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다수 아침·저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협찬받은 식품의 섭취가 다이어트 및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기도 함
 - 협찬받은 사실을 제대로 또는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제품의 섭취기준이나 부작용 등의 내용 없이 특정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방송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작용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유사한 시간대의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바로 등장하는 방송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제작 경비 협찬을 의무적인 협찬고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부적절한 협찬주 광고효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⁵⁴⁾
 - 2020년 10월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의 정의, 금지대상,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을 「방송법」에 규정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⁵⁵⁾

54)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15.)

2 개선방안

- 방송사업자 및 방송프로그램별 방송협찬 현황, 협찬고지 위반, 광고효과 유발, 금지행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파악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방송프로그램 협찬은 방송사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작비 조달 차원에서 방송사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협찬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협찬 고지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건강식품 관련 정보가 많이 방송되어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사의 협찬고지 준수를 유도해야 함
- 방송 협찬제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 및 제도의 예측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법」은 협찬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허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세부기준 및 방법과 방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⁵⁶⁾
 - 간접광고와 협찬제도는 방송프로그램 내의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규제는 나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시청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통합함으로써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⁵⁷⁾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 02-2110-1264

5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2104634).

5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04634호)」, 2020.11.

57) 정연우, 「방송 협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6.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1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을 통해 다수의 방송 채널을 묶어서 구성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함
 -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PP는 방송 채널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양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체결되며, 적절한 수준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IPTV 사업자인 LGU+와 PP인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2021년 6월 12일 0시부터 LGU+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됨(2021년 7월 8일 기준)
 - LGU+와 CJ ENM은 지난 1월부터 IPTV와 모바일 TV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해왔는데, CJ ENM은 사용료 인상과 모바일 TV의 별도 협상을 요구하였고, LGU+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모바일 TV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중단됨
 - CJ ENM은 콘텐츠(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콘텐츠에 대한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LGU+는 거대 PP의 무리한 사용료 인상이라는 주장임
- 유료방송사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은 결국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 계약에 의한 사안이라고 간주하면서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⁵⁸⁾

58)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15.)

-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및 제도 현황, 유료매체별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비율, 플랫폼-콘텐츠사 간 공정거래를 위한 채널 평가 및 사용료 배분구조, 채널 구성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콘텐츠 대가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⁵⁹⁾

2 개선방안

- 인터넷동영상플랫폼인 OTT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료방송사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거래의 원칙과 기준이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 간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협상이 결렬될 때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유료방송사 간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송 중단(채널 공급 중단)은 사업자 간의 협상에 의한 단순한 결과가 아니며, 유료방송사 간의 협상 결렬로 가입자가 원래 시청하던 채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방송이 중단되기 전에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또는 법령상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현재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방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18.)

- 사업자 간의 협상력이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작권 위탁관리 개념으로 접근하여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방송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방송시장에 온라인 음원과 같은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음⁶⁰⁾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02-2138-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044-202-6542

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 대가 산정 합리화 방안 연구」, 2020.

OTT 서비스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직적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방송서비스는 방송관련법, 통신서비스는 통신관련법의 적용을 각각 받고 있음
 - 지상파·위성·케이블 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고 있고,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이나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서 통신관련법으로 규율받고 있음
 - OTT는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이며,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방송과 OTT가 전송 수단만이 다를 뿐 동일한 영상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OTT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법률체계를 통해서 변화된 시장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송과 OTT에 대한 융합 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⁶¹⁾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이용자보호·경쟁활성화 등의 규제 목적, 사업자의 규모, 해외법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OTT 정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연구에서 마련될 예정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OTT규제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OTT에 대한 규제 방향에 있어서도 각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6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경우 OTT에 대한 규제 원칙을 밝혔을 뿐, 방송과 OTT를 어떠한 방향과 수준에서 규제할 것인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OTT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 OTT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별도의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일부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OTT 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 바 있음
 - OTT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부처가 소관 법률로 규제할 경우, OTT에 대한 규제 원칙과 내용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2 개선방안

-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닌,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OTT에 대한 규제 시, 유료기반의 OTT가 아닌 광고 기반의 무료 OTT(예: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 OTT의 규제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의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부처에서 OT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 시 소관 부처간에 합의와 조정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02-2110-1412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 모바일앱, 라이브커머스, 인터넷방송 등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⁶²⁾
 - 모바일앱에 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바일앱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2020년 12,354건을 모니터링하였으며, 2021년에 12,500건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구독경제 기반인 주요 모바일앱에 대해 이용 결제, 환불 등 계약시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함(2021.4.)
 - 모바일앱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법적 실효성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 예정임
 - 라이브커머스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피해 등에 대응하고 있음
 - 일부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할 예정임(2021년 중)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예정임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등의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2021.6.1.~2021.12.31.),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인터넷방송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인터넷방송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콘텐츠제작자)간에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인터넷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2021.2.)
- 유료 기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에 있어 현행 법령상 제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효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음

62)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 모바일앱 결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계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시 실질적인 구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 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인터넷방송에서 유료로 대가를 받고 하는 상업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의 경우 광고관련 법령에 근거에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 법령의 소관 업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 보임

2 개선방안

- 뉴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법상 플랫폼 이용자 보호가 타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해 자율권고적 조치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업계에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 및 현행법 통해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 방안에 대해서도 타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거래 및 계약 등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기존 일반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법적 주체를 포괄하여 규제하고 있는 일반 부처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일반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특별법적 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02-2110-1512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다음과 같음⁶³⁾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중앙수습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2020.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주1회 → 2회)하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및 차단하고 있음(총 4,624건 심의, 200건 시정요구, 기간 2020.1. ~ 2021.1 기준)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삭제 및 차단조치하고 있음
 -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넷”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부 합동으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함
 - 2020년 4월에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막임자 지정 현황 조사(2021.2.), 유통방지를 위한 투명성보고서 게시 현황조사(2021.3.),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지정을 고시함(2020.12, 2021.4.)
 - ※ 법률상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삭제 의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막임자의 지정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도입됨(「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한 정책에 한계가 있음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카목의 사회 혼란야기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한정해

63)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⁶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주로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플랫폼의 자체적 삭제 조치, 투명성보고서 제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차단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상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실효적 규제 및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적인 삭제 및 차단조치를 유도하는 법제도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 제작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음란물사이트, 메신저, SNS를 통해 다수의 국내 제작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불법정보의 신고·모니터링·삭제 및 차단에 있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 02-3219-516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 02-3219-5830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2021.7.5.)

인터넷 역외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 해외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법률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음⁶⁵⁾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림
 -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총 8억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함
 - 구글 안드로이드 앱마켓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음
 - 구글 안드로이드 앱마켓이 아닌 제3의 앱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서비스에 대해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한한 행위, 구글 앱마켓에서 다운로드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 중임
 - 해외온라인플랫폼의 국내대리인지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근거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갖지 않는 해외플랫폼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제32개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며, 2021년 6월부터 이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점검 중에 있음
- 해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해외플랫폼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의 경우 제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효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구글 안드로이드 앱마켓의 오토서비스 차단 및 인앱결제 강제의 문제를 B2B(Business to Business)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규제 문제로 볼 수 있음

65)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주로 이용자 보호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규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해외플랫폼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사업장 운영의 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등 전형적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⁶⁶⁾

2 개선방안

■ 해외플랫폼사업자의 불법행위 성격을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제도 방안 마련도 검토가 필요함

- 구글 안드로이드 앱마켓 및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의 성격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일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
-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제도가 국내법에 합치되어 운영되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위법시 법률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02-2110-1512

66) 권하영, 「구글·애플·페북이 같은 건물에? ‘국내대리인’ 제도 부실 논란」, 『디지털데일리』, 2021.4.19.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⁶⁷⁾
 - 해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함
 -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회의(2020년: 4회, 2021년 1회)를 통해 전향적인 자율규제 협조 및 정책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해외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2020년) |

(단위: 건)

구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
요청	1,161	2,030	2,024	7,551	20,645	33,411
이행	912	1,786	1,732	6,616	17,412	28,458
이행률(%)	78.6	88	85.6	87.6	84.3	85.2

- 국내플랫폼사업자가 명확한 불법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포털, 웹하드, 인터넷 개인방송사 등 총 63개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여(2020년 61개사 참여 → 2021년 63개사 참여), 자율규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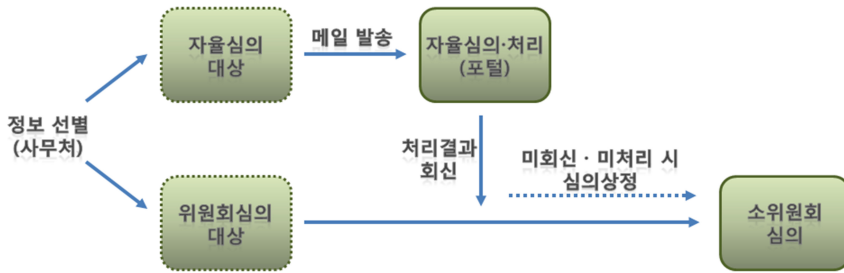
|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성과 |

구분	2020	2021.5.
참여업체	61	63
조치(건)	8,734	3,593

※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이전단계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심의와 처리를 요청하는 것임

6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 업무절차도 |



-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해외인터넷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 공조에 있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예를 들어 텔레그램 등이 국제공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국내인터넷플랫폼의 실질적인 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이행하는 수준에서의 업계의 콘텐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2 개선방안

-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온라인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등을 국제공조점검단에 포함하여 국내법 위반 정보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음
 - 국내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조치의 확대를 위해 현행 불법·유해 정보 규제 of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정책과
☎ : 02-2110-15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 : 02-3219-5120

디지털미디어 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교육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⁶⁸⁾
 - 범부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수립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20.8.)을 이행 중임
 - 동 종합계획에는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성 확산과 관련한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신규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2020년 충북 및 세종 2개소 추가 확충, 현재 전국 10개소 운영) 및 소외계층과 도서·산간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2020년 204회 운영) 등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2020년 48.9만명 실시)·학교(2020년 400교 지원)·마을(2020년 80개 마을 지원)·소외계층(2020년 27,937명)·시민(시민 참여 페스티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사 대상 원격강의 제작 지원(2020년 총 326개교 3,099명 지원) 및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인 “미디온”을 구축함(2020.10.)
-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의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학생을 대상으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과정에 디지털미디어 역량의 반영을 검토하는 수준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며⁶⁹⁾,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68)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30)

69) 관계부처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2020.8.27.

-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교육은 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장소로의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하면 대중화된 교육이 어렵고, 교육 수혜 대상을 넓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전반적으로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핵심적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추진 기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으로 다양하여 세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상시적인 추진 및 대중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관련 교육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함
 - 공공 교육 차원에서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수혜 대상, 소관 부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목표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교육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아 대상의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경우 및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학교 외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디지털미디어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유사·중복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6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여 거래 관계에서의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 등에 힘입어 포털, 정보 교환, 거래 중개 등 전 영역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각국 정부가 관련 감독과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
 - 유럽 집행위원회는 정보통신총국의 주도 하에 2019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을, 2020년에는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디지털시장법안」을 마련하였음
 - ①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 Act)」: 온라인 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고지 의무, 불법콘텐츠 처리, 광고 투명성 등을 부과
 - ②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 Act)」: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타 서비스로의 전환 제한 행위를 금지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1년 6월 11일 빅테크기업을 겨냥한 5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 4개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① 「미국 온라인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
 - ② 「플랫폼 경쟁과 기회에 관한 법률안(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를 제거하거나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업 인수를 하는 것을 금지
 - ③ 「플랫폼 독점 종식법안(The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 즉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
 - ④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안(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사업자와 이용자의 진입장벽과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을 지원

-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 공개, 평가 체제 등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이 상정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서비스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자율적인 실천 규범 형태로 발표하였음
- 상기 기본원칙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내부 규칙 제정 및 분쟁 해결 실천을 내용으로 함

2 개선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전문규제 경험을 살려 각국 정책·규제 현황과 국내 시장만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결부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관련 규제 체계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 집행에 그치는 현상을 경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 방안, 해외와의 공조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청과

☎ : 02-2110-151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책 지원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에 설치되었는데, 원자력안전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0년부터 운영되어 왔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는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과 국제협력 지원 등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
- 한편 2012년에 「민법」에 의거하여 (재)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15년 이 기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설립되었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1항)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사업 범위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지원 등임(「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2항)
- 과거에는 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재)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설립된 이후 두 개의 기관이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음⁷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정책단은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개발, 국내외 원자력안전 정책동향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발굴 및 정책안 마련 등을 담당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정책센터는 소통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인지적 측면의 정책·제도 개선, 정책방향 제안 등 종합적인 원자력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목적이 상이하므로 양 기관의 업무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에는 변화가 없어 양 기관 간 정책수립 지원 기능에서 연계·조정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은 2011년 7월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음

2 개선방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사업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부적인 조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 관련 타 부처의 주요 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02-397-7266

70) 기관별 정책담당조직의 담당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2021년 6월)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임

해수 방사능 농도 감시 강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이후, 국내에서는 해양으로 흘러들어올 방사능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제도적·외교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해역의 해수,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등을 분석하여 해양의 방사능 이상상황을 탐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안 5.5km~300km 이내 동·서·남해안의 정점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수를 채취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핵종별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며, 주요 분석핵종은 세슘, 삼중수소, 스트론튬, 플로토늄임
 - 2020년에는 삼중수소의 감시를 강화하여 분석지점을 기존 54개에서 71개로 확대(원안위 22개 → 32개, 해양수산부 32개 → 39개)하고 일본 해수 주요 유입경로 6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수 방사능 농도분석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 |

핵종	조사지점	조사주기
세슘(¹³⁷ Cs)	32개	연 4회 (주요 6개 해수 유입지점은 월 1~2회)
삼중수소(트리튬, ³ H)	32개	연 1회 (주요 6개 해수 유입지점은 연 4회)
스트론튬(⁹⁰ Sr)	16개	연 1회
플로토늄(²³⁹⁺²⁴⁰ Pu)	22개	연 1회

-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 표층 해류뿐만 아니라 중층·심층 해류를 통해서도 흐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⁷¹⁾ 현행의 표층수 정점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음

71) HidekiKaeriyama 외 3인, "Radiocesium in Japan Sea associated with sinking particles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222(2020).

-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인 부이(buoy)는 현재 표층에만 띄워져 있어 태풍으로 인한 유실,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해 감시에 공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이동하여 시행하는 정밀분석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어 효과적인 해수 방사능 감시에는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 해수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적시성을 위해 해상에서 즉시 분석 및 방사성물질의 이동·분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항해 어업선(단속선) 하부에 측정기를 붙이는 경우 배의 이동과 동시에 연속적인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부이가 부착된 배의 항해가 늘어날수록 우리 연안에 대한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관할 지자체 및 선주, 선사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나, 선박경로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수집될 수 있어 동의를 용이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층 부이뿐만 아니라 수중방사능감시기와 같은 물 속으로 띄울 수 있는 형태의 부이에 대한 설계변경 혹은 제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해(公海)상 중·저층 해역에 감시기를 띄워 선박경로를 피해 유실 우려를 줄이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저층 해수 길목에서 보다 연속적 관측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채취한 시료를 해상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분석 기술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확충하여야 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 02-397-7314

방사성물질 누설에 대한 감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기준치의 약 18배에 달하는 삼중수소의 검출이 알려지면서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고농도 방사성물질의 누설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짐
-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및 관련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액체, 기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 허용기준치는 동 고시 농도기준(제6조 배출관리기준)과 선량기준(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기준)에서 규정됨⁷²⁾⁷³⁾
 - 즉 원자력발전소는 운영 중 기체 또는 액체의 형태로 방사성핵종을 배출하며, 이 물질은 주변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 배출되는데 이를 계획적 방출이라고 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배출’은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고, ‘누설’은 사전에 계획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 내외로 나간 경우를 말하며, ‘방출’은 누설과 배출을 총칭함
 -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부지경계)에서 원안위가 정한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계획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의 외부환경으로의 방출이 확인되는 경우,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건조사 전문 인력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원인, 안전조치 적절성, 재발방지 대책 등과 함께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함

72) 배출관리기준은 녹아있는 핵종의 농도를 규정하며,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핵종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방사성물질의 배출에 의해 피폭되는 방사선량값의 제한치인 선량기준으로 관리함

73) 핵종별 배출농도 기준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배출관리기준 [별표3]을 따름

- 누설은 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고,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여 외부로 나간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유해성이 클 수 있음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05년 일리노이 주 Braidwood 원자력발전소 주변 우물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누설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⁷⁴⁾
-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성물질의 계획적이지 않은 누설은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와 같이 일반적으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 운전 조작 실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설물에 의한 인적·환경적 영향평가를 위해 지하수 감시를 시행하고 모든 누설 사례를 기록할 것을 권고함
 - 원자력발전소 내 주요 누설원은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3가지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2 개선방안

- 방사성물질의 감시 및 측정결과는 해당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및 원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내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감시뿐만 아니라 원전 부지 특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도 수시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원전 부지 내 추가적인 감시관정의 설치 및 감시와 함께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누설의 주 원인인 설비 열화의 조기 감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하배관 건전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시료 채취 및 조사 빈도는 해외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환경방사능 감시 시료 채취지점의 수는 원전 내 각각의 건물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수가 적어 누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⁷⁵⁾

74) 박수찬 외 5인, 「해외원전 비계획적 방출 및 한국의 환경감시 현황 분석」, 『지하수토양환경』 제23권 제4호, 2018, p.4-5.

75) 위의 글, p.14.

- 미국은 방사성물질의 누설에 대한 특별한 대응 혹은 규제는 없더라도, 인간 및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업자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누설에 대한 상시적인 규제와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국은 주민의 신뢰 확보 및 원전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으로 삼중수소의 마시는 물에 대한 환경보호국(EPA) 기준인 740 Bq/L-1(음용수가 아닌 경우에는 1,110 Bq L-1 이하)를 기준으로 원전부지 삼중수소 환경방사능 평가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⁷⁶⁾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 02-397-7288

76) 손옥·이갑복·양양희,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해외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 및 감시 기술현황 분석」,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13, p.129.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규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되는 국가중요시설이자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310조 등에 따른 통제구역 내 비행금지구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으로,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 3km) 이내는 합동참모본부, 원전 반경 18km(지상고도 5.5km) 이내는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함
 - 구역은 사용목적에 따른 관제구역/비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으로 나뉘며 통제구역은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인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 나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불법 드론(드론 추정 비행체 포함)이 감지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실제 위협이 되었던 사례(시설 충돌, 드론 테러 등 원전 시설 피해)는 없으나 드론 및 조종자가 미확인된 경우가 9건에 달함
- 원자력발전소에서 불법 드론이 감지되면, 사업자는 “드론 발견 시 행동요령”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군·경 등의 출동을 요청하며, 이후 군·경이 지역 수색, 수사, 대공 용의점 조사 등을 수행함
 -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찰청 등은 발견된 드론의 조종자 수색 등 초동조치를 수행하며, 이후 경찰청이 수사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에 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항공안전법」은 주로 안전비행에 대한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일부 형사벌칙 조항을 제외하면 비행 시 지켜야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과태료 기준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함

- 둘째, 현재 원전 인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드론은 국방부의 레이더에 잡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이 아닌 일반 레저용 등의 소형 드론이며, 이러한 드론 감지를 위한 재정적·구조적·기술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셋째, 현행 「항공안전법」 및 「항공보안법」은 과거 유인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초점을 두고 제정된 법령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드론에 의한 위·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새로운 보안환경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3차까지 과태료 금액을 위반 차수에 따라 증액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최근 사례별 통계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사안별로 세부적 위반행위를 구분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의 전환이나 과태료 상향 등의 개선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안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의에 의한 대인·대물 위협행위, 개인의 사생활 촬영행위,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택 등 사유지 무단 침입행위 등 드론에 의한 신종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상 불법행위 태양의 신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감지해 즉시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등의 기술개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드론의 주파수 GPS를 교란시키는 드론 재밍(jamming) 기술을 비롯한 전파교란 기반 안티 드론 기술은 국가안보·국민안전에 중대·긴급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전파법」 제29조 등의 개정을 통해 허가되었으며, 불법드론 방호 등 혼신 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책임 감경의 근거가 신설된 바 있음
- 현재 원전은 불법드론 감지를 위하여 영상탐지기술을 활용한 장비인 군(軍)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침입을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대공위협 대응용 고성능 감시시스템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불법행위에 대한 수색·수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원자력발전소 검사를 위한 목적에서부터 우편 배달까지 광범위하게 드론을 활용하는 만큼,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드론 안에 든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⁷⁷⁾ 경찰의 드론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 드론 등과 같은 소형무인기의 위·불법 행위를 규율하는 별도 법안 제정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 정부가 드론에 관한 법규를 검토하고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은 2015년 총리 관저 옥상에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되면서부터로, 같은 해 무인 항공기의 비행 및 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법인 「항공법」을 개정해 중량 200g 이상 드론의 공항 주변 및 주택 밀집 지역, 150m 이상의 상공과 야간비행 등을 규제함으로써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⁷⁸⁾
 - 2016년에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천황 거소, 외국공관, 원자력발전소 등과 그 주변 300m까지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드론 규제법(「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⁷⁹⁾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

☎ : 02-397-7353

77) 김용근·황호원,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9, p.34.

78) 김영주,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p.3.

79) 김민지, “드론 규제법 개정에 반발하는 언론계”, 『신문과방송』 제583호, 2019, p.130.

해상 부유원전 대응

1 현황 및 문제점

- 해상 원전은 육상 원전에 비해 출력은 작지만 부지 확보 문제가 없고 전기생산 단가나 건설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며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음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이 지진과 해일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 바다 위에 발전소를 띄우면 지진과 해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바닷물로 자연냉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함
- 다만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여 해상 악천후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육지보다 대응이 어려우며 바닷물 속 염분이 원전의 철재 구조물이나 부품을 더 빨리 녹슬게 할 수 있으며, 테러나 침몰과 같은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해외에서 해상 부유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중국은 2010년부터 해상 원전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9년 7월 하이난성 창장(Changjiang) 부지에 중국 최초의 소형모듈원전 실증로(125MW 급)인 ACP 1000 Linglong One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목표로 해상 부유원전 건설을 추진하였음
 - 2021년 3월,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을 통해,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등 선진 원자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러시아는 북극해 일대에 배치된 석유시추선 전력공급을 위해 2019년 세계 최초로 발트해와 노르웨이해를 가로지르는 해상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인 ‘아카데미 로모소노프’호를 출항시킨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북극해로 이동하는 러시아 해상 원전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으나, 미국은 당시 해상 원전에 탑재된 소형원자로가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위험성과 함께 시베리아 동부로 이동할 경우 자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주변 국가의 원전사고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실제 방사능 영향은 사고원전 상태, 방사능 누출량 및 누출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중국이 해상 원전 건설 지점으로 결정한 곳은 우리나라와 직선거리로 약 400km 떨어진 산둥성 인근 서해로서 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외국 정부가 자국 영해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교채널과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정보공유 체계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TRM)는 원자력안전 규제 활동 및 비상대응 체계 공유 등 인접국 간의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중국의 국가핵안전국(NNSA),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협력 약정을 통해 2008년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주변국의 해상 원전 건설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유를 요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 원전은 원자로이자 동시에 선박이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리 및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해상 원전이 인접국이 공유하는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수시로 검사받으며, 이상 발생 시 즉각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동대서양환경보호조약(OSPAR Convention)이 6대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방사성물질 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⁸⁰⁾와 유사하게, 해상 원전이 위치하는 해역에 인접한 국가들과 환경보호협정 등을 체결하여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02-397-7214

80) 홍기훈, “중국의 해상원자력발전 추진과 해양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5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P.3.

방사능방재계획 내실화

1 현황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목표임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연도별 국가방사능방재 집행계획 수립 및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32개)는 집행계획 및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제출함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은 방사능방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관할 지자체가 지역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확대를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함
- 당해 연도 방재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교육·훈련 등 방재역량 강화계획, 시설·물품 확충·관리계획 등 매뉴얼 제·개정 계획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소개·대피, 이재민 수용방안 등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내용을 포함함
- 지자체 간 방재계획의 통일성을 위해 광역지자체는 원안위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소관 기초 단체에 별도의 수립지침 제시가 가능하며,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기관(지역 군·경·소방·교육기관 등) 및 원자력사업자는 지자체의 방재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021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지침은 방사능방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 범위·인구수를 고려한 이재민 수용대책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및 구호소 세부 운영계획 수립·보완,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주민 대피·소개 계획 구체화 및 군·경·소방기관의 협조·지원체계 강화계획, △방사능재난대책 이행에 필요한 구호물품·비상대응물품 등 방재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효과적인 방사능방재체계 마련을 위해 현행 방사능방재계획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첫째, 매뉴얼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 각 부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세부적인 행동 요령 및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모든 부처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각 부처 매뉴얼이 모두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안위는 매뉴얼 용어 확인 및 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부처별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의 행동요령이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면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반복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둘째, 지역 중심의 방재대책 체계 및 매뉴얼 마련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각 지방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설 방사능재난 전문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추진과 실천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야 함
 - 이런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별 방사능방재계획 및 그 실천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시설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각 주정부별로 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각 시설 및 기관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핵안전보장국 연방방사선 감시 평가센터(NNSA FRMAC)와 같은 재난전문조직이 추진하는 방식임
- 셋째,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 강화
 - 현재 고리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부산시의 경우 20~21km, 울산시는 14~24km로 설정되어 동일한 원전이라도 지자체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상이하나, 기상 상황에 따라 범위 이상으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날 수 있고 구역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오히려 주민 대피 등의 효율적인 방사능방재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자체보다는 기상, 지형, 도로망,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함⁸¹⁾

81) 홍덕화,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과 개선방향: 재난취약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제13권 제5호, 2017, p.112-113.

- 최근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이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일부 지역의 자발적 협력에 국한된 만큼 광역 단위의 방사능방재 대책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실질적인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훈련의 내실화

- 현행 대피 시뮬레이션은 자발적 대피자 규모, 기상 상황에 따른 사고 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대피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⁸²⁾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방사능방재훈련의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비상상황 시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내실화하여야 함
-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신속한 이동 및 대피가 어렵거나 재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은 요양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등 거동 불편자 수용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동 수단 등 소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 이상의 실질적인 대피계획은 미흡함⁸³⁾
- 갑상선방호약품의 경우 평상시에는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보건소 등에서 약품을 보관하는데, 복용이 필요한 경우 집결지에서 수령하여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사선 피폭 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높고 혼란스러운 대피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사전 배포가 낫다는 반론이 있으므로,⁸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 : 02-397-7358

82) 홍덕화,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과 개선방향: 재난취약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제13권 제5호, 2017, p.114.

83) 위의 글, p.115.

84) 김광수, 「방사선용 요오드, 선진국은 주민한테 직접 지급…한국은 보건소 비치」, 『한겨레신문』, 2016.9.28.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1 현황

-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발전소의 안전기능을 위협하고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자연재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 원전의 안전 여유도 및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인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됨
 - 개별 발전소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는 아래의 상황에 대한 평가 외에 잠재적 취약 부분과 벼랑끝(cliff-edge) 효과⁸⁵⁾를 명시하도록 함
 - 지진, 침수 등의 초기사건과 전원 상실, 최종열제거원 상실 등의 고장이 조합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발전소 대응 능력
 - 심층방어논리에 따라 초기사건, 안전기능의 상실, 중대사고 관리에 이용되는 예방책 및 완화책의 확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마련한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검증하여, 테스트 결과의 보고 및 확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됨
 - 2013년까지는 노후원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부지별·노형별 대표원전을 설정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1단계) 이후 나머지 원전에 대해 1단계 원전과의 차이 분석을 거쳐 평가 및 검증(2단계)하는 방식으로 가동 중인 전 원전에 단계별로 확대 시행함
 - 수행체계는 우선 사업자 자체평가 단계에서는 지침에 따라 구조물 계통 기기의 건전성과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계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함

85) 제방 높이를 초과하는 지진해일, 블랙아웃(station Blackout, SBO) 시 배터리 고갈 등과 같이 초과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함

- 이후 적절성 검증을 위해 사업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단의 기술적 검증과 현장점검이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후 총괄기술협의회⁸⁶⁾가 검증 일정, 보고서 작성 등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전문가 검증단은 객관성·신뢰성 강화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이 각각 분리되어 구성·운영되며, 민간 검증단은 분야별 전문가 외에 지역추천 전문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및 확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자체평가 결과 및 검증단의 검증결과가 '전문가 검증단 통합보고서'를 통해 원안위 전체위원 심의회의에 보고되며, 검토·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트레스테스트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국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상호평가 체계를 구축을 고려하여 스트레스테스트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도구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인접국의 중대사고 대비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 스트레스테스트는 평가 결과에 대해 회원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유럽연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는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다른 회원국 규제기관들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됨
 - 우리나라도 (주)한국수력원자력 자체평가 이후 전문가 검증단의 적절성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유럽연합의 국가 간 상호점검평거나 재평가에 비해 효과성·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 02-397-7224

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47명) 및 민간 검증단(19명)의 종합조정기구로, 각 검증단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됨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Ⅷ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605건으로 2019년도의 854건에 비해 249건 감소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처리건수는 597건에서 297건으로 감소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건수는 145건에서 189건으로 증가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리건수는 112건에서 119건으로 증가하였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4	157
		우정사업본부		19	11
		국립중앙과학관		1	1
		한국연구재단		19	6
		한국과학기술원		17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1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나노종합기술원		1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3	1
		광주과학기술원		6	2
		울산과학기술원		6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6	1
		기초과학연구원		7	2
		(기초과학연구원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2
		한국원자력의학원		3	2
		한국나노기술원		2	1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4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8	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	1
		한국원자력연구원		7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
		한국전기연구원		-	1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11
		한국인터넷진흥원		39	2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1	2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2	4
		국립광주과학관		1	-
		국립부산과학관		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
		과학기술인공제회		1	-
		한국식품연구원		1	-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1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1	-
		한국기계연구원		1	-
		한국재료연구원		1	-
		한국과학창의재단		3	-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8	6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	16
		시청자미디어재단		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	17
		한국방송공사		24	40
		한국교육방송공사		14	19
		방송문화진흥회		15	32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77	7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8	10
		한국수력원자력(주)		25	23
		계 (건수)		854	60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 기능 조정	ICT 관련 기관의 분산된 업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 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디지털뉴딜 사업 및 디지털담 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데이 터산업진흥원과의 관계 및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것	정보통신 관련 5개 진흥원의 통폐합 또는 협업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인재 양성	데이터 산업 분야의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향후 신직종으로 부 각될 수 있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인재 육성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규모 를 확대하고, 국외 인공지능(AI) 전문가 영입 전략을 수립할 것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출연연 특허활용과 기술이전 미흡 문제 해소방안 강구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제고방안 검토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 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보직자 비율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육성 대책 강화
	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 노력 강구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 예산 확대 저소득층, 고령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 대책 마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계획 반영
	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공와이파이 보안 강화	공공와이파이 보안문제 대책 마련	공공와이파이 보안접속기능 홍보 강화
	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G 28GHz 활용	5G 28GHz 망 구축	5G 28GHz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
	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비 인하 및 5G보급형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	합당한 이통통신요금제 산출 및 온라 인 가입 허용, 실버요금제 등으로 요금 절감 추진
	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계산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재할당 등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안 마련	주파수 재할당시 적정 할당대가 산정
	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홈쇼핑 채널 연번제	홈쇼핑 채널 연번제·채널 순환제 등 도입 검토	홈쇼핑 채널 연번제 구성 방식 검토
	12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집배원들의 부담 경감, 복리후생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집배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집 배 보로금을 증액하고, 이륜차 적재 안 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협조할 것
	13	한국연구재단	연구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법비 환수 율 제고	연구비 부정집행 및 인건비 유용 제재 조치 강화 및 환수를 제고
	14	한국연구재단	부실학회 공개	부실학회 공시 시스템 구축	부실학회 목록 게재 등 시스템 마련
	15	(재)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기술이전사업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 육성사업 부실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 육성사업 취업 률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16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출연연 재편	출연연 통·폐합과 단일 법인화 등 을 검토	융합연구가 많은 출연연 간의 통폐합 을 검토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17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출연연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출연연 상용화 및 이익 창출 등 성과확산 방안 마련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제고방안 검토
18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출연연 장애인 고용		출연연 장애인 고용율이 법정 기준을 하회하므로 대책 마련	출연연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용 제고
19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 진흥원)	키오스크 접근성		고령층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	키오스크 설계 매뉴얼 정비 부처간 키오스크 이용 매뉴얼 협력

2 방송통신위원회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역차별 해소	법인세, 망사용료 등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 방안 마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율체계 정립
	2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기관과 함께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방송 중계 설비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재난방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터널 내 중계기 설치를 도모하고 설치비용 보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할 것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	방송국 재허가 심사 시 프로그램이 주의 경고를 받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재허가 기준을 변경 수정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상 확대	1인 미디어와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넷플릭스나 CJ ENM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방송통신위원회	UHD 사업	UHD 방송 사업 계획 재검토 할 것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 시청이 거의 없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6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승신	지상파 재승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업체를 구성할 것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	지상파 재승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
	7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지원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검토할 것
	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 작가나 외주제작사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 점검 실시할 것	KBS는 외주 회사를 비롯한 제작 현장에 표준계약서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BS는 연기자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선할 것 MBC는 프리랜서 작가들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할 것
	9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크로스미디어랩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크로스미디어랩 도입을 검토할 것	크로스미디어랩 전략을 견지하고 통합 마케팅 실시 체제를 갖출 것
	10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내 대리인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점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리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11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 관리 감독 강화 및 선정적인 내용 대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 대응을 위한 인력 확대 검토
	12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소년유해 커뮤니티사이트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 정책을 마련할 것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13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랜덤채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랜덤채팅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구성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성 증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15	한국방송공사	UHD 방송		유료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UHD 방송을 보내는 방안 검토	UHD 방송프로그램과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6	한국교육방송공사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획할 것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무료 코딩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할 것

3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제도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방안 마련
	2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전 공극 전수조사	원전 공극 전수조사 실시 및 문제점 점검	원전 공극 전수조사와 재평가 계획 제출
	3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점검·검사 등의 개선책 마련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전체 공·항만에 설치
	4	원자력안전 위원회	라돈 검출 매트리스	라돈 검출 매트리스 폐기 대책 마련	라돈 검출 매트리스 유통금지 대책 마련
	5	원자력안전 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론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강화 등 대안 마련
	6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전 주변 드론	원전 주변 드론 출몰에 대응하는 장비, 법령 등 대책 마련	불법비행 드론에 대한 전파방해 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
	7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선분야 종합조정	방사선 분야 컨트롤타워 부처가 명확하도록 법령 개정	방사능 검사 행정체계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일원화
	8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 사이버 보안	원자력안전 사이버 보안 인력 확충 및 유관기관 공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및 계획 마련
	9	한국원자력통제기술회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특별점검 관련 점검 계획 마련	사이버 보안 전략계획 추진
	10	한국 수력원자력(주)	드론 공격 대비	드론 공격 대응체계 수립 및 종합 대책 마련	드론 감지 및 대응 대책 마련
	11	한국 수력원자력(주)	사이버 보안	PC 운영 체제 교체	보안 담당인력 확충
	12	한국 수력원자력(주)	신한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결정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방안 마련
	13	한국 수력원자력(주)	원전 관련 외주	원전 운영과 관련된 외주화를 축소	원전 안전 업무 외주 금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채용 시스템 점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소관 기관의 채용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 기관의 채용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기관의 채용 시스템을 개편하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매뉴얼⁸⁷⁾에 따라 산하 기관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항공우주연구원 종합 감사 시, 채용 특혜 제공 등 2건을 적발하여 징계 요구하였고, 향후 출연연구기관 감사 시 채용 비위에 대해 엄정 처분할 예정임
 - 각 공공기관의 채용제도 관련 자체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점검 결과 총 194개의 지적사항 중 조치 완료 190건, 미완료 4건임

87) 2018년도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속 조치로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과제를 2019년 10월에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 있음

- ① 통제 강화: 채용세척 마련, 특별채용 주무 기관 사전협의, 특별채용 절차 적정성 사전점검
- ② 엄정 제재: 징계양정기준 개선, 징계경감 제한, 승진제한기간 연장, 인사·감사 보직 제한 기타 공공기관 승진, 포상 제한
- ③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외부위원 구성 내실화, 신규채용 시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채용 절차 외부 위탁업체 관리 강화

- 2021년 하반기 중에 각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 개정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기관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실시(이행)
 - 2019년 10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대책을 각 공공기관에 통보(이행)
 - 2021년 하반기 각 기관 별 자체 규정 개정 여부 점검 예정(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 별 조치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일부 지적 사항은 미완료 상태임

3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에 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관련자 처벌 등 일회성에 그치고,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임
 - 각 소속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소속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이 조직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 : 044-202-4074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해당 사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⁸⁸⁾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다르게 ‘기업지원연구직’이라는 파견을 위한 직종을 별도로 채용·운영하였는바⁸⁹⁾,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하여 시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협의 중임(2021년 4월 ~ 6월)

88) ① 지원 내용: 파견 대상자 연봉의 50%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2021년도 예산 71억 7,600만 원
 ② 파견 인원: 기업별 1명(강소기업 100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 기업은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③ 파견 기간: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 인력을 기업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89)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명)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규직	-	4	25	31	34	27	27	31	34	35	25	12
기업지원연구직	183	279	267	235	219	207	197	162	129	113	104	101
기업 정규직 전환	-	-	-	10	12	4	14	6	8	3	2	3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21.7.)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다음과 같은 개선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업 부담금 완화
 - 현 제도는 최초 파견 기간(3년) 종료 후, 해당 연구원을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초 파견과 연장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을 동일(연봉의 50%)하게 함에 따라, 파견 연장제도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파견 연장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임

| 정부출연금 확대 방안 |

구분	현행	개선안
최초 파견(3년)	정부 지원 50%, 기업 부담 50%	정부 지원 50%, 기업 부담 50%
파견 연장(3년)		정부 지원 60%, 기업 부담 40%

- 신규 공공연구기관 확대
 - 현재는 총 18개의 공공연구기관⁹⁰⁾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요와 연구기관의 연구

90) 대상 공공연구기관(2021년)

출연(연)	전문(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야가 매칭되지 않아 대기 기업이 누적되거나⁹¹⁾, 연구 분야 불일치로 인한 중도 복귀자가 발생하고 있음⁹²⁾

- 참여 공공연구기관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 개선방안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에 파견되는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측면과 숙련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파견 기간의 성과가 우수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같이 공공연구기관의 숙련된 정규직 연구인력의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파견되는 정규직 연구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성과에 따라 연봉 외의 별도 수당이나 승진 시 가점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은 시행 기관, 주관 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각각 다른 다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공공연구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례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

☎: 044-202-4755

91) 2021년 기준 매칭 대기기업 354개

92) 2020년도 중도복귀자의 9.1%가 분야 부적합에 따른 것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자료, 2021.7월 기준)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 간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내부 규정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최근 제정·시행(2021.1.1.)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을 소관 법령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2021년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 포함(이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각 연구개발기관(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현재까지 마련된 바가 없으므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3 /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같은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평가' 시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 : 02-6788-4712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 044-202-697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형평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연구개발예산 편성·조정 등 업무 수행 시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침으로써 형평성·투명성을 확보함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독립성이 인정됨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으로서 범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형평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으로서 범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안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체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음
 - 다만,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무 처리의 형평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인사 등은 1차관 소관이며 부처 내 보직 순환도 있으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예산의 부처 배분 등에서 중립성을 준수하더라도 타 부처 입장에서는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국무회의 배석 허용(「국무회의 규정」 제8조)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2차관과 동일한 부처에 소속됨으로 인해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

☎ : 044-202-6720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 설치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에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연구소에 사회문제 R&D 전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사회문제 R&D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전담센터의 중·장기적인 설치방안을 검토함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예산 투자 확대를 위해 '2022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21년 3월)에 반영함
 -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명시되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센터 설치방안과 연구개발예산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전담센터의 중·장기적인 설치 방안 검토 (이행 준비 중)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예산 투자 확대를 위해 '2022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1년 3월에 확정된 '2022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므로 관련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정부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전담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전담센터 설치에 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따른 진척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조직과 예산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의 현행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6) 이 규정을 법률로 격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
- 또한 향후에는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에 전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 044-202-67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기능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하여 연구기관 기획기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타 연구기관들의 전략적·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연연과 연구기관들의 역할과 책임(R&R) 등 전략적,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출연연의 전략적,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12월)에 따라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임
 - 이 법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 관점의 연구개발전략과 과학기술정책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2021년 하반기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시범 분과를 운영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며, 2022년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할 계획임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정책적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여(2021년 하반기) 2022년에 출범시킬 계획임 (이행 준비 중)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타 연구기관들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는 보고되지 않음 (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기존에는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만 존재했으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전략·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 기획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도 하지만, 기획과 평가를 모두 맡을 경우 평가에 주력하여 기획기능이 경시될 우려가 있었음
 -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획과 상호 협동연구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 차원의 기획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라 비상설 회의체이고,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므로 기획기능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25개 기관인데 이 위원회에 기관별로 최소 1인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관별로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상이한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획이 용이할지 불명확함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타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전략·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인데,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등도 있음⁹³⁾

3 개선방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 차원의 연구개발전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의 설치와 중장기전략 수립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전략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자문기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전략·정책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상설 조직(센터 등)의 설치·강화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부처가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중장기전략 수립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전략 마련 시 연구개발전략위원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전략·정책기능 담당 조직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전략 수립에서는 전체 기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담당 분야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도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있으므로 이 기관들까지 포함하여 전략·정책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초과학연구원의 5개년 계획체계를 타 연구기관에도 도입하는 방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타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 : 044-202-4750

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획기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략기획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출연연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이 가능한 센터를 설치하는 등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주요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2021년 2월), 향후 시범운영 기관 선정과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기획기능 강화방안 및 전략기획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2021년 2월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의 설치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소재분야에 한정하여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과 정책 제언 등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으로⁹⁴⁾ (가칭)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설치방안에 관하여는 구체성이 미흡한 면이 있음
 -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가 기술 전략 Think Tank 설치에 관한 사전연구’(2021년 11월까지)를 주제로 위탁연구과제를 공모함
 - 참고로 2021년 4월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또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서는 출연연의 정책·기획기능 강화와 전략기획센터 설치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의 목적을 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수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⁹⁵⁾

3 개선방안

-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현재도 정책센터들이 있으므로(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우주정책센터 등) 이 조직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예산총괄과

☎: 044-202-4750, 6822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 R&D 투자 혁신 전략(안)」, 2021.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2021년 6월)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 넷플릭스나 CJ ENM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OTT 해외사업자에 대해 가입자 기반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기금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협의할 예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정 매출을 기반으로 한 부담금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유사사례를 검토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
 -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관련 협의(이행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정매출 기반 부담금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유사사례 검토(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의무 부여가 공적책임 부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분담금 납부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로 법적 정당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⁹⁶⁾
 - 향후 의견을 수렴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기금 의무 부여의 정당성, 디지털세 이슈 등에 대한 법적 쟁점과 사례를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및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디어 시장의 구조와 경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금 제도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와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부과 확대 및 통합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⁹⁷⁾

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1.6.1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1.6.15)

97) 정두남·윤성욱, 「융합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II-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2019.

-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목적과 성격, 대상, 기준, 용도, 사업자 간 형평성, 효율성, 기금 통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OTT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OTT사업자를 포함한 방송과 유사한 시청각 매체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 02-6788-4711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 044-202-6226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 02-2110-1375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플랫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온라인 플랫폼의 인공지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요청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2020.12.~), 2021년 2분기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지 여부**
 -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중임 (이행 준비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당초 2021년 2분기까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결과와 순위도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이용자권익보호 측면도 고려할 예정임⁹⁸⁾

3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있어 업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2021.6.30.」)
 - 알고리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의 추진 기관,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 02-6788-4717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 044-202-6141

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0.6.28.)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정책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oT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제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를 추진할 것임
 - 미래 IoT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기획·추진할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oT 산업 육성 정책을 확대하였는지 여부
 - 2021년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함 (이행중)
 - 2021년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사업(75.2억 원), 5G기반IoT핵심기술개발 사업(70억 원),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사업(223.6억 원)을 추진함 (이행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범정부 IoT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진흥체계를 구축하고, IoT 규제완화 및 혁신단지 조성과 같은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여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착수된 것이므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미래 IoT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1년 각각 75.2억 원과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사업과 5G기반IoT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초소형·초경량·저가의 차세대 IoT 원천·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IoT를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과 서비스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함
 - 5G기반IoT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G 통신 인프라에 맞춘 초저지연·고신뢰, 초연결, 초고속·대용량 IoT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5G 기반의 IoT 생태계를 구축함
- IoT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2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물인터넷산업육성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능형 Io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분야(소상공인,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 물류 등)를 선정하여 'IoT 융합 선도'를 추진함
 - 다양한 IoT 기술의 실험·실증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인증 환경을 조성·고도화하는 'IoT인프라 조성·보급'을 추진하며, 최근 통신3사와 협업 기반 IoT 개발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IoT 기술지원 인프라 운영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등이 이루어짐
 - 이와 함께 국내 IoT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IoT 쇼케이스, 비대면 해외로드쇼,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IoT해외진출 및 성과홍보'를 추진함
- 다만, 정부는 IoT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사업 확대, 생산기업 지원 등 공급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IoT 수요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IoT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별도로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CT규제샌드박스, 규제특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IoT 관련 규제혁신을 시도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IoT 관련 범정부 전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함
- IoT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요기업의 IoT 기술 수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요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IoT 기술개발 및 확산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20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기업체 중 IoT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는 14.3% 수준으로 시장의 IoT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종별 IoT 활용율은 스마트물류와 관련된 운수·창고업이 29.0%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제조업은 17.2%, 스마트농장과 관련된 농림수산업은 7.5%,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건설업은 5.1% 등으로 나타남
 - IoT의 다양한 기술수준과 활용가치에 비해 시장에서의 IoT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수요기업의 IoT 기술 수용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단기적인 IoT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IoT 도입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IoT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IoT 기업들이 공공부문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

☎ : 044-202-6420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기관 간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민간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기관 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2021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 완료함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1년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 정책에 관한 총괄 거버넌스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①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데이터 생산·구축·공유·연계·개방·유통·결합·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③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④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 다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에 관하여 전문적·책임적 조정을 충실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받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신용정보·의료정보 분야의 데이터 정책까지 충분히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다양한 분야·부처간 데이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정책 조정기능을 보다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 또는 데이터청·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데이터진흥과

☎ : 044-202-6290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등록 건수를 확대할 것 •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등록 건수를 2019년말 기준 1,458종에서 2020년말 기준 3,246종으로 대폭 확대함
 -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중기·스타트업 대상으로 유료데이터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오프라인 안심구역을 운영하여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분석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데이터 등록건수를 2019년말 기준 1,458종에서 2020년말 기준 3,246종, 2021년 상반기 4,036종으로 확대함 (이행)
 -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중기·스타트업 대상으로 유료데이터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가 증가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3,246종을 개방했고, 2020년 추경으로 구축한 6개 플랫폼이 7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여 현재 4,036종이 개방되어 있음
 -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 유료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공급하고, 오프라인 분석환경 및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의 유료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금융·통신·헬스케어·중소기업 등 일부 플랫폼은 오프라인 안심구역을 운영하여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분석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개선방안

-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와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데이터 거래·유통망과의 중복·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댐 등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래·유통망이 다양하므로 이들과 빅데이터 플랫폼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 02-6788-4715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데이터진흥과

☎: 044-202-6290

공공와이파이 등 지방자치단체 통신망과의 역할 분담 설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자원 중첩 및 통신망 관리 혼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개정안(우상호 의원)이 발의 중임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통신망 투자로 민간의 투자유인 저해와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병행 검토하고 있음
 - 비영리 공익목적의 서비스 한정,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에 필요성·경제성·적합성 등 종합적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이행 중)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통신망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한 역할 분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여⁹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통신망 투자, 통신망 관리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방향은 아직 설정하지 않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3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공공서비스 확대, 임대료 절감 등의 수익과 △ 자가망 구축비 및 운영비, 통신시장 왜곡 가능성, 보안사고 발생

99) 「전기통신사업법」 이상호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하여 WiFi 뿐만 아니라, IoT, CCTV 관제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 그 확장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위험 등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활용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자가망의 증설 속도, 관리 가능성, 비용 등을 파악하여 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됨
-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보안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가망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에 대한 전문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가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행정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보다 엄격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는 통신망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가 확대되는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면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4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 044-202-6661

선택약정 할인 홍보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국민이 인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국민이 인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홍보를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보도자료를 2021년 3월에 배포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였는지 여부
 - 선택약정할인제도 홍보 포스터와 보도자료를 2021년 3월에 배포할 예정임(5월에 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17일 ①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에서의 포스터·홍보지 배포와 인터넷상의 웹툰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제도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② 이동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하여 약정 만료 전후로 총 2회 발송하였던 선택약정할인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총 4회 발송할 계획을 밝혔음
 - 따라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2021년 5월 기준으로 약 1,2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의 포스터·홍보지 등으로 인한 홍보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기간으로 약정하여야 하는데, 약정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요금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온라인 요금제는 지원금 약정을 받고 있지 않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족결합 등이 되지 않는 대신 일반 요금제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임
 - 온라인 요금제는 약정 기간이 없으므로, 선택약정 할인 홍보 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4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 044-202-6651

정보화교육 계획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반영함
 - 제7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정보화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에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함 (이행)
 - 제7차 기본계획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8년 12월로, 동 계획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계획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제7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2022년에 수립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디지털 불평등 및 정보격차가 더 이상 정보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은 바람직하나, 자칫 일반 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교육 등의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특히 기본법 개정 이후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책적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된 정보격차 해소 관련 예산도 확대하여야 함
 - 또한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사소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비자발적 비이용자나 자발적 비이용자 등이 정보취약계층으로 낙오되어 배제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044-202-6154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하여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 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디자인, 실버 디자인 등의 키오스크 디자인 매뉴얼을 정비할 것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고령자,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키오스크 이용 매뉴얼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20년 9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업하여 접근성을 준수한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하였음
 - 2020년 11월 「2020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유니버설·실버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및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 2020년 12월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시제품을 개발하고 매뉴얼에 반영하였음
 - 2020년 12월 키오스크 설계 시 적용할 매뉴얼(안내서)을 정비하고, 유니버설·실버 디자인 개념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음
 - 2021년에는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고 정비된 매뉴얼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키오스크 설계 디자인 매뉴얼을 정비하였는지 여부
 - 2020년 11월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2020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개최함 (이행)
 - 2020년 12월 설계 적용 매뉴얼을 정비하고 설명자료를 마련함 (이행)
 - 2021년 정비된 매뉴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이행 준비 중)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키오스크 이용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2020년 9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업하여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시범도입함 (이행)
 - 2020년 12월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협력하여 셀프체크인 시제품을 개발함 (이행)
 - 2021년 요식업 등 분야별 부처와 협의하여 키오스크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11월에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와 공동주최로 「2020 정보접근성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키오스크 설계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발표 및 논의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12월에 키오스크 설계 시 적용할 매뉴얼(안내서)을 정비하고, 개발자 및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실버 디자인 개념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마련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공항공사·항공사와 협력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시제품 개발 및 매뉴얼 반영,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업한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키오스크 시범도입 사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키오스크 이용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비된 매뉴얼(안내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교육 및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요식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키오스크의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3 개선방안

- 유니버설 디자인 혹은 실버 디자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설계 디자인이 적용된 키오스크가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고 임금 인상으로 키오스크 보급률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모든 키오스크가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매뉴얼 및 관련 설명자료를 마련하더라도 개발자나 제조사 등의 적극적인 적용 노력 없이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점은 미미할 수 있으므로, 민·관 협력 증대 및 민간기업의 적용·준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
 -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많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시간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키오스크 유형별 사용자 환경(유저인터페이스(UI))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의·약품, 요식업 등의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키오스크의 정보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항공 분야, 도서관 분야 등에도 정보접근성을 준수한 키오스크 도입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병원, 약국, 식당,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가 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
 - 관련 분야 및 부처별 정보접근성 관리 임무 및 제도 등이 상이하므로, 각 분야별 매뉴얼도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기반팀

☎ : 053-230-1361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및 지상파방송 재원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TV 수신료 및 지상파방송 재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수신료 인상방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KBS의 적극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재원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TF 설치를 검토할 것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이 납득 가능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보, 회계분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검토할 것 수신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되, 수신료인상위원회 등을 거쳐 매년 상승폭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위하여 KBS가 경직성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시청자가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도록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 만성화되는 경영 위기에 관한 자구노력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마련 중이며, 수신료 조정안 제출 시 관련 검토의견 작성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별도의 TF 설치를 검토할 예정임

- KBS는 수신료 조정안의 이사회 심의를 위해 속의 토론형 공론화, 공청회, 전문가 여론조사 등 충실한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 중임
-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검증된 징수 방식으로 분리징수 방식에서의 전환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회계 분리는 수신료 재원의 충당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임
- KBS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정기적인 수신료 인상 방안을 수신료 조정안에 법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고, 별도의 수신료인상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법령상 KBS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KBS는 인건비 억제를 위해 노사 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인건비 증가폭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임
- KBS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KBS는 2020년 7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였고, 전면적인 직무 재설계를 진행하였으며,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자원 개선대책 논의를 위해 별도의 TF 설치 검토(이행 준비 중)
- 한국방송공사
 - 2021년 5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함(이행)
 - 수신료 분리징수와 회계분리,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임(미이행)
 - 인건비 조정 관련 노사 협의 노력중(이행 중)
 -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중(이행 중)
 - 직무재설계 등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TV 수신료와 관련하여 KBS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원 개선대책을 위한 별도의 TF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이행 준비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및 회계분리, 수신료산정위원회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수신료 인상 등 재원 확충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넷플릭스 등 OTT 가입자 및 이용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는 등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인 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함
 -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진 및 사고 등 재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보호와 콘텐츠 다양성 확대 등의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인 국민의 추가부담과 누릴 수 있는 혜택,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인상 및 지상파방송의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가 각 방송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지상파방송의 역할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02-2110-1418

지역방송 지원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지역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방송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검토할 것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지역방송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지역방송 발전 계획에 담을 것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재난이 국지화·일상화됨에 따라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 방송사들이 재난방송 제작·송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취지는 공감하나 재정 당국의 기금 통폐합 원칙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등 지역방송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 당국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제3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관련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고, 기금 지원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이행 검토 및 평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임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
 -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제작 및 송출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이행)
 - 2020년 12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2021~2023년)(이행)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이행 중)
 -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4월 22일 강원도 및 강원지역 6개 방송사와 강원지역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재난정보 제공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MBC 및 지역 민방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재난방송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점 증액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 중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이행 중임
- 2020년 12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규제 합리화, 기금 지원 확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2021년 예산 40.3억 원, 2022년 60.3억 원) 등을 위한 정책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평가 및 감독 강화 등 시정 처리 및 요구 사항을 이행 중임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은 기금 신설의 필요성, 재원 방안, 기존의 기금과의 차별성 및 통폐합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검토 중임

3 개선방안

- 지역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방송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방송 스스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2월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새로운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획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재난 등 각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지역방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지역방송사가 공적인 책무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맞는 지원도 요구됨
-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지역방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민에 의해, 지역에 맞는, 지역성(지리적 지역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차별성과 특별함을 포함하는 개념)을 갖춘 지역방송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방송이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성과가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방송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방송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¹⁰⁰⁾ 시청자가 지역방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미디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지역미디어정책과

☎ : 02-2110-1429/1452

100) 도기태·정희경,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 서비스 개선 방안: KBS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2020.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보호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 라이브커머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라이브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 근거를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플랫폼 확장에 따른 기존 방송·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중장기 법제도 정비방안을 검토 중이고,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는 위원회의 역할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또는 품목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제하고 소비자피해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 전담부서(인터넷개인방송심의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행 준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정책연구 추진 및 법제도 정비(이행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전담부서(인터넷개인방송심의팀) 신설 추진(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 연구를 실시 중으로 이행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 중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5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향후 심의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행 준비 중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증하고 관련 소비도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시장 및 이용자 실태조사, 규제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위 주체인 통신판매증개자와 판매업자 중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조정과 이용자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불법 콘텐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고 정보통신 심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유해 콘텐츠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영상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원칙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라이브커머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 발생도 커질 수 있으므로 분쟁 조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모바일 매체의 특성상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통신증개 및 판매업자에 대한 지침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 02-6788-4711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

☎: 044-202-61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 02-3219-5162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우회 접속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대하여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의 우회 접속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VPN 프로그램 및 우회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VPN 프로그램을 통해 우회접속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해외유출된 동영상 등이 접속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접속이 용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VPN 방식의 우회접속 기술의 동향과 현행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성범죄물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사이트에 대해 우회접속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 번역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불법사이트 우회접속을 차단조치하였으며(2020.9.),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불법사이트 우회접속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회 차단앱 유통현황 조사 및 접속차단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불법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VPN(가상사설망) 및 우회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 접속차단 기술이 동 우회 프로그램의 기능을 무력화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 차단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3 개선방안

-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불법사이트에 대해 국내인의 접근만을 차단하는 접속차단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회 기술이 진화해오고 있으므로 접속차단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 현행 접속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민간 ISP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행 접속 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정책과

☎ : 02-2110-15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지원단

☎ : 02-3219-5830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대해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함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 국내 방송통신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정책 추진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을 추진함(이행)
 - 모니터링과 접속차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저작물 삭제·전송 중단 요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하고 있으나,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임
 - 국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시정요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저작물의 심의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모두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심의건수: 7,161건, 접속차단: 7,161건; 2021.1. 기준 심의건수: 531건, 접속차단 531건), 평균적인 처리기간은 4~5일이 소요됨¹⁰¹⁾

3 개선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저작물의 불법적 유통에 대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불법저작물사이트의 접속차단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력이 필요함.
 - 온라인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만 사이트 접속차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불법 저작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 : 02-6788-4717

관련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 : 02-3219-5170

1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2021.7.5)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공개 상세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¹⁰²⁾ 이후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후 문제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알뜰폰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도록 향후 추진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02) 이용자 규모, 이용자 민원 등을 고려한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3사, 인터넷사업자, 알뜰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일부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정도 등을 평가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겠음(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5월 26일 심의·의결한 ‘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르면 작년 대비 알뜰폰 사업자 3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알뜰폰 사업자¹⁰³⁾에 대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 2021년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 2021년 6월에는 주요 사업자 1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3 개선방안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기준으로는 △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 2021년에 △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 등의 지표를 신설하고, △ 5G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 처리 과정,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통신분쟁조정 노력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함

103) 후불 가입자 상위 10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케이티엠모바일, (주)엘지헬로비전, (주)미디어로그, SK텔링크(주), (주)에넥스텔레콤, (주)한국케이بل텔레콤, (주)에스원, KB국민은행, (주)큰사람, (주)인스코비가 그 대상임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단계로만 공개되고 있어 이용자가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평가결과 지표를 보다 상세히 하여 상담원과의 연결 시간, 질의 처리 실적, 이용자에게의 정보 제공 정도 등 이용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 |

구분	매우우수 (950점 이상)	우수 (900점~950점)	양호 (850~900점)	보통 (800~850점)	미흡 (800점 미만)
이동전화	SKT LGU+	KT	-	-	-
초고속 인터넷	SK브로드밴드 SKT LGU+ KT	딜라이브 LG헬로비전 현대HCN	CMB	-	-
알뜰폰	-	한국케이블 텔레콤	에스원 SK텔링크 LG헬로비전 KTM모바일	-	미디어로그 에넥스텔레콤
부가통신 일반	-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부가통신 앱마켓	-	-	구글-플레이 스토어	-	삼성전자-갤럭시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계	6개	6개	7개	3개	6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20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2020. 11. 24.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가 국민의 선택권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안내되어 홍보가 부족함

-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¹⁰⁴⁾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보다 알릴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02-6788-4714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경쟁정책과

☎: 044-202-6645

104) 국민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사이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게시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공학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음
 -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또한 원전 관련 공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원자력공학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대안 이행)
 - 원전 관련 공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대안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에도, 위원 중 다수는 원자력 외 타 분야 전문가들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 개선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에 원자력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일정 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와 같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례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원자력 관계기관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 02-6788-4716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02-397-726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안위 대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원자력 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수 처리에 관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출에 대비하여 해양방사능 조사주기를 확대 실시할 것 일본과의 오염수 관련 정보공개 협약 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무조정실 주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는 일본 측에 오염수 처분 이행과정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2020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주변 해양의 감시지점을 32개로 확대하고, 주요 6개 해수 유입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 주기를 연 4회로 확대하였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외교채널 등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결정 추이에 따라 해수 방사능감시 분석주기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본 규제기관과 도쿄전력의 객관적·독립적인 심사 및 철저한 모니터링, 정보공유 등을 요구할 예정임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과의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 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는지 여부
 - 2020년 11월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회의를 통해 오염수 처분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이행 중)
 -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함 (이행 중)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도쿄전력 측에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객관적·독립적 심사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요구할 예정임 (이행 준비 중)
 -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TRM)를 통해 인접국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이행 중)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수 무단 방출에 대비하여 해양방사능 조사주기를 확대하였는지 여부
 - 2020년 우리 주변 해양의 삼중수소 감시지점을 32개로 확대함 (이행)
 - 2020년 주요 6개 해수 유입지점의 삼중수소 분석 주기를 연 4회로 확대함 (이행)
 - 해수 방사능감시 분석주기의 단축 및 조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행 준비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11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이행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촉구하고,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TRM)를 통해 인접국 간 신속한 사건정보 교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방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의 감시지점을 기존 22개에서 32개(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39개 지점 별도)로 확대하고, 주요 6개 해수 유입 지역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우리 주변 해양의 방사능 분석주기 단축, 조사영역 확대 등을 통한 감시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교채널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2021년 4월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계획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모니터링 방안 등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3 개선방안

- 국제기구나 외교채널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에 보다 기술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성물질의 우리 주변 해양 도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는 향후 데이터 간 교차검증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
- 끊임없이 흐르는 해류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의 적시성을 위해 해상에서 즉시 시료 채집 및 분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보강, 장비 확충,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
- 동일한 시료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입장에서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오염수 처리 전·후 시료에 대한 교차검증 및 미가공 데이터를 적극 요구하여야 함
- 여러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 심·검사 지침, 기술기준의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함
- 해수 방사능 감시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유실,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감시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 02-397-7358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 금지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 금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원자력 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주)한국 수력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력원자력 내 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관리·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직종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원전 안전업무 외주 금지를 추진할 것 원자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정비와 외주 금지 이행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수행할 예정임
 - 2020년 12월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안전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연중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의 합동 안전점검 및 워크숍을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감시 인력 증원을 통해 관련 작업의 안전 확보(2월), 영세 협력사 상대의 안전코칭 시행(3월), 산업안전교육장 건립 및 출입시스템 연계(7월), 협력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10월)을 수행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외주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주금지 이행방안을 검토함 (이행)
 - 안전관련설비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외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합의안을 마련함 (이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 외주 금지와 관련한 고시 제정을 검토 중임 (이행 중)
- 외주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함 (이행)
 - 안전관리를 위해 (주)한국수력원자력 자체적으로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안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기관은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 이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관련설비(안전 I·II·III 등급 설비) 정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외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제·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우려되므로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위험직종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가칭)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중 도급금지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마련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89%가 대부분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안전에 초점을 맞춘 작업환경 조성 및 협력사와의 안전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나, 현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3 개선방안

- 현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원전 안전관리업무의 외주 금지 이행방안이 마련·추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여러 쟁점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세밀하게 조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를 등급별로 위험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등급 가능 업무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나(「(가칭)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중 등급금지 업무에 관한 규정(안)」), 실제 원자력발전소 내에는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 설비가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민간 외주업체로의 등급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영업권 상실과 부도, 이에 따른 한전KPS(원자력발전소 발전분야 정비 공기업)로의 업무 부담 증가, 인력 이동 및 흡수에 따른 노-노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조속하게 외주 금지를 명문화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통해 여러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사후 점검 및 정기·수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은 물론 '하청의 재하청'이 금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험직종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주·하청 직원의 피폭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02-397-7266

(주)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

☎: 054-704-4501

방사능 오염고철 처리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고철 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원자력 안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고철 등 임시로 방치된 오염물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임시로 방치된 방사능 오염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철강협회(2021년 2월) 및 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2021년 3월)과의 협의를 통해 유의물질(방사능오염 고철) 처리 관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정안을 마련함(2021년 3월)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정을 통해 유의물질 처리를 위한 세부 절차, 처리기한 등을 반영하여, 제강사가 유의물질(방사능오염 고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개최(2020년 3회, 2021년 1회)를 통해 부처별 수입화물 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가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수립” 정책연구(2021년 4월~11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계 통합·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 /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임시로 방치된 오염고철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 유의물질(오염고철) 처리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정을 통해, 유의물질 처리 세부 절차, 처리기한 등과 함께 제강사의 유의물질 처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이행 중)
- 처리되지 않은 오염고철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없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정안에 유의물질 처리 원칙과 기한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통보를 받은 유의물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치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조치결과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임시로 방치된 오염물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128건 중 24건은 여전히 처리 중에 있으며(2021년 6월 기준), 이 중 2017년에 토륨이 검출된 유의물질도 여전히 평가 중에 있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지침은 여전히 임시로 방치된 오염물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거나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로 방치된 방사능 오염고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수거 혹은 비용 부담을 통한 조속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처리되지 않고 임시로 방치되어 있는 유의물질의 대부분은 처리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철강업체와 고철 납품업체 간의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책임회피와 그에 따른 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처리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사능감시기 운영 및 관리·감독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재활용 고철의 경우 절단이나 훼손 등의 특성으로 원료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추적이 어렵고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의물질에 대해서는 처리되기 전까지 보다 안전하게 임시보관할 수 있는 방법, 장소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능감시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유지, 점검, 보수 및 필요인력 충당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 : 02-6788-4718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 02-397-7276

환경노동위원회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Ⅷ

제1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환경부

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소관 위원회(총26개) 중 9개는 최근 운영실적이 없으며, 2개의 위원회는 재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성중이며, 3개의 위원회는 서면회의만 1번 개최함¹⁾
 - 구성되었지만 최근 운영실적이 없는 9개 법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A)	위촉(B)	여성(C)	비율(%) (C/B)	
1	국가습지위심의위원회	습지보전법 제5조의2	22	7	15	6	40.0%	0
2	빛공해방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6조	20	8	12	5	41.7%	0
3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127	6	121	51	42.1%	0
4	지질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20	11	9	4	44.4%	0
5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3	12	11	6	54.5%	0
6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8	3	15	6	40.0%	0
7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5	6	19	8	42.1%	0
8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0	4	16	6	37.5%	0

1) 환경부, 「환경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21.5월 기준)」, 2021.5.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A)	위촉(B)	여성(C)	비율(%) (C/B)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0	6	14	5	35.7%	0

자료: 환경부

- 재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성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장거리이동오염물질대책위원회는 작년 말 위원의 임기가 완료되어(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미활성위원회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존속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 검토후 재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 사전검토협의회는 관련 계획이 확정된 이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A)	위촉(B)	여성(C)	비율(%) (C/B)	
1	장거리이동오염 물질대책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	-	-	-	-	-
2	(담)사전검토 협의회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성	중	-	-	0

자료: 환경부

- 지난 1년간 본회의를 서면회의로만 1회 개최한 위원회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국립공원 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임

2 개선방안

- 국회는 법정 위원회의 운영이 법률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해경

☎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 044-201-6359

조기폐차 보조금

1 현황 및 문제점

-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를 추가 지급함²⁾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기본 70%(210만원)**	추가지원 30%(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만원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단,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의 상한액은 210만원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의미함

자료: 한국자동차협회

- 2021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총 중량 3,500cc 미만의 생계형 자동차에 한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을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함³⁾

구분			2020년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생계형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자료: 기획재정부

-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일자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신차 구매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함
- 3) 기획재정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보도자료, 2021.2.4.

- 정부가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면서 노후 경유화물차 부분은 그대로 두고 생계형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확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노후 경유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어도 전기화물차로 바꾸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전기화물차로 바꾸기 보다는 신형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폐차 보조금의 수혜가 노후 경유 승용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함⁴⁾

| 2018~2020년 차종별 조기폐차 실적 현황(수도권 기준) |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승용	254,617	60,787	125,620	68,210
승합	25,247	5,585	12,099	7,563
화물	69,685	16,523	33,048	20,114
특수	945	74	416	455
건설기계(덤프, 펌프, 레미콘)	1,424	-	437	987
합계	351,918	82,969	171,620	97,329

자료: 환경부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년 7월 5일)

- 조기폐차의 미세먼지 개선 효과는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하며,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함⁵⁾

2 개선방안

-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에 있어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 : 044-201-6930

4) 신석주, 「미세먼지 줄일 새로운 대안 '개조 전기차'」, 『에너지신문』, 2020.5.20.

5) 환경부, 「2020년,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연다」, 보도자료, 2021.1.9.

환경표지 인증기준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임⁶⁾

| 환경표지 |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써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음
- 환경표지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등의 취득 혜택이 부여됨
-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및 제31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환경표지 인증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함
-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면서 기술원이 제출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안 등을 검토하여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으로 고시함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환경표지 홈페이지 참고 (2021.7.4. 방문)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2>>

-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심사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⁷⁾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총 8,214개 제품 중 445개 제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표지인증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규제를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출서류 검토없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거나 위반 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례(14건) 등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분말 세탁용 세제와 액상 세탁용 세제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환경성이 다르지 않아 인증불가 원료물질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환경부는 분말 세탁용 세제와 액상 세탁용 세제의 환경표지 인증 불가 원료 물질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옴
 -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할 때 분말세탁용 세제와 액상 세탁용세제에 대해 동일한 인증 불가 원료물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2021.6.15.~2021.7.5)한 바 있음

2 개선방안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맞게 판매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조사를 강화하여 환경인증표지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02-2284-1530

7) 감사원, 「(주요요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표지 인증심사 부적정」, 2020년 11월 24일; 감사원, 「(통보-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 설정 부적정」, 2020년 11월 24일; 정다슬, 「발암성 물질 들어간 세제... 무자격 친환경인증제품 445개 적발」, 『이데일리』, 2020.11.24. 등

환경성질환 추적·감시 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보건법」은 환경성질환을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음
-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지난 2011년 2월에 발표된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보면, 환경성질환 추적·감시 체계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현재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경성질환질환 추적·감시 체계 구축은 아직 본격화 되지 못함

〈환경성질환 추적·감시 체계 구축 세부 추진계획〉

- **환경성질환 추적·감시 체계 구축·운영(환경부·복지부, '11~'20)**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발생/유병률 추적 조사를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국적인 조사 체계 구축
 - ※ 국내 유관기관(복지부)의 상병 D/B와 환경노출 자료 연계 강화
-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노출요인 규명 및 관리방안 마련('15~'20)**
 -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주요 환경성질환과의 상관성 규명
 - 환경성 질환 범주 확립, 주요 환경유해인자 우선관리 목록 선정 및 조사방법 정립
 - 환경오염 취약지역, 노출 수준에 따른 환경성질환 발생/유병률, 변화추이 조사
 - 지역 거점별 환경보건센터간 공동 조사·연구 체계 마련
 - 환경성질환 발생/유병률 높은 지역에 대한 후속 정밀조사
 - ※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보건센터 등이 협력·연계하여 주요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운영
- **환경성질환 정보자료의 활용 및 서비스 제공('12~'20)**
 - 유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 대국민 등에 정보공개, 환경성질환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사업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환경성질환 추적·감시체계 구축·운영	250	100	150								
		현황파악 및 목록화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노출요인 규명 및 관리방안 마련	2,050					150	380	380	380	380	380
						상관성 규명 및 정밀조사 및 환경보건센터와 연계방안 마련					
환경성질환 정보자료의 활용 및 서비스 제공	700		50	50	50	50	100	100	100	150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환경성질환 건강캠프 마련·교육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2011년 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성질환 증감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추가 분석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⁸⁾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미세먼지 등 환경성질환 DB구축 계획(안)을 제시한 바는 있음⁹⁾
- 또한 환경부는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센터를 지정 하였으나, 환경성질환 빅데이터 관련 기초 조사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고, 환경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5월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으나¹⁰⁾ 아직 구체적인 협력사항이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환경보건 빅데이터 수집·제공” 계획이 원안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은 협력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학적 근거기반의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 빅데이터 단계별 구축(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단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등 9개 기관 100여종의 환경 데이터를 연계 수집·제공(~'23)
- (2단계) 환경위해 요인과 건강영향의 상관성 파악을 위해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환경성 질환 관련 정보 수집·제공(~'25)
- (3단계) 지자체 측정·분석 DB(대기오염물질, 석면, 라돈, 화학물질 등)와 환경위해요소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정보 수집·제공(~'30)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2020년 12월.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0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 033-736-2415

8) 이정윤, 「환경성 질환을 극복하자」, 『의학신문』, 2021.6.29.

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빅데이터 공공 개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사업 시작」, 보도자료, 2020.8.21.

10) 환경부, 「환경부-건강보험공단, 환경보건 빅데이터 체계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1.5.1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큼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 전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받은 국고를 지방비와 50:50 비율로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국고지원금은 2019년 394억 원, 2020년 671억 원, 2021년 예산은 743억원으로 확대됨

| 2020년 시도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실적

(단위: 동)

시도	주택 철거처리 실적	비주택 철거처리 실적	주택 지붕개량 실적
서울특별시	23	-	16
부산광역시	1,229	199	260
대구광역시	366	32	11
인천광역시	319	32	21
광주광역시	553	25	12
대전광역시	222	5	3
울산광역시	204	28	17
경기도	2,261	258	180
강원도	3,076	375	349
충청북도	3,072	355	130
충청남도	3,131	357	98
전라북도	3,453	259	257
전라남도	7,365	629	263
경상북도	6,788	641	436
경상남도	5,829	484	299
제주특별자치도	1,009	215	101
세종특별자치시	36	-	-
합 계	38,936	3,894	2,453

자료: 환경부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7.6)

- 동 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3,028억원을 투입하였는데, 누적주택 철거실적은 22만 7천 3백 6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누적 실적 현황('11~'20년) |

(단위: 동)

구분	'11년 (시범사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 (국고)	28억원	60억원	192억원	288억원	369억원	344억원	341억원	341억원	394억원	671억원
주택 철거	2,372	8,290	17,942	22,320	27,746	27,132	27,800	26,547	28,261	38,936
비주택 철거										3,894
주택 개량									1,302	2,453

자료: 환경부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7.5)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환경부, 2010.12)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012~2021년)의 목표가 40만동* 이었던데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제2차 석면관리기본계획(2017~2022)」(관계부처합동, 2017년 12월)에 따라 2018년~2022년까지 총 150천동(연간 30,000동) 주택 슬레이트 제거 사업 추진계획을 세운바 있는데, 2018년과 2019년은 연간 30,000동 목표에는 미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개선방안

-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¹¹⁾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방치된 폐가 슬레이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빈집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국고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해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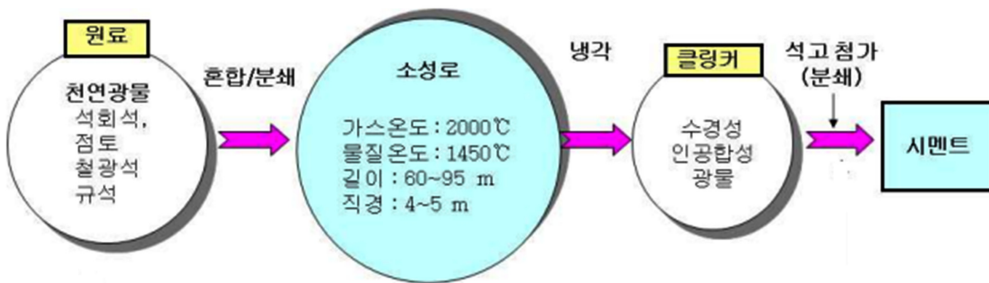
11) 정부는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52만동(슬레이트 주택 73.3만동의 71%)을 처리하고, 잔여 21.3만동(29%)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을 비롯해 부원료인 점토질원료, 규산질원료, 철질 원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 분쇄하여 소성로에서 고온(최고 가스온도 2,000℃)으로 가열하여 생성된 클링커에 석고를 첨가, 미분쇄하여 생산됨

| 시멘트 생산 과정 |



① 원료 분쇄	② 시멘트 소성	③ 시멘트 분쇄
석회석과 기타 부원료를 함께 섞어 품질조합을 한 후에 원료분쇄기에서 건조시키면서 분쇄함	분쇄된 원료를 예열한 후,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성한 후에 급냉하여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를 만듦	클링커에 소량의 석고를 첨가하여 시멘트 분쇄기에서 분쇄하면 최종 제품인 시멘트가 완성됨

자료: 한국 시멘트 협회¹²⁾

- 2020년 9월 감사원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주목하면서, 환경부가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¹³⁾
 - 감사원은 시멘트소성로 14기가 고효율 배기가스 저감장치(이하, SCR)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169억원의 총량초과과징금이 예상되는데 비해, 오히려 SCR을 설치할 경우 1조 1,394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2)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산업 공정 특성과 순환자원 재활용』, 2014년 11월 및 한국시멘트 협회 홈페이지 <http://www.cement.or.kr/plus_2014/plus02_3.asp?sm=5_3_0>

13) 감사원, 「(통보·권고)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 불합리의견」, 2020.9.22.

- 감사원은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시멘트 산업의 현황, 기술개발 속도, 정책목적의 실현 가능성, 시멘트 소성로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시멘트 제조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설치비·운영비·안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시멘트 소성로는 일부 시설의 경우 환경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¹⁴⁾
 - 「대기관리권역특별법」의 총량관리지역에 시멘트 제조업이 가장 많은 강원도는 빠져있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개정 2021. 6. 29.>에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개정 2021. 3. 30.>에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시멘트 업계는 온실가스 관리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산업은행과 탄소 저감 설비투자 및 친환경 산업 전환에 필요한 1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협약을 맺은 바 있음¹⁵⁾

2 개선방안

- 정부는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및 관련 환경 제도의 정비 방안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14) 조남준, 「[초점] 환경오염시설 관리대상 '시멘트 소성로 제외' 형평성 논란 증폭」, 『에너지 데일리』, 2021.7.2.

15) 김승직, 「한일현대·아세아시멘트 등 배출부채 전액 상환...시멘트업계 탄소배출 성공적으로 관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1.4.23; 김동규, 「시멘트업계, 산은서 친환경산업 전환 자금 1조원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2021.6.23.

마스크 패치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6월 시중에 유통 중(21.04.12. 기준) 인 49개 마스크 패치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즉시판매 중단을 권고함¹⁶⁾

| 마스크 패치 |



자료: 한국소비자원

-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소비자원의 즉시 판매 중단 권고에 대해 49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함

| 시정권고 결과 |

구분		제품 수(개)	비고
판매 중단		41	-
향후 계획	제조 중단	11	• 향후 제조 계획이 없는 제품
	절차 이행	1	•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확인·신고한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인 제품
	용도 변경 및 표시 개선	29	•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인 제품
미회신		8	-
합계		90	-

자료: 한국소비자원

16)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2021.6.7.

- 이후 일부 제품은 판매중지 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되고 있음
 - 한 업체는 마스크 패치 개발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위해성 평가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테스트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시험장비가 없거나 2023년 이후에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¹⁷⁾ 2021년 6월 소비자보호원의 시정권고 이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중지·판매중지·회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다른 업체는 해당 패치가 화장품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하에 CGMP(화장품우수제품 및 품질관리기준)인증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이며, 유해성분 10종 불검출 시험성적 인증 검사를 완료했다고 참고용 시험성적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님) 등을 제시하며 피부 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은 방향제 등의 안전기준인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상의 신고번호와 안전확인마크를 획득(2012.6.17.)하였으나, 환경부는 동 제품을 방향제가 아닌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안전확인마크 획득 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권고(2021.7.6.)한 것으로 확인됨

2 개선방안

-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검사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패치를 마스크 안쪽 피부에 부착한 상태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마스크 겉면에 붙이는 패치와 유사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의 다양한 용도의 안전성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기계적으로 소관을 구분하기 보다는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해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5

17) 「[마스크 패치 논란] “위해성 검증 안돼 판매 중지” vs. “법원 판매허가”」, 『케미컬 뉴스』, 2021.6.16.

탄소발자국



1 현황 및 문제점

-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며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됨¹⁸⁾

* 환경성적표지 제도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영향 범주에는 탄소발자국 외에도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생태독성, 인체독성, 생물다양성 영향 등이 포함됨

- 탄소발자국은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뉨

| 탄소발자국 및 저탄소제품의 인증 |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탄소발자국 기준)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3.3%*(탄소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	

주: 「저탄소제품기준」(환경부고시, 2020.8.24. 제정·시행)의 제정 이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탄소 감축률 기준 4.24% 기준을 적용받음

자료: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저탄소제품인증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누적(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반영한 실적)으로 224개 제품이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총 온실가스 감축량(누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신규로 인증을 받은 제품수는 2019년 51개에서 2020년 93개로 증가함

18) 기후변화 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footprint.do>>

| 저탄소 인증제품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량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 (만톤CO ₂)	129	226	344	486	648	836	1,055	1,248

자료: 한국환경기술산업원

- 그러나 환경부의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지표*는 2020년 달성률이 87.9%에 그침¹⁹⁾
 - *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지표의 산정방식은 $\Sigma[(\text{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감축량}) + (\text{저탄소제품 인증에 따른 총감축량}) + (\text{그린카드 발급좌수} \times \text{좌당 평균감축량})]$ 임
 - ‘저탄소제품 인증에 따른 총감축량’ 목표 미달성은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지표’의 2020년 달성률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환경부는 2020년 저탄소인증 신규 인증제품 수와 저탄소 인증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증가하였지만, ‘저탄소제품 인증에 따른 총감축량’ 목표를 미달성한 이유를 감축기술의 한계저감 효과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석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지표에 저탄소제품 인증에 따른 총감축량을 반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감축기술 한계저감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탄소규제가 통상이슈로 부상하면서 탄소발자국의 정확한 계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착이 중요해진 만큼 환경부가 최근 완화한 저탄소제품인증기준의 재검토와 아울러 탄소발자국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해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

☎: 044-201-69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02-2284-1569

19) 정부, 『202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환경부)』, 2021, p.884.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회수체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 생두와 원두 및 커피 조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2012년 11만 5천 톤에서 2019년 17만 6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커피전문점의 점포수도 2012년 42,458 개소에서 2018년 83,445 개소로 약 두 배가량 증가함
- 또한 우리나라 성인 1인이 마시는 커피소비량은 2012년 22잔에서 2019년 328잔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세계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5배 수준임. 특히 드립(브루잉)커피와 같은 커피 소비의 고급화 바람으로 아라비카종과 같이 찌꺼기 발생이 많은 커피 소비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소비경향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커피찌꺼기의 총 누적 추정량은 1,035,902 톤²⁰⁾으로, 2019년 한해 발생한 커피찌꺼기만 149,038 톤으로 추정됨
- 이러한 커피찌꺼기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커피전문점 위주로 배출되는데 그 수를 보면 2019년 7월 기준 서울 14,000 개소, 경기도 15,000 개소로, 수도권(인천 제외)의 커피전문점이 전체의 41.2%를 차지함²¹⁾
- 그런데 이와 같이 커피 수입증가, 커피 소비증가, 커피전문점 증가, 커피소비의 고급화 등으로 커피찌꺼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 커피찌꺼기를 지속가능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허가받은 지정 차량만 커피찌꺼기 등의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차량이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수 없다는 점, ② 커피찌꺼기 처리단가보다 낮은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임

20)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등의 수입최소량은 "100kg"으로 100kg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HS코드를 받아서 수입식품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에서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생두나 원두는 누락된 것으로 보여 실제 추정량보다 더 많은 커피찌꺼기가 배출될 것으로 보임

2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휴게음식점 원자료 추출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28,000개소의 커피전문점이 있음

2 개선방안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필요

- 카페 등 커피전문점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커피찌꺼기를 따로 모으고, 이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단독 배출하도록 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만 철저히 된다면 다른 유기성 폐기물에 비해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커피 원두 공급 차량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커피찌꺼기를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배출된 물질은 수거 시 원료를 오염시킬 위험이 적으며 처리방법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임

■ 부담금 단가의 현실화 방안 필요

- 커피찌꺼기처럼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담금뿐 아니라 사회적인 처리비용까지 고려하여 배출자가 책임지도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kg의 커피찌꺼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종량제 봉투 가격과 부담금으로 단순 계산해도 봉투가격은 약 14원인데 비해, 부담금은 15원에 불과함. 이는 생활폐기물 매립에 투입되는 다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부담금이 실제 처리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0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044-201-7001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 시 고려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폐기물은 「약사법」에 따라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함
 - 태반은 태반배출실명제에 따라 배출 시 의사이름, 배출일시, 장소, 중량(g), 발생일, 적출물 처리업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된 태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것임
 - 여기에서 산모의 이름이나 보호자의 이름은 기재 대상이 아님
- 태반과는 달리 폐지방은 재활용 대상이 아닌데 의료계나 산업계에서는 폐지방은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고²²⁾ 이를 재활용하게 되면 의료폐기물의 감량도 같이 도모되기 때문에 인체 유래 폐지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²³⁾
 - 이에 정부는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²⁴⁾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폐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2를 개정²⁵⁾하여 의료 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태반과 더불어 폐지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의 「인체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IRB) 승인절차를 거쳐 재활용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인체 유래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폐지방을 추가하고 IRB를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생명윤리성, 안전성 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팽배함
 - 학계에서는 2010년 3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인체 유래 제대혈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으나 ① 제대혈은 매매되지 못하며 ② 제대혈기증자에 대한 관리

22)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할 경우 폐지방 1kg 당 6~15g의 세포외 기질을 추출할 수 있고, 여기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재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처럼 의료용이나 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체 유래 콜라겐가격은 5mg 당 최대 84만 원(Sigma-aldrich 업체) 수준이며 소각되는 폐지방량은 연간 40 톤으로 조사됨

2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 규제자유특구, 세계최초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개시』, 2020.8.3

24)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2020.1.15.

25) 폐지방은 현재 시험·연구 목적에 한하여 폐지방 처리가 허용되고, 그 외의 폐지방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고 있음

와 보호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두어 생명 윤리성을 확보하고 ③ 제대혈위원회, 제대혈 은행, 제대혈정보센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대혈연구기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인체 유래 폐지방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생명윤리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윤리적인 매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② ‘태반배출실명제’에서 보듯이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정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폐지방을 포함한 인체 유래 조직을 재활용함에 있어 단순하게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활성화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안전성 및 생명윤리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가칭 「인체 유래 조직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법률에는 인체 유래 조직에 대한 매매 금지를 포함한 생명윤리성, 안전성, 관리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 실명제 대상에 태반뿐 아니라 폐지방도 포함하도록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감염여부·유전병 여부 등 폐지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폐지방은 산업적 가치가 높아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 044-201-7360

1회용 페트음료포장재 재활용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유가성이 높은 페트(PET)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2021년 생산량이 약 5,8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3,000억 개의 두 배에 이르는 양임²⁶⁾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간 약 50억 개의 PET가 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환경부는 석유에서 추출한 PET(virgin-PET) 대신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PET(r-PET)를 사용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²⁷⁾,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착제도 물에 쉽게 녹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에서는 분리배출²⁸⁾ 시 투명 PET병(음료, 생수)에서 '라벨지를 떼어내고 내용물을 한번 씻어 뚜껑을 닫은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여전히 폴리에틸렌(PE) 재질인 뚜껑은 페트와 같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탈플라스틱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EU 등은 플라스틱 음료용기 제조시에 r-PET의 사용비율²⁹⁾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여 virgin-PET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그 함유율을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음료포장재에 '빈용기보증금'³⁰⁾을 도입하여 깨끗한 r-PET의 수거와 그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음료포장재에 r-PET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하여도 식품포장재 관련 규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³¹⁾

2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23191/production-of-polyethylene-terephthalate-bottles-worldwide>

27) PET병은 PET 재질의 몸체,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라벨, 폴리에틸렌(PE) 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O-링)로 분리됨

28) 환경부 보도자료(2020.12.23),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9) EU는 포장재 재활용목표율을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하고 있음

30)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31) CEN Standard 15343 on post-consumer plastic recycling

- 그러나 국내에서 r-PET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분리배출이 완전하지 못해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② 분리배출이 완전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r-PET은 직접 식품이 닿지 않는 부문(비접촉면)에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

2 개선방안

- 투명 PET만 선별·회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추가로 개정하여 플라스틱 음료포장재 배출 시 포장재 뚜껑 등과 같은 다른 재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후대가 편리한 플라스틱 음료포장재를 bin용기보증금 대상용기³²⁾에 해당되도록 하여 깨끗한 음료포장재만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r-PET이 직접 음료포장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r-PET의 허용 범위를 비접촉면에서 음료포장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거에서부터 r-PET의 제조까지 전반을 환경부가 검증할 수 있는 확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044-205-375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 043-719-2401

32) 보증금 대상 용기는 「주세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주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를 담은 유리용기, 음료류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담은 유리용기임

고형연료폐기물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폐기물통계³³⁾를 살펴보면 ‘폐비닐·폐플라스틱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2017년 기준 7,961,380 톤으로, 이 중 3,022,930 톤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1,612,205 톤이 고형연료³⁴⁾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인 감량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 온라 인쇼핑 활성화 등으로 그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은 단기간 내에 폐비닐·폐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오염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구현 및 자원순환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고형연료의 제조시설을 가동 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현행 고형연료의 제조 및 시설의 안전 관련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고형연료는 제조 시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신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의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2021년 5월부터는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등급을 받도록 하고 이 품질등급을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³⁵⁾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발전시설’(소각시설 포함)과 ‘산업용 보일러’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건축법」 상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등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경우 그 입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경우 해당 시설이 생활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3)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34)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물질임

35) 환경부 보도자료(2020.5.26),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 발열량 등 4개 기준 평가』

(이하 「폐기물시설축진법」)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이 시설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법에 따른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2018년 이전에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0.1원/kWh의 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고형연료를 제외하여 발전시설에서는 발전량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또한, 2021년 4월 2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으로 고형연료를 포함한 ‘새로운 발전원’³⁶⁾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발전량이 다른 발전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약화된 것은 ①2019년부터 고형연료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이 중단되었고³⁷⁾,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도 지원금의 단가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②고형연료에 대한 품질등급을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만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이에 지원금의 확대 등 주민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별표 1]에 고형연료를 포함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발전원 특성에 맞도록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발전원 별 지원금 단가 |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유류화력	가스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발전원
지원금 단가 (원/kWh)	0.25	0.18	0.3	0.15	0.1	0.2	0.2	0.2	0.1	상향액

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4.20),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에서 ‘새로운 발전원’이란 2019년 10월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 등)을 말함

37) 2018년 12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으로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되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둘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포함사항을 강화하여 「폐기물시설축진법」에서 주민지원을 보장하는 규모 정도의 주민지원 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마련될 주민지원 강화방안에는 타지역 고형연료 반입수수료 징수, 폐기물처리시설에 준하는 수준의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의 소득증대, 복지향상사업의 주도적 추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용도에 주민지원기금 출연을 추가하고, 주민참여 강화방안에는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환경관리 및 안전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해당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고형연료 품질등급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자원에너지 정보관리 시스템 외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 044-201-7020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비스페놀A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상수관으로 인한 수도물 오염문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위 물탱크 오염문제 등 끊임 없이 제기되는 수도물 관련 불신요인들과 더불어 특정지역에서는 연이어 붉은 수도물, 수도물 유출사태까지 발생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 현재 수도물과 관련한 위생안전을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³⁸⁾’(이하 ‘위생안전인증’)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 적합여부에 관한 기술적 보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도용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것임
- 동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2020년 5월 현재 약 2,700개의 수도용 제품이 위생안전인증을 받았으며, 동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³⁹⁾
- 우리나라 위생안전인증 적용항목은 2006년 44개 항목 적용 후 2017년까지 추가되지 않다가 2018년에 니켈 항목 한 개를 추가하여 현재 총 45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음
- 당시 니켈의 추가는 수도용 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로부터 용출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를 강화한 것임
- 사람의 경구를 통해 섭취되는 물질 관리 측면에서 위생안전인증과 유사한 제도로는 먹는물 수질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있음
- 니켈 추가 후 일정 부분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현재 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이 다양화되고 있어 위생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8) 2010년 5월 25일 「수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39) 수도시설 중(취소·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용출시험에 따라 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 물탱크나 온수탱크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에폭시수지에 존재하는 비스페놀 A는 위해성이 높아 식품공전에서 규제⁴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생안전기준 상의 규제 대상은 아님
- 이에 따라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위생안전기준에 신규 유해물질 추가
 - 위생안전기준에 신규 유해물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 첫째,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포괄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유해물질⁴¹⁾에 대한 우선 관찰대상 물질 후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시판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해 위에서 선정된 우선 관찰대상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제품시험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유해물질부터 용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셋째, 이를 토대로 위생안전기준 추가물질을 선정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시 용출기준과 더불어 잔류기준을 통한 검사기준 강화
 - 식품공전에서는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재, 가공 셀룰로스재, 고무재, 종이재, 금속재, 목재류, 유리재, 도자기재, 범랑 및 용기류, 전분재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폴리염화비닐총용출량, 1-헥센, 1-옥텐,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총용출량, 폴리아미드총용출량, 카프로락탐, 일차방향족아민, 에틸렌디아민, 헥사메틸렌디아민, 라우로락탐, 폴리우레탄총용출량, 이소시아네이트, 4,4'-메틸렌디아닐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총용출량, 아크릴로니트릴, 납, 에폭시수지 총용출량,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4,4'-메틸렌디아닐린, 납, 고무제 총용출량, 폼알데하이드, 아연,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41) 2008년 12월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등에 대한 비스페놀 A 용출규격을 강화하여 관리하게 되고 2011년 10월에는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를 사용 금지, 2008년 12월에 금속관과 금속제 규격을 통합하며, 니켈, 크롬 시험항목을 용출규격으로 신설하여 관리, 2010년 3월에는 기구에 대한 중발잔류물 시험 시 사용하는 용출용매를 세분화하여 1종(4% 초산)에서 4종(4% 초산, 물, 20% 에탄올, n-헵탄)으로 식품의 다양성에 따른 용매별 용출 가능성을 시험방법에 확대 정립, 2010년 11월에는 고무젖꼭지 제조 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등의 용출규격을 추가로 신설, 2012년 11월에는 주류를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 에탄올)를 추가, 2019년 1월에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기준을 강화된 바 있음

등 다양한 재질별 잔류기준⁴²⁾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수돗물에 접촉하여 용출되는 물질과 더불어 제조 시 자재나 제품에 잔류하여 수돗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기준도 위생안전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합성수지재질에 많이 함유되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이 마련된 비스페놀 A를 위생안전기준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0

42) 합성수지제는 1-1 폴리염화비닐 재질에서 1-39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까지 39종으로 구분하여 각 재질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총 128,258대로 증가였으며 이러한 급성장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발생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4월 말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폐배터리 반납량은 총 190개로, 2035년에는 최소 약 105만 개에서 최대 187만 개가 반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³⁾
- 그러나 현재 폐배터리는 반납에 대해서만 고시를 통해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반납 이후 재활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⁴⁴⁾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 발생대란 및 고부가가치 자원의 소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개의 거점수거센터⁴⁵⁾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 폐배터리의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를 거점별로 “회수 → 성능평가 → 안전 보관 → 민간매각” 등을 통해 적시에 회수·보관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임
 - 거점수거센터로 운반된 폐배터리는 잔존가치 및 유해물질 검사를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는 재제조 업체로 보내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다시 사용되고, 배터리로서의 성능이 기준 이하로 나타난 배터리는 재활용업체로 보내 리튬 등 희유금속을 회수하는데 활용됨

43)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세부절차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별첨 1 참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44) (배터리 예상발생량) 1,464대(20년) → 9,155대(22년, 제주도 전량치)

45)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4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운영중에 있음

2 개선방안

-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반납에 대해서만 고시를 통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과 폐배터리의 화재나 폭발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별표 4의3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하여야 함
-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활용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를 개정하여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전기전자법 시행령」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환경부 고시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운반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 044-201-7380

환경부 대기환경 대기미래전략과 정책관

☎ : 044-201-6880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⁴⁶⁾’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농장 내부에 조사료포⁴⁷⁾(粗飼料布) 조성, 가축폐사체 처리시설 설치·운영,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液肥)로 재활용하여 해당 농장 내부 농경지에 살포 및 수돗물 수준의 물만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농장에서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축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에서는 ‘환경친화축산농장’보다 기준이 완화된 ‘깨끗한 축산농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2017년부터 관리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3,629개를 지정하였고, 2025년까지 총 1만 개를 지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 대해서만 향후 각종 축산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임
- ‘환경친화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같은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목적은 가축을 비위생적인 밀집사육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구매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이 환경친화적 축산농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조사료포와 퇴·액비 살포 농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초기 토지구입비가 과도하고, 가축폐사체를 처리하는 고가의 시설을 개별 농장 내부에 갖추기에도 시설구축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임. 더욱이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하수도 시설도 축산농장의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별 농장이 상하수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임

47) 건조나 짙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초식동물의 사료이며 특히 반취위를 갖는 가축에서 생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은 유지되어야 함

2 개선방안

-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의 합리화 필요
 - 조사료포를 개별 농장에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단위로 여러농장이 함께 조사료포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지정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축폐사체를 농장 내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공동순환자원센터’에서 처리한 경우에도 적절한 처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수도물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상수도공사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결과 안전한 지하수 사용도 허용하는 등 지정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 방법으로 퇴비나 액비화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설치확대를 고려⁴⁸⁾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이용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정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0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지원과

☎: 044-201-2351

48)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70% 이상 처리하는 조건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소를 가동 중이고, 환경부는 2022년까지 3,553억 원(국고 2,745억 원)을 투자해 14개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할 계획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유역청⁴⁹⁾에 설치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처리시설이 없는 유역청은 아래 표와 같이 관할 구역 밖으로 이를 운송하여 소각함으로써, 운송과정에서 2차 감염 유발,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의료폐기물 총 발생량은 23만 8,272 톤으로, 이 중 10만 4,505 톤이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되어 처리됨. 한강청 관할 구역의 경우 총 발생량(11만 1,779 톤)의 39%인 4만 4,129 톤을, 낙동강청 관할 구역은 총 발생량(4만 9,478 톤)의 89%인 4만 4,098 톤을, 원주청과 전북청은 발생량(원주청 6,977 톤, 전북청 9,301 톤) 전체⁵⁰⁾를 이동하여 처리함

| 권역청별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2018년 기준) |

(단위: 톤)

권역청	발생량	발생비율(%)	발생지 처리량	타 지역에서 이동해 온 양	관할 지역 외 처리량
총합계	238,272	100	133,768	91,588	104,505
한강청(수도권)	111,779	46.9	67,650		44,129
낙동강청	49,478	20.8	5,380		44,098
금강청	20,938	8.8	20,938	30,038	
영산강청	17,978	7.5	17,978	596	
원주청	6,977	2.9	-		6,977
대구청	21,822	9.2	21,822	60,954	
전북청	9,301	3.9	-		9,301

주1): 관할 지역 내 처리량은 각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량(톤/hr)을 통해 계산함

2): 관할 지역 외 처리량 = 관할 지역 내 처리량 - 발생량임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년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재작성

49) 한강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금강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낙동강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영산강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청(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31개 시군), 원주청(강원도, 충청북도 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전북청(전라북도의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50)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에 13개소가 있는데 전북, 강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량 관할 지역 외로 운송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됨

- 실제로 조사된 의료폐기물의 이동거리를 보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364 km 떨어진 경주시에서 소각처리되는가 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도 310 km 이상 떨어진 경북지역까지 운반돼 소각되는 등 전염성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이 300 km 이상 운반돼 소각되며 그 물량은 22.9 톤에 달함⁵¹⁾

2 개선방안

- 의료폐기물의 이동거리 최소화 정책 도입 필요
 -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2차 감염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근거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의료폐기물의 처리권역(소권역·중권역·대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 처리하고 만약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권역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든다면 한강청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로 이동하는 44,129 톤의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장 가까운 권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대구청 관할 구역까지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0

51) 국회의원 윤준병 보도자료(2020.10.23),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신속 처리 강조해도 현실은 300 km 이상 떨어진 소각업체 운반해 처리』

하·폐수처리수 수질측정 방식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의 오염도 측정방식으로, 현재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⁵²⁾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자동방식과 배출시설의 하·폐수로부터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수동방식이 혼용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 측정값 산정방식이 달라 구축된 행정자료의 대표성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 첫째, 수질자동측정기로 측정할 때는 ‘한시간 마다 3회 측정(3 시간 동안)한 측정치의 평균값이 연속 3회(9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동방식은 ‘30분 간격으로 2회(1 시간 동안) 채취한 시료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를 측정하여 한번 초과’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을 채택하고 있는 점
 - 둘째, 수질자동측정기 측정방식인 경우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은 24시간 방류되고 오염물질이 방류되는 시간대(공장 가동시간)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방류되는 유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시간 마다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수동 측정방식인 경우에는 단일시료의 최대값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임

2 개선방안

- 수질자동측정방식은 수질측정 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수동측정방식은 오전, 오후 두 번 측정하도록 변경 검토
- 수질자동측정방식의 경우 3시간에서 24시간을 적용할 경우 24회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수동측정방식은 공장 가동시간대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2) 이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수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배출시설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자체 공정 개선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고, 현재 전체 배출시설의 96%에 수질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음(한국환경공단(2020), 「2019년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 구축 및 운영 사업결과 보고서」)

- 수질자동측정시 측정값을 평균값이 아닌 수동방식과 같은 최대값으로 변경 검토
 - 배출시설의 수질을 측정하는 목적은 배출되는 시료가 배출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수동측정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으로 변경하여 두 측정방식 간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01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방식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⁵³⁾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폐기물처리 공제조합⁵⁴⁾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②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음⁵⁵⁾
-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폐기물 업체는 총 9,302 개소로 대부분 공제조합 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을 선호⁵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⁷⁾
-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선호하는 것은 공제조합의 경우 동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위험률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해,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 외에 실태 조사를 위한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위험률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등 실제 소요되는 처리비용보다 더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험료만 지불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임

53)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제42~제46조

54)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1,029개소),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45개소),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320개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10개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81개소)

55)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허가기관 등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 정도 등을 조사하여 2개월 안에 공제조합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허가기관 등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56) 보증보험 가입자 수의 변동을 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2년 대비 2018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업체 수가 27.45%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57) 2017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연평균방치폐기물 처리건수는 보험의 경우 9.6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경우 2.3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1.4건,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경우 1.0건으로 조사되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방치폐기물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근 공제조합을 탈퇴하여 보험으로 이동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임

2 개선방안

-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입시 공제조합의 요구조건인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위험률’ 사항 등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⁵⁸⁾
-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처리가 요구되는 방치폐기물의 보증량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 02-6788-4732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 044-201-7360

58) 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인도에 따라 보증수수료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재무심사를 위주로 가입이 결정되고, 소액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폐기물업체의 80%인 7,417개소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관리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됨
 - 「물관리기본법」(법률 제15653호, 2018.6.12. 제정, 2019.6.13. 시행)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2018.6.8. 일부개정, 2018.6.8. 시행)이 개정되어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⁵⁹⁾
- 물관리 일원화 이후 3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비한 상태임
 - 2018년 6월 이후 2021년 4월까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법률개정은 수자원 분야에서만 2건으로 조사됨⁶⁰⁾

2 개선방안

-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과 방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수량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이용량 약 372억 m³/년의 절반 가까운 152억 m³/년(40.9%)을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농지 인근 하천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⁶¹⁾

59)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 관련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하천관리 관련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함

6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31. 공포, 2020.10.1. 시행)으로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지하수법」 개정(2021.1.5. 공포, 2022.1.6. 시행)으로 「물관리기본법」상의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함(제2조의2).

61)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농업용수가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납부하는 생활·공업용수와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향후 국가 수자원 전체를 관리하는 환경부와 농업용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방재 분야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3조 6,281억 원인데, 이 가운데 3조 4,380억 원(94.8%)이 물 관련 재해로 발생하였음
 -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물관리 사무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홍수 및 가뭄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역을 둘러싸고 「재난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이견이 발생함
 - 2020년 여름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향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02-6788-4603

관련부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정책총괄과

☎: 044-2001-7141

「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통합물관리 기반 하천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 2022.1.1. 시행)이 개정되어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존치되었던 하천관리 기능이 2022년 1월 1일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임
 -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추진 당시 국토교통부에 존치되었던 하천점용,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등의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홍수예보, 댐방류, 하천수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로 일원화됨⁶²⁾
-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향후 수량·수질·방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기반 하천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하천법」은 이·치수 위주의 규정이 대부분으로 통합물관리 기반의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해 보임
- 특히 현행 물 관련 법체계는 동일 분야 내에서도 법률이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고 법정계획 간의 위계가 불분명하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등 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개선방안

- 하천에 대한 통합물관리 기반의 법정계획으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2)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개 법률과 인력 141명(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하천계획과 13명,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하천국 128명), 2021년 하천관리 예산 8,126억 원 등이 2022년 1월 1일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임

-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과 관련된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유역별로 수량·수질·방재를 모두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은 수량·수질·방재 각 분야별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에 대해 유역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02-6788-4603

관련부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과

☎: 044-201-7624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하천법」 제50조 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기간, 취수지점 및 시설, 사용량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현재 하천수 사용자의 상당수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5~2019년) 지역별 하천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허가량 25,665백만 m³/년 가운데 실제 사용량은 9,659백만 m³/년으로 사용률이 37.6%에 불과함
 - 기존 사용자가 하천수 허가량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하천의 가용수량 대부분을 이미 선점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는 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하지 못하고 상류에 위치한 댐의 이수용량을 사용하는 실정임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수자원의 신규 허가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하천에서 직접취수할 수 있는 가용수량은 부족하여 물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5년간(2015~2019년) 지역별 하천수 사용률 현황 |

(단위: 천 m³/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허가량	1,823,513	763,420	408,912	299,300	715,324	8,936	2,920	68,837
사용량	816,346	457,742	260,049	181,933	274,509	5,430	789	23,332
사용률	44.8	60.0	63.6	60.8	38.4	60.8	27.0	33.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허가량	7,322,006	303,845	1,857,986	2,338,019	3,388,922	2,844,505	1,520,362	1,997,893
사용량	3,229,783	177,068	652,517	550,070	1,009,006	834,188	486,356	699,678
사용률	44.1	58.3	35.1	23.5	29.8	29.3	32.0	35.0

주: 1) 「하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용자로서, 하천수 취수량이 공업용수 1천 m³/일, 생활용수 5천 m³/일, 농업용수 8천 m³/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임
 2)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하천수 사용자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발전용수, 환경용수 등 용도별 사용량을 모두 포함함
 3) 하천수 사용률(%) = (하천수 허가량) / (하천수 사용량) × 100

자료: 홍수통제소 제출자료

2 개선방안

- 하천유역의 용수 사용량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허가량을 조정해야 함
 - 현행 「하천법」 제53조 제1항 제3호⁶³⁾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하천수 사용률이 최근 5년간 80%, 최근 3년간 60%, 또는 최근 1년간 40% 이하인 경우,⁶⁴⁾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하천수 사용조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등 사용자와 허가권자 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쉽지 않음
 - 2020년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량을 조정함으로써, 치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말 기준, 4대강 유역의 전체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는 4,276건인데 반하여,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은 전체의 23.6%인 1,007건에 불과함⁶⁵⁾

63) 「하천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64)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65) 「하천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이 용도별로 공업용수 1천 m³/일, 생활용수 5천 m³/일, 농업용수 8천 m³/일 등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 간의 형평성과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대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 02-6788-4603

관련부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

☎ : 044-201-7663

수자원시설 재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구조적 안정성’ 중심에서 벗어나 ‘성능확보’ 중심의 체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음
 - 성능평가는 시설물 건설 당시 성능목표 대비 현재 성능상태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물 분야의 시설물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수자원시설과 댐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평가함
 - 다만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2017년 1월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바 없으며, 수자원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음
 - 10년마다 시행되는 댐의 평가는 2016년 12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2020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자원시설물의 관리강화가 필요해 보임
- 수자원시설물의 성능관리를 위해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와 ‘댐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자원시설물 간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이·치수 용량을 재배분하는⁶⁶⁾ 등 시설물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66) 김진수, 「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 『NARS 현안분석』 제166호, 2020.10. p.11. 참조

- 수자원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래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은 이·치수 용량을 재배분하거나, 상·하류 시설 간의 연계운명을 강화하는 등 비구조적 대책을 우선 강구한 후, 시설 보수·보강 등의 구조적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 02-6788-4603

관련부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과

☎ : 044-201-7621

댐하류지역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자로서 『댐관리규정』(2019.12.26. 제11차 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수기에는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댐을 운영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홍수 시 홍수조절용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홍수기제한수위’로 댐수위를 조정·운영하며, 계획방류량 내에서 댐방류를 실시해야 함
- 다만 하천 상류에 위치한 댐과 댐 하류에 위치한 제방 등 하천시설 간의 설계빈도에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홍수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
 - 댐은 200년,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소하천은 30~2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하천 상류에 위치한 댐은 하류 시설의 제약조건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2 개선방안

- 하천에 있는 수자원시설을 각각의 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치수 목표의 달성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시설별로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당초 목표한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수·치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능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다양한 수자원시설이 모여있는 하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하천 구간별 또는 유역별로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하천 공간 내에 위치한 수자원 시설물 간의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전문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하천 상류에 위치한 댐관리자에게 댐방류 영향이 미치는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를 위임·위탁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 02-6788-4603

관련부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과

☎: 044-201-7612

고용노동부

노동시간의 단축·유연성 확대 관련 개정법 시행 점검

1 현황 및 문제점

- 1주 52시간 상한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별로 정산기간이 확대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시행됨
 - 노동시간 단축 및 배치의 유연성 확대 관련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⁶⁷⁾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7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시행됨

| 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기 |

주요내용	2019년 7월 1일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	비고
1주 52시간 상한제	상시 300명 이상	상시 50명 이상	상시 5명 이상	* 30인 미만 8시간 초과 연장허용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상시 5명 이상	* 현재 50인 이상 시행 중
R&D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상시 5명 이상	* 현재 50인 이상 시행 중

- 경영계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과 계도기간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⁶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⁶⁹⁾
- 정부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정책지원·컨설팅 중심 지원 입장을 밝힘⁷⁰⁾

67)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2018.3.20.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2021.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68) 5개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입장」(2021.6.14.)

69) 한국노총, 「정부는 노동시간단축법 시행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2021.6.15.)

2 개선방안

- 1주 52시간 상한제의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별도의 제도기간을 두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 및 정책지원과 컨설팅 등이 필요해 보임
 - 첫째, 2018년 개정 당시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 과정에서도 사업장별로 준비가 가능하였던바, 최근 고용노동부, 외부기관조사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규모에서 이미 80% 이상이 준수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고⁷¹⁾,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가 확대되는 등 보완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최근 표본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90%(전 산업 기준)가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다만,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조사가 있으므로 제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해 보임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은 1주 52시간 상한제의 보완 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나, 애초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확대된 내용, 요건,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해 보임
 - 특히, 1주 52시간 상한제,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등이 함께 시행되고, 각 제도의 시행 요건 등이 복잡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해 보임
- 한편, 1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94

70) 고용노동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2021.6.16.)

71) 5~29인 기업이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이룸(2019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공휴일 규정 적용 검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공휴일 규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관련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 법적 안정성 확보,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률 제4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2019년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⁷²)에 나타난 5인 미만 사업체⁷³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⁷⁴는 1,574,382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규모(13,317,353명)의 약 12%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787,941명으로 전체 임시·일용근로자 규모(2,847,316명)의 약 28%를 차지함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으므로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근로자의 전체 임금총액(상용임금+임시임용 임금총액)은 2,234,153원으로, 전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총액인 3,527,356원의 66.38%에 불과하고,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총액인 3,846,401원의 58.08%에 불과함⁷⁵
 - 2019년 기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⁷⁶

72) 동 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또는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가공통계임

73) 총종사자수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체 규모 기준은 전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74) 한편,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총종사자 수는 3,564,610명이며, 이중 상용근로자 수는 총종사자의 44.2%,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22.1%를 차지함

75)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51&conn_path=I3, 추출일: 2021.7.5.)

2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⁷⁷⁾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한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 상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⁷⁸⁾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에 따른 것임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고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둘째, 최근 조사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법정근로시간 규정(표본사업체의 79%), 연장근로시간 한도 조항(표본사업체의 55%) 등은 이미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⁷⁹⁾
 - 셋째, 휴일의 격차 해소, 휴식권의 평등 보장 등의 관점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도 많은 요구와 논의가 있었음
- 결국 근로시간 및 공휴일 규정의 적용 확대 등의 문제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현실, 확대 적용 시 임금과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되,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 : 044-202-7526

76) 이정희,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p.12.

77) 헌법재판소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3헌바112 전원재판부

78) 그 밖에도 ‘행정감독상의 어려움’, ‘법과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법의 실효성 미흡’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됨

79) 안주엽·김기선, 『1차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9, p.118 이하 참조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⁸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수습제도의 취지가 직업훈련·교육의 목적이라는 점, 수습 중인 근로자의 노동생 산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일정액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임
- 또한 현행법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 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감액 적용의 예외’ 규정도 두고 있음⁸¹⁾
 - 단서 조항의 취지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숙련도를 높이는데 별도의 긴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감액이 수습기간 감액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적용 및 감액 적용의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및 제외의 취지와 관계없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직업이 별도의 긴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의 분류가 한국직업분류상 대 분류의 단순노무종사자⁸²⁾에 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업무수행의 실질과 수습의 필요성 등은 유사하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코 드 5) ‘판매종사자’에 속하는지, 대분류(코드 9)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 액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8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81)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업무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 부고시 제2018-23호, 2018.3.19. 제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고, 고시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 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 Elementary Workers)’임

82)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분류 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됨

- 결국 편의점의 시간제근로자,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산을 하는 종사자 등은 업무의 실질과 수습의 필요성 등과는 별개로 직업분류상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됨

2 개선방안

- 업무의 실질과 수습의 필요성 등과는 별개로 직업분류상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업무의 실질을 고려하여 볼 때, 수습기간이 짧음에도 직업분류상의 한계로 감액적용되는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은 현재 고시에 단순하게 대분류(코드 9) '단순노무 종사자'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직업분류 체계를 수정하거나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나 직업분류 예시를 수정·보완하는 등 그 폭과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배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석하고 적용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 044-205-3753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 3법 시행 관련 조치 점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 3법’⁸³⁾이 개정되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었음
 - 2021년 1월 5일 개정 노동관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었고, 2021년 7월 6일(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
 - 2021년 4월 20일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서 기탁으로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비준된 협약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됨
-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대한 비준 논의와 준비 과정에서 동 협약이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개정 노동 3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계·경영계·학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노동계는 노동 3법 개정으로 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사용자 정의 확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확장 등 법개정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올바른 법률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기본협약 발효까지 1년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학계는 개정 노동 3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노사자치의 영역, 노사자율성 보장에 대한 아쉬움, 우려의 목소리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함.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해고자 또는 실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인정 범위, 임원 자격 제한, 쟁의행위 제한 관련 조항 등을 둘러싸고 사업장에서의 혼란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⁸⁴⁾

83)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법’이라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동법’이라 함)

2 개선방안

-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동 협약 역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관련 노동규율 등 추가적인 논의와 준비 작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어느 범위까지 고려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 비준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노동 3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 3법이 7월 6일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장에서 개정 사항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상 불명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분쟁 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 노동 3법은 ILO 기본협약의 원칙을 따르는 한편, 노사관계의 국내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전히 ILO 기본협약과 일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ILO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ILO 기본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과제를 점검하고 감시감독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1

84) 박종희 외, 「개정 노조법의 법적 쟁점과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법포럼』 제3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p.236. 이하 참조

고객응대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의 실효성 제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현황(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⁸⁵⁾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⁸⁶⁾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하여금 고용노동부령⁸⁷⁾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란,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말함
 -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⁸⁸⁾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⁸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는,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임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제3항)
- 동 조항은 고객응대근로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포섭되었으나,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⁹⁰⁾

85) ‘폭언 등’은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

86) ‘고객응대근로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88) 2021년 4월 13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039호, 2021.10.14. 시행)이 개정됨

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90) 김상우,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 감정노동의 대응 범위가 협소하고, 예방조치의 내용이 불충분하며, 고객응대지침 및 예방지침의 내용, 작성 및 변경 절차와 권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 감정노동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첫째, 동 법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 역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최근 확대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보호가 확대되고 있는바, 특수고용·간접고용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예방지침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장에서 고객 등 제3자로부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관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영방침을 세우고 보호 규정이 실현가능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므로⁹¹⁾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2

『공익과 인권』 통권 제1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p.142 이하 참조

91) 최은희 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개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p.315. 이하 참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 추진 현황 점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은 불안정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 역시 미흡한 상황임
 - 이들의 취업형태 및 노무제공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전통적인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제의 적용을 통해서는 보호의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20. 12. 21.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대책’이라 함)을 발표함
 - 이 대책은 2020년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의 실태조사 및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 등을 반영하였는데,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방향 및 목표로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 - 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정책’을 설정하였음
 -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환경 조성, 일자리 생태계 조정 등이며, 대책에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노동관계법⁹²⁾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의 대책 및 정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됨
 -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제정이 이른바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플랫폼 종사자가 제정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⁹³⁾
 - 경영계를 중심으로 대책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이 플랫폼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음

92)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복지기본법」개정

93) 신인수,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은미의원실·민주노총, 2021, p.23.

2 개선방안

-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종사자는 직종별로, 같은 직종에서도 취업형태별로 법적 지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합한 컨설팅이 필요함
 - 또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실태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플랫폼노동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 시행되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들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등 후속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매뉴얼 제작·배포, 행정지도 등 정책적 보완과 더불어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 보완,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의 적용 준비와 플랫폼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준비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직종별 근무형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 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방향을 제시하고 최소한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관련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제정의 필요성,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디지털노동대응 TF

☎ : 044-202-707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제도 점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위탁관리 형태가 많고,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이들은 교대제·장시간 근로·감정노동·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⁹⁴⁾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형태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지, 위탁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도 경비나 미화 업무 등을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기도 함(간접고용). 또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회사 소속이거나(간접고용), 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시 용역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2차 간접고용)
 - 아파트 경비원 설문조사⁹⁵⁾에 나타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이 9.4%, 위탁관리회사 고용이 25.4%, 경비용역회사 고용이 65.2%임
 -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교대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시간 사업장 체류, 야간근무 등 안전보건상 유해한 근무환경에 놓이게 됨
 - 경비원은 야간교대와 장시간근무로 인한 건강,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데서 오는 감정노동,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음⁹⁶⁾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비업무 등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최근 5년간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적용 제외 신청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0,331건, 2017년 11,936건, 2019년 13,258건, 2020년 11,522건을

94)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 p.16.

95) 전국 경비원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원 근로자는 15개 지역 총 3,388명임(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9)

96)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 아파트 경비원」, 2016, p.12.

각각 승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351개 아파트 단지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93.7%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남⁹⁷⁾

- 승인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기준이 미흡하고, 승인 이후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검토, 구체적인 실태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⁹⁸⁾으로 경비원의 다른 업무수행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승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2 개선방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과 관련해서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고, 휴게·수면시설 설치 필요성 등이 제시되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승인 이후 변동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자 관리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신청 시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제도 개편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제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다른 업무 수행(겸직)이 가능하므로, 승인제도의 취지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겸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⁹⁹⁾, 감시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94

97)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2021.2.17. 보도자료)

98)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7544호, 2021.10.21. 시행)

99) 특히 '아파트 경비원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주요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의견 수렴 및 논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이행 점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의 생명·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감염·과로 등 위험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
 -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근로, 산업재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
- 2020년 말 정부는 예산·정책과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이하 ‘대책’이라 함)을 발표함
 - 대책은, ①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②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③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④분야별¹⁰⁰⁾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정책과제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채택되었음¹⁰¹⁾
 - 입법사항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 함)¹⁰²⁾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2021. 5. 18. 제정됨
- 대책의 주요 정책·입법과제에 대한 총괄 및 이행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대책의 추진상황을 2021. 5. 26. 점검한 바 있음¹⁰³⁾
-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의 수립과 해당 정책 및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와 지적이 있음
 - 노동계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필수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대표가 배제되었다는 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의 비판을 제기함¹⁰⁴⁾

100) 보건의료분야, 돌봄서비스 분야,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101) 그 밖의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개선, △택배기사 인력운용 점검·과로 실태조사, △배달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이 제시됨

102) 필수업무종사자법(법률 제18182호)은 2021.11.19. 시행예정임

103) 이행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46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보호체계 법제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 등이 완료됨

104) 민주노총, 「허울뿐인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노동부장관 규탄한다!」(2021.3.18. 성명서) 등

- 상당한 규모의 필수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이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상 보호는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이 2021. 11. 19. 시행되는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의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시에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부터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다양하고, 분야 및 직종 역시 다양하므로, 종사자의 계약형태, 노무제공방식, 직종별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촘촘하고 세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가 전제될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등에 대해 각각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난의 유형·상황에 따라 지정되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지원내용 및 수준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므로, 위원회 구성 시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 이외에도 개별법(「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의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위한 개정이 있었으므로, 후속법령 정비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한편, 정부는 정책 사항으로 방역물품 및 종사자 건강진단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등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예산 집행 현황,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2019. 1.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¹⁰⁵⁾에 포섭되었는데,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및 행위의 예시, 사내 해결 절차 및 조치 등을 제시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조사(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 결과¹⁰⁶⁾는 다음과 같음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해 24.2%가 ‘있다’고 응답함
 -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사회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직의 피해 경험이 높았으며, 사무직 이외에 판매·서비스직, 관리자·전문가, 기능·조립·단순노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료, 임원, 부하직원, 사업주 순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변화 설문에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증가 이유로 ‘신고체계 및 징계 규정 미비’를 꼽는 비중이 50% 이상이었음. 한편, 또 다른 설문 조사¹⁰⁷⁾에서도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경험’은 3.0%에 불과하였음
- 2019~2020년 11월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신고 사건 현황

105) 「근로기준법」 제6장의2(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7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제109조(벌칙)의 개정이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개정이 있었음

106) 한국고용조사연구학회에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400명) 및 근로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6.30. ~ 2020.7.31)를 통해 실태를 조사함

107)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박점규, 「제보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자료집』, 고용노동부·한국노동법학회, 2020.7, p.60. 이하)

- 2019 ~ 2020년 11월 기간 중 신고 접수는 4,167건, 처리는 3,987건이었는데, 처리사건 중 대부분이 행정종결(3,854건)되었고 송치종결은 133건, 송치종결 중 기소는 83건이었음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및 처리 현황 |

(단위: 건)

조회 구분	접수	처리 건수	행정종결						송치종결				처리중
			소계	권리 구제	취하 (반의사 불벌)	이송	종결 기타	과태료	소계	기소	불기소	불기소 (기타)	
2019	1,566	1,398	1,374	89	23	46	1,213	3	24	10	0	14	169
2020년 11월	4,167	3,987	3,854	274	66	88	3,410	16	133	83	2	48	269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제출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실효성 제고 방안의 모색을 권고한 바 있었음¹⁰⁸⁾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2021. 4. 13, 법률 제 18037)이 있었고, 개정법은 10. 14. 시행 예정임

2 개선방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이후 실효성 제고, 구제 수단 확보 등 관련 개정 내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최근 관련 개정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권고한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등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실태 및 사례 분석,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 확대 적용 시 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08)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020.5.21.)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현장조사 등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담당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¹⁰⁹⁾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 02-6788-4731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6

109) 전형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177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p.4.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논의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20년 7월 위기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국민(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취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함¹¹⁰⁾¹¹¹⁾
-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원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020년 기준 1,367만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존재함. 왜냐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¹¹²⁾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자 등¹¹³⁾과 같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2017년 이래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¹¹⁴⁾ OECD와 비교할 경우 낮은 실정임.
 - 2018 OECD 고용전망¹¹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임¹¹⁶⁾

110) 정부는 2020년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111) 단계적 확대 대상으로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를 들 수 있으며, 자발적 이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12) ① 일정기간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할 것(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③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수행할 것 등을 말함

113)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예로 피보험단위기간(기여기간)이 부족한 자, 장기실업자(구직급여를 법정기간 동안 수급한 자) 등을 들 수 있음

114) 연도별 실업자 대비 수혜자 비율: '15년 38.2%, '16년 37.2%, '17년 36.7%, '18년 39.2%, '19년 8월 42.5%(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10.15.)

1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116) OECD, 「대한민국 노동시장 국제 비교」, 2018.7.

-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¹¹⁷⁾에도 고용보험 수혜율이 OECD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임. 이에 따라 실업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는 24%에 불과하고, 구직급여 수급 미자격자의 대부분(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61.1%)은 자발적 이직자이었음¹¹⁸⁾

2 개선방안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매월 60~70여만 명에게 1조원 안팎의 구직급여¹¹⁹⁾가 지급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제20대 국회의 경우 실업자가 이직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¹²⁰⁾이 제출된 바 있으며, 특히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함께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¹²¹⁾한 바 있음
- 지난 국회에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적용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보험기획과
☎ : 044-202-7347

117)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증가 추이: 12,655천명(2016), 12,958천명(2017), 13,432천명(2018), 13,864천명(2019), 출처: 2020 고용보험 백서

118)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확대 연구」, 고용노동부, 2016.12.

1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5월 노동시장 동향」, 2021.6.8.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구직급여 수혜자(천명)	669	699	759	739	704
구직급여 수혜금액(억원)	9,602	10,149	11,790	11,580	10,778

120) 홍영표의원안(의안번호 2001268), 강병원의원안(의안번호 2001710), 이정미의원안(의안번호 2002208), 전재수의원안(의안번호 2007810), 박광온의원안(2008365) 등

121)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5.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과 향후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기준¹²²⁾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1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755만 명이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이 55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2%임.
- OECD 자료¹²³⁾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노동력의 24.6%가 자영업자이며, 선진국과 신흥국 38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¹²⁴⁾
- 더욱이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¹²⁵⁾하는 등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대를 유도함
 - 2019년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함
 - 2019년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122)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이러한 구분을 '종사상 지위' 별 취업자라 칭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취업자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고 있음

123)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124) 「해마다 8천곳씩 문 닫는 치킨집, 이게 한국 자영업 현실이다」, 『매일경제』 2019.6.4.

125)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기준 기업생명행정통계 결과」, 2019.12.12.

- 특히 2020년 6월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영업자도 실업부조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가입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9,175명에 그치고 있음

2 개선방안

- 정부는 2020년 7월 위기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국민(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취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¹²⁶⁾
-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원을 투자하여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1,367만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러나 정부 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까지는 약 3년이라는 과도기적 기간이 소요됨. 따라서 동 기간 동안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혜택은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9(Employment Outlook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큰 사례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68

126) 정부부처 합동, 「안전망 강화 계획」, 2020.7.20.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살펴 보면,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61.9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 또한 1.1%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더불어 상용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폭도 35.5만명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4%로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일련의 고용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수준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과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¹²⁷⁾
 -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¹²⁸⁾은 영업 피해 및 고용여건 회복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주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¹²⁹⁾
 - 생산지수¹³⁰⁾('19→'21.3): 전산업 108.1→107.8, 여행업 124.1→12.8, 관광숙박업 103.9→54.9, 항공운수업 131.9→71.5, 항공기취급업 132.5→40.1
 - 피보험자수('20.4→'21.4): 전체 422천명 증가(13,775→14,197), 여행업 8.6천명 감소, 관광숙박업 4.5천명 감소, 관광운송업 4.2천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1.3천명 감소

127) 관계부처합동,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2021.6.18.

128)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12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2021.6.4.

130)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에 대응되며, 생산수량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냄

2 개선방안

- 따라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면서 취업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2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OECD는 노동시장 관련 공공지출을 8가지 영역으로 분류·정의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하고 있음¹³¹⁾
-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GDP 대비 0.68%로 OECD국가 평균인 1.37%보다 부족한 수준
 - 이중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GDP 대비 0.36%로 OECD 국가 평균인 0.48%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한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GDP 대비 0.33%로 OECD 국가 평균인 0.63%보다 크게 낮음
-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창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인 반면,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는 ‘노동시장서비스’와 ‘훈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2018년) |

(단위: %)

	공공 고용 서비스 및 행정	훈련	고용 장려금	보호 및 지원 고용과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인센티브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조기 퇴직	합계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
한국	0.05	0.06	0.04	0.02	0.15	0.04	0.38	0.01	0.75	0.36	0.38
OECD 평균	0.12	0.11	0.09	0.09	0.05	0.01	0.59	0.04	1.11	0.48	0.63

자료: Data extracted on 02 Jul 2021 07:57 UTC(GMT) from OECD. Stat

131) 8가지 분류는 ①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②훈련, ③고용장려금, ④보호 및 지원 고용과 재활, ⑤직접 일자리 창출, ⑥창업인센티브, ⑦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⑧조기퇴직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①~⑥)을 말함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실업보험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자 대책 등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⑦·⑧)을 말함

2 개선방안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특히, ‘노동시장서비스’와 ‘훈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연구됨¹³²⁾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GDP 대비 0.1%p 증가할 때 고용률은 0.47%p 상승함
 -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서비스’(GDP 대비 0.1%p 증가시 고용률 3.53%p 상승)와 ‘훈련’(GDP 대비 0.1%p 증가시 고용률 0.45%p 상승)의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특히 ‘노동시장서비스’와 ‘훈련’에 대한 지출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0

132) 현대경제연구원,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2017.8.1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향후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특징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하는 추세속에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이 부진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¹³³⁾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¹³⁴⁾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에 크게 기인함
 - 청년들의 구직기간 및 취업준비 비용의 증가는 사회전체적인 기회비용 및 비효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임
- 낮은 여성 고용률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임
 -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도 용이하지 않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133)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

134)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경제분석』 제25권 제1호, 2019.3.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한편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2 개선방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문제는 우리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¹³⁵⁾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0

135) 장근호, 상계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¹³⁶⁾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¹³⁷⁾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¹³⁸⁾
 - 2020년에 구매목표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가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19년) 목표비율(0.3%) 달성기관 629개소 → ('20년) 목표비율(0.6%) 달성기관 560개소
 - 2020년에 848개 공공기관¹³⁹⁾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한 것으로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음
 - ('18년) 2,673억원, 0.56% → ('19년) 3,993억원, 0.78% → ('20년) 5,518억원, 0.91%
-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18년) 2,623억원, → ('19년) 2,291억원, → ('20년) 3,775억원으로 구매실적과의 차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년의 경우 차액이 1,743억원에 달하고 있어 구매계획의 정합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

136)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시 15% 이상 고용, 100~300명 미만 시 10%+5명 이상 고용, 300명 이상 시 5%+20명 이상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1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을 말함

13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2021.4.27.

139) 총 849개의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전라남도 장성군이 제외된 수치임

총계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특별 법인
849	55	243	17	36	95	209	152	36	6

| 구매실적과 계획의 차이 |

	구매계획(A)	구매실적(B)	차액(B-A)
2018	2,623억원	2,673억원	50억원
2019	2,291억원	3,393억원	1,102억원
2020	3,775억원	5,518억원	1,743억원

2 개선방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는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 필요함
- '20년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대비 2.0%p 감소하였으며, 전체인구 고용률(65.8%, 전년대비 1.3%p↓) 대비 현저히 저조함¹⁴⁰⁾
 -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3%(전년대비 2.3%p↓)이며, 전체장애인 고용률(48.0%)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설립이 완료된 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영업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액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매출계획 수립 등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합도가 향상된 구매계획액 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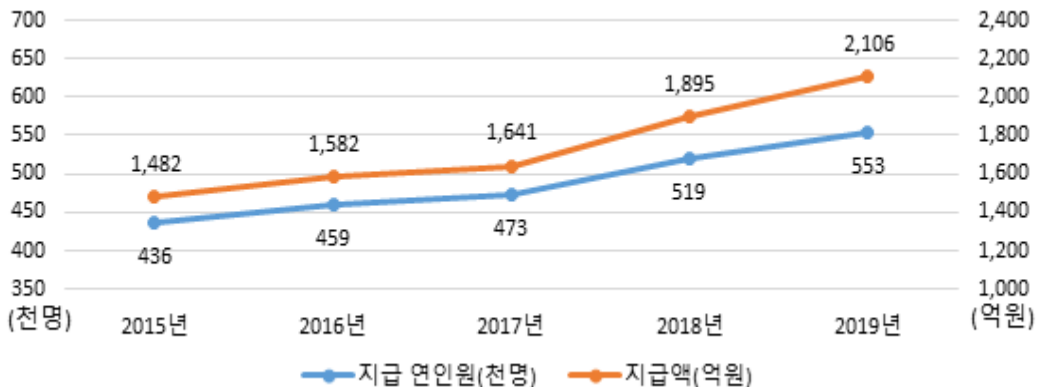
140)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2021.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 명, 지급액은 2,106억 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¹⁴¹⁾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연인원, 지급액(최근 5년간) |



- 최근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¹⁴²⁾를 보면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음
 - 동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

14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2020.4.9.

14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상계서

-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최근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¹⁴³⁾
 - 고용유지지원금(원): ('19) 669억 → ('20) 2조2,779억, 청년 2대사업(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19) 1조8,632억 → ('20) 2조5,991억, 워라벨·유연근무지원: ('19) 239억 → ('20) 880억
- 이에 따라 관련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건수/억원: ('18) 292/24 → ('19) 965/75 → ('20) 978/122 → ('21.4.) 665/98

2 개선방안

- 정부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은 사후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임
- 그러나,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임
 -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국가 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기금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정작 정당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입(선정) - 운영(집행) - 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1

14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1.6.18.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기업 집단의 노력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으며, 4개 부문(①국가·지자체 공무원, ②국가·지자체 근로자, ③공공기관, ④민간기업) 모두 고용률이 상승함
 - (16년) 2.66% → (17년) 2.76% → (18년) 2.78% → (19년) 2.92% → (20년) 3.08%
- 또한, 같은 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 826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494명이 증가함

| '2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 부문별 현황 |

(단위: 개소, 명, %, %)

구분	사업체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19년말 대비		법정의무 고용률(%)
				증감률(%p)	증감인원(명)	
계	29,890	260,826	3.08	▲0.16	▲15,494	-
정부 부문	①공무원	316	27,270	▲0.14	▲1,457	3.4
	②비공무원	304	21,230	▲0.48	▲3,589	3.4
	③공공기관	721	20,015	▲0.19	▲2,339	3.4
	④민간기업	28,549	192,311	2.91	▲0.12	▲8,109

주: 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 위기 속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 2021. 4.30

- 그런데 장애인 고용(192,311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의 고용률(2.38%)이 제일 낮음

| '20년 말 기준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 현황 |

(단위: 개소, 명, %, %p)

구분	사업체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법정의무 고용률(%)
합계	28,549	192,311(147,584)	2.91	3.1
100인 미만	15,132	25,195(19,311)	2.39	
100~299인	9,956	53,733(41,198)	3.28	
300~499인	1,599	19,046(14,857)	3.13	
500~999인	1,100	25,114(19,036)	3.29	

구분	사업체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법정의무 고용률(%)
1,000인 이상	762	69,223(53,182)	2.73	
대기업집단	746	30,733(24,120)	2.38	

주: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코로나 위기 속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 2021. 4.30

- 또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명단¹⁴⁴)에 다수 포함됨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함

2 개선방안

-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의무고용사업체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장애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대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전체 4.7% vs 1,000인 이상 5.0~6.1%

일본: 전체 1.93% vs 1,000인 이상 2.12%¹⁴⁵⁾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1

14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2020.12.27.

14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2018.4.19.

정년연장 해외동향과 향후 논의시 고려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금년도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60세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힘¹⁴⁶⁾
-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거나 연금수급연령과 은퇴연령 간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⁴⁷⁾
 - 해외 주요국은 정년을 상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독일, 스페인¹⁴⁸⁾ 등 유럽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 2020년 고용안정법을 개정(2021년 4월 시행)하여 사업주에게 70세까지의 고용(취업)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¹⁴⁹⁾
 - 미국은 1978년 정년법(Mandatory Retirement Act)을 제정하여 65세에서 70세로 정년을 확대하였다가 1986년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년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영국도 2006년 고용평등연령법(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을 제정하여 65세를 정년으로 지정 한 후 2011년에는 정년을 폐지한 바 있음

2 개선방안

- 그러나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임
 - 특히 정년의 상향조정은, 정년 상향 시 임금체계 및 구조 개편, 연금수급,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146) 최훈길, 「홍남기, “정년연장,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이데일리』 2021.1.10.

147) 홍대선, 「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한겨레』 2021.5.31.

148) 스페인은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한 예산 압박으로 2011년 1월 근로자 정년연장, 조기퇴직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타결하여 2013년 1월 1일부로 퇴직정년이 점진적으로 연장(2013년부터 매년 1~2개월씩 점진적 상향, 2027년 67세 정년)되고 있음(출처: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149)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oureisha/topics/tp120903-1_00001.html)

- 종래 정년을 60세로 설정하는 입법 당시에도 정년 상향 시 임금체계 및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¹⁵⁰⁾
- 결국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포용적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정년의 설정 및 입법화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컸던 만큼 정년 연장 논의는 정년의 연장 방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적정한 정년연령의 설정, △상향조정 시 고용형태 등 정년설정 방식(정년연장 방식, 재고용방식 등), △상향조정된 정년의 도입 시기와 단계(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조절 등), △상향조정 시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금수급연령의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년 상향조정 시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정년의 상향조정은 청년 일자리의 잠식 우려 등 자칫 세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4

150) 지난 60세 정년의무화법(정식 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후로 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 중에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되집어볼만한 사안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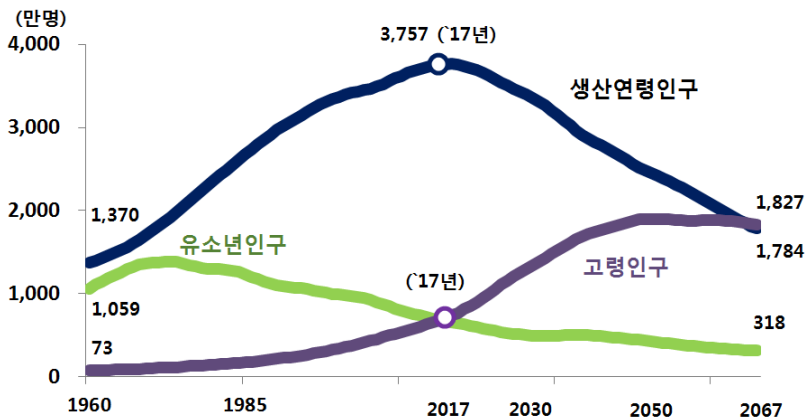
- 정년연장 법제화전 사회적 환경 미조성
 -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가 충분한 합의를 거치기 전에 60세 정년법의 법제화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후 노사 간 마찰로 인한 정년연장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에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음
- 짧은 유예기간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
 - 임금체계 개편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노사간의 지나한 갈등과 협력 과정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성과물인 점에 비추어 법 시행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상당히 짧았음
-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규정에 대한 노사간 입장의 차이
 - 임금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이미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상태에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굳이 본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받아들일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1 현황 및 문제점

- (연령구조)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 → 45.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3.8% → 46.5%),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13.1% → 8.1%)할 전망이다¹⁵¹⁾
- (생산연령인구: 15~64세 인구)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 감소, 2067년에 1,784만 명 수준일 전망이다
 -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유소년인구: 0~14세 인구)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1960~2067년(중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3.28.

151)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3.28.

- 현재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다양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 중에서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고령화의 가장 대표적인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임¹⁵²⁾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감소 초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2 개선방안

-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¹⁵³⁾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정책 확대
 - 우선 당분간 청년실업이 평균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청년고용난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무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근로의지도 약해져 인적자본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고급인력 유치
 - 중기적으로는 스마트화 및 외국 고급인력유치를 통해 미래 숙련노동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가용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
 -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으로 여성 노동 참가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잔류를 유도하고 세대 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 확립이 중요함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진선

☎: 02-6788-473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실 미래고용분석과

☎: 044-202-7254

152) 이철희외 1인,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제2017-30호, 한국은행

153) 이근태외 1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 경제연구원, 20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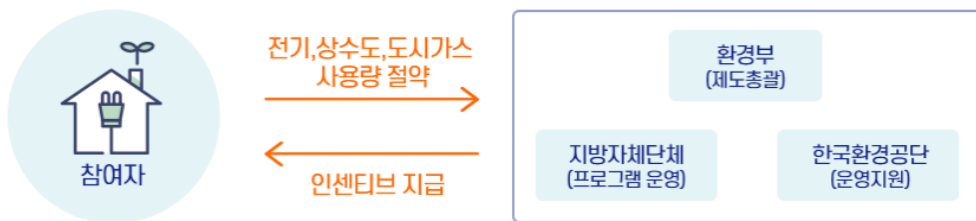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1 현황 및 문제점

-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자체 감축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임¹⁵⁴⁾
- (제도 취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는 에너지 절감·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으며,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음

| 탄소포인트제 운영 체계 |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참여 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154)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의 관련 내용을 인용함

|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

개인·사업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장, 건물관리자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참여 방법) 한국환경공단의 탄소포인트제 웹사이트와 모바일서비스(2021년 5월 도입)¹⁵⁵⁾에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을 기입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가 가능함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 웹 접근성이 낮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음¹⁵⁶⁾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인센티브 관련 국고보조금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 |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고	예산액	5,992	5,542	5,542	5,933	5,400
	집행액	4,489	4,851	5,195	정산 중	-
지방비	예산액	5,992	5,542	5,542	5,933	5,400
	집행액	4,489	4,851	5,195	정산 중	-
소계	예산액	11,984	11,084	11,084	11,866	10,800
	집행액	8,978	9,702	10,390	정산 중	-

자료: 한국환경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2020년 7월 7일)

- 탄소포인트제는 국비:지방비의 비율을 50:50으로 매칭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여력이나 참여도 등에 따라 탄소포인트당 단가*의 차이가 발생함
 - * 한국환경공단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개별 참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각 지자체별로 예산규모에 따라 포인트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자체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작거나 참여 인원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단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음

155)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5.17)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서비스 개시」, 2021.5.18.

156) 조유정, 「강원도 탄소포인트제 10년째 지지부진」, 『강원도도민일보』, 2021.4.20.

| 2020년 탄소포인트제 1포인트당 단가 사례 |

(단위: 원, 개별 단독기준)

지자체	상반기	하반기
○○시	2	2
○○시	0.4	0.7
○○시	0.8	1.5

자료: 한국환경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2020년 7월 6일) 일부 인용

2 개선방안

-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포인트제가 활발히 이행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역설적으로 탄소포인트제 1포인트당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대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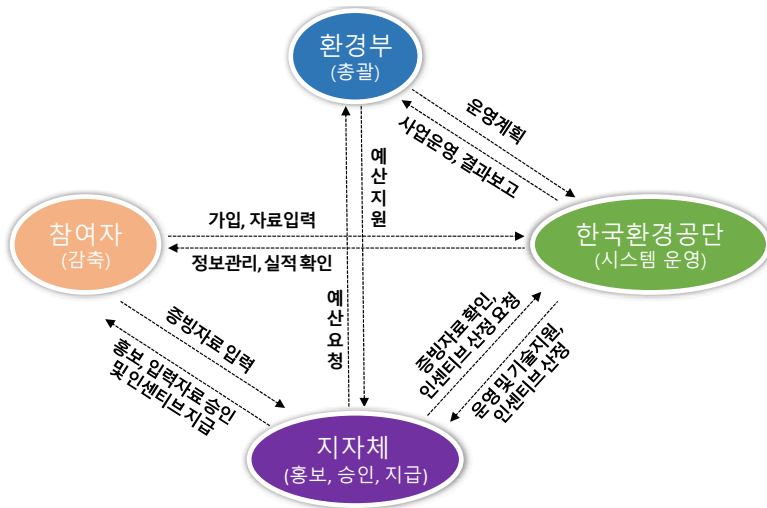
☎: 032-590-3448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¹⁵⁷⁾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관별 역할 |



자료: 한국환경공단

- 주행거리 단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에 유리한 실적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짐

| 주행거리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주행거리	감축률(%)	0~10	10~20	20~30	30~40	40이상
	감축량(km)	0~1천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자료: 한국환경공단

157)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탄소포인트제 <<https://car.cpoint.or.kr/>>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국비:지방비의 비율을 50:50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다보니 지자체 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406,000 백만원(국비 203,000백만원, 지방비 203,000백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총 7,000대가 할당되었는데, 신청대수는 7,727건이고, 승인대수는 6,732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대수가 할당대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례 |

지자체	할당대수	신청대수	승인대수
○○시	22	19	17
○○시	106	127	105
○○시	267	292	261
○○ (광역)	335	380	326
○○ (광역)	367	421	360
○○시	31	2	1
○○군	7	5	4
○○시	7	5	5

자료: 한국환경공단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2021년 7월 6일) 일부 인용

2 개선방안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동사업의 목적달성에 효율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 02-6788-4737

관련부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팀

☎: 032-590-3426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Ⅷ

제2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환경노동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환경노동 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본부	145	118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	
		국립환경과학원	-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	
		화학물질안전원	-	-	
		한강유역환경청	24	19	
		낙동강유역환경청	17	14	
		금강유역환경청	15	15	
		영산강유역환경청	18	14	
		수도권대기환경청	18	-	
		원주지방환경청	19	13	
		대구지방환경청	19	20	
		전북지방환경청	19	13	
		한국수자원공사	32	19	
		국립공원공단	19	11	
		국립생태원	11	7	
		한국환경공단	21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	10	
		국립생물자원관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7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4	6	
		한국상하수도협회	9	-	
		환경보전협회	7	4	
		(주)워터웨이플러스	6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	
		한강홍수통제소	-	-	
		낙동강홍수통제소	-	-	
		금강홍수통제소	-	-	
		영산강홍수통제소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본부	73	104	
		중앙노동위원회	5	14	
		최저임금위원회	4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7	16	
		충북지방고용노동청	21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2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2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2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4	-	
		근로복지공단	14	12	
		한국산업인력공단	11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7	
		한국고용정보원	8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6	
		노사발전재단	6	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7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6	
		한국잡월드	4	7	
		건설근로자공제회	8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	9	
		기상청 본부	43	52	
		수치모델링센터	-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	
		수도권기상청	-	-	
		부산지방기상청	-	-	
		광주지방기상청	-	-	
		강원지방기상청	-	-	
		대전지방기상청	-	-	
		대구지방기상청	-	-	
		제주지방기상청	-	-	
		국가기상위성센터	-	-	
		기상레이더센터	-	-	
		국립기상과학원	-	-	
		항공기상청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APEC 기후센터	-	-	
		계 (건수)	785	620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기상청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8~2020)

1 환경부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개선	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의 추진계획 마련 필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2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 개선 노력 강화 필요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필요	
	4	라돈 관리방안	라돈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5	물관리일원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대책 필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능조정 노력 필요	
	6	외래종 대책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개선 필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개선 필요	
	7	영주담 수질개선 평가	수자원공사의 수질예측모델 검증 및 영주담 존폐 여부 검토 필요 등	영주담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8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필요 등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9	소각시설 반입 불연재 재위탁 허용 검토 필요	소각시설 반입 불연재의 재위탁 허용 검토 필요	소각시설 반입 불연재의 재위탁 허용 검토 필요	
	10	음폐수 처리	음폐수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음폐수 처리 대책 마련 필요	
	11	노후경유차 감축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감축	
	12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개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점검 및 개선 필요	
	13	동물원 서식환경 관리	동물 복지 등 동물원 전시 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동물원의 서식환경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14	미세플라스틱 규제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책 마련 필요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15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필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정립 및 사후관리 준비 철저	
	16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개선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개선 필요	
	17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개선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 부실 문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18	유역·지방 환경청 공통 하수처리장 관리감독	하·폐수처리장에 대한 환경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필요	
	19	대구지방환경청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 마련 필요	
	20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보완	수질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소통방안 마련 필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	
	21	한국수자원공사 노후관로 개선	상수도 요금상승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이익분을 활용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22	국립공원공단 해상국립공원 관리 및 보전	해상국립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해상국립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3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개선	올바로시스템 개선 필요 등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필요	
24	한국환경공단	충간소음 관리방안	충간소음 관련 인력 확충 필요 등	충간소음 민원 대응 강화 필요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사업 관리·감독	환경 R&D 중 친환경자동차 사업단의 불필요한 기술개발 및 저성과 과제에 대한 철저한 개선 필요	연구과제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개선 필요	

2 고용노동부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고용노동부	직원비리 근절	직원비리 근절 및 관리강화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리 대책 수립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2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근로감독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KT-KTCS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3	고용노동부	간호사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방송제작 현장 및 간호사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간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4	고용노동부	방송업계 근로환경 개선	방송업계 근로환경 개선 필요	KBS 방송작가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 근로감독 필요	
	5	고용노동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감독 필요	
	6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실적 및 운영 개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실적 저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부진 문제	
	7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대형기관 편중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문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대형기관 편중 문제	
	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대책 마련	고용보험기금 손실문제 원인 파악 및 기금 운용 개선 필요	
	9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관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저조 문제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및 부실한 관리 실태 개선 필요	
	10	고용노동부	외국계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외국계기업 부당노동행위 등에 근로감독 강화 필요	외국계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오류 재발방지대책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11	고용노동부	ILO 협약 기준	ILO 핵심협약 기준 조속 추진 필요	ILO 협약 기준 관련 입법적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2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	
	13	고용노동부	고용세습 관리감독	고용세습 등을 방지할 대책 마련	고용세습 미개선 기업 및 노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4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심판 공정성 및 전문성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	심판사건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 제고 필요	
	15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필요	
	1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완화 정책 검토	최저임금 결정에서 임금 인상의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사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18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산하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방지	산하기관 고용세습 발생 예방 필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19	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 산재인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산재 인정 절차 개선 필요	산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산재 인정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착오지급 개선	산재보험금 착오지급 및 환수 문제 개선 필요	산재보험금여 착오지급 문제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1	근로복지공단	노후 산재예방 시설 개선	산재병원 노후 장비 교체 및 노후시설 신축 필요	노후화된 의료 장비의 교체방안 마련 필요	
22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관리 철저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 필요	
23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대책 마련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등 근절 대책 마련 필요	
24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조직운영	방만한 조직운영 행태 개선대책 마련	업무상 부정행위 감사 및 사후처리 철저 필요	
25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 관리방안	사회적기업 창업 이후 사후관리 강화 필요	사회적기업의 인증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필요	
26	노사발전재단	기관운영 내실화	노사발전재단 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 필요	예산삭감, 다른 기관과의 통합합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27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서비스의 중소기업 재직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율 제고 필요	
28	한국잡월드	성과개선 방안	실질적 성과 향상 방안 강구 필요	한국잡월드 수입 현실화 및 정규직화 관련 대책 필요	
29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잡월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개선 대책 필요	
30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미지급금 지급 노력 필요	휴면공제금 신축 지급 필요	

3 기상청

	기관	정책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연속	1	기상청	폭염예보 대책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폭염특보의 실효성 제고 필요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2	기상청	기상 앱 개선	날씨 앱의 재구축 방안 검토 필요	날씨제보 앱 운영 개선 필요	
	3	기상청	예보관 교육	예보관 교육예산 확대 필요	예보관 근무환경 및 보직관리 개선 필요	
	4	기상청	청렴도 제고	청렴도 제고 대책 및 기강 확립 마련 필요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5	기상청	기상예보 정확도	기상특보에 대한 선행시간과 정확도 제고 필요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 노력 필요	
	6	기상청	항공기상 서비스	기상청 항공기상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 필요	항공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7	기상청	지진관측 장비 관리	지진 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	지진관측 장비 및 자료 관리 강화 필요	
	8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원거리 해양기상관측장비 확충 필요	해양기상관측장비 확충 필요	
	9	기상청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운영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력 충원 필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개선 필요	
	10	기상청	남북협력	남북기상협력 강화 필요	남북기상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 간 일 2021년 8월 2일
발 행 김 만 흥
편 집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 6788. 4560
인 쇄 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 761. 0031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nars.go.kr>) '연구 보고서'의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671-9444

발간등록번호 31-9735046-001900-10

© 국회입법조사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ISSN 2671-9444

발간등록번호

31-9735046-001900-10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